Chapter I

귀속재산처리 관련 법령과 규정

귀속재산처리 관련 법령과 규정 해설

01 귀속기업체 현황 및 중요재산 처리개요 외(재무부)

02 귀속재산처리 관계 법령집(재무부)

03 휴면법인 청산종결법(안)(재무부)

04 청산연합회 규정 및 휴면법인 처리요령

05 휴면법인 청산연합회 관계철

귀속재산처리 관련 법령과 규정 해설

제1장에서는 귀속재산 특히 휴면귀속재산의 처리와 관련된 법령들을 주로 다루기로 한다. 그런데 이런 법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귀속재산의 접수과정과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총론에서는 귀속재산에 관한 법령들을 미군정에 의한 귀속재산의 접수, 미군정에 의한 귀속재산의 불하와 이양,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귀속재산의 처리, 귀속휴면법인의 청산 등 귀속재산 처리과정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Ⅰ. 미군정에 의한 귀속재산의 접수

일제시대의 경제통계를 보면, 조선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공업구조의 고도화, 무역구조의 고도화, 도시화의 진전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의 근대적 변화가 시작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해방이 되었을 때 조선이 다시 가난한 농업국으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사실은 일제시대의 경제개발이라는 것이 식민지적 특징이 매우 뚜렷한 것이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다. 즉 일제시대의 개발과정은 일본의 앞선 기술과 자본에 의한 조선의 개발이었고, 생산수단이 점점 더 일본인 수중으로 집중되어 가는 과정이었으며, 이에 따라 소득의 불평등과 차별이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이었다. 나아가 이 개발은 일본의 침략전쟁에 따라 이루어진 군수공업화적인 성격이 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주로 북한에 편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 결과 일제 말기가 되면, 조선의 재산 중에서 일본인이 차지하는 것이 조선인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다.

우선 일본인이 소유하는 경지면적을 보면 【표1】과 같이 1931년에는 21%에 해당하던 것이 1941년에는 26%로 증가한다. 이 추계는 조선은행과 경성상공회의소에서 행한 것인데,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소유하던 실제 경지면적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 표의 '자료'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일본인이 자본을 투하하여 형성한 가치라는 측면에서 추계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무튼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소수의 일본 농업경영자들이 식민지 지배기간 동안 조선 전체 경지의 1/5~1/4 정도의 경지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논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1941년에는 54%나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높아진다.

【표 1】 일본인소유 경지면적과 전체 민유과세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만 정보)

	1931년					1941년				
	민유과세지	회사	개인	합계	비중	민유과세지	회사	개인	합계	비중
논	159	40	30	70	44%	168	50	40	90	54%
밭	274	10	10	20	7%	271	11	11	22	8%
계	433	50	40	90	21%	439	61	51	112	26%

〈주〉 이 표의 경지면적은 실제면적이 아니라 재산가치를 감안한 면적으로 판단된다.
출처 : 1931년 : 朝鮮銀行,『朝鮮に於ける內地資本の流出入に就て』, 1933, 46쪽
1941년 : 京城商工會議所,『朝鮮に於ける內地資本の投下現況』, 1944, 31쪽

공업부문 재산에서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한층 더 컸다. 즉 공업부문에서 일본인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1년 말에 91.5%였고, 1945년 8월의 경우 92.6%였다. 다소 대담한 가정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 비중이 엄밀한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일제 말기의 조선의 공업은 사실상 일본인 공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았던 것이다.

【표 2】 공업부문의 민족별 자산 추계

(단위 : 천엔)

	1941년 말			1945년 8월		
	일본인	조선인	합계	일본인	조선인	합계
공업회사	2,049,241	102,462	2,151,703	32,928,930	1,646,447	34,575,377
개인공장	97,311	97,311	194,622	1,056,300	1,056,300	2,112,600
합계	2,146,552	199,773	2,346,325	3,985,230	2,702,747	36,687,977
비중	91.5%	8.5%	100.0%	92.6%	7.4%	100.0%

〈주〉 정부 부문의 공업투자 혹은 공업재산은 제외하였다. 단 이 추계에는 일본인 개인공장과 조선인 개인공장의 자산이 동일하다는 등 몇 가지 대담한 가정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엄밀한 것은 아니다. 도입된 가정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의 허수열의 책을 참조하라.
출처 : 허수열,『개발 없는 개발』, 은행나무, 2005, 171쪽. 원자료는 京城商工會議所調査課,『朝鮮に於ける內地資本の投下現況』, 1944 및 SCAP, *Japanese External Assets as of August 1945*, 1948.9.30.에서 작성.

1945년 8월에 일본이 항복하게 되었을 때, 조선에는 이러한 식민지적 경제개발의 결과로 일본인 경제부문이 엄청나게 큰 비중을 갖는 경제구조가 남겨지게 되었다. 물론 일본이 패전국면에 들어가는 태평양전쟁 말기의 몇 년 동안에는 생산시설의 비합리적이고 약탈적인 운용에 의해 그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고, 해방과 더불어 남북이 분단되면서 주요한 광공업시설이 북한지역에 편재되어 있었고, 해방 후의 혼란기에 이들 일본인 재산중 상당수가 원료, 자금, 기술의 부족으로 스크랩화되어 갔기 때문에, 해방 후 남한에 존재하던 일본인 재산의 크기는 장부가격에서 추계된 이런 값에서 크게 줄여 잡아야 하겠지만, 그 당시 남한에 존재하던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이 일본인 재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일본의 항복 선언 이후 조선에 주둔하던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38도선 이남에 진주해 온 미군은 미군정을 실시하면서 군정법령 제2호 「패전국 정부 등의 재산권 행사 등의 금지」(1945.9.25. 시행)에 의거하여 패전국의 재산권을 접수하기 시작하였다.[1] 또 군정법령 제4호 「일본 육해군 재산에 관한 건」(1945.9.29. 시행)에 의하여 일본 육해군의 각종 재산은 매매 · 취득 · 양도를 금지하고(제1조), 조선 내에 소재하는 이 재산은 모두 미국의 소유가 되었음을 선언하였다(제2조). 나아가 군정법령 제33호 「조선 내 소재 일본인 재산 취득권에 관한 건」(1945.12.6.시행)에서는 1945년 8월 9일 이후의 일본인 재산은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 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 군정청이 그 재산 전부를 소유하는 것으로 되었다(제2조). 이렇게 미군정에 의하여 일본을 포함한 패전국 소유재산을 몰수하여 미군정으로 귀속시킨 조치는 1952년에 일본과 연합국측 사이에서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Treaty of Peace with Japan, 日本国との平和条約) 제14조에서 다시 확인되었다.[2]

---

1) 여기서 말하는 패전국에는 일본을 비롯하여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태국 등을 말한다. 그리고 재산권의 행사란 이들 패전국의 '정부나 또는 그 대리기관이나 그 국민 · 회사 · 단체 · 조합 · 기타 기관과 해당 정부 등이 조직 또는 조정하는 기관에 직접 · 간접 또는 전부 혹은 일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금 · 은 · 백금 · 통화 · 증권 · 예금 · 채권 · 유가증권 · 기타 재산을 매매 · 취득 · 이동 · 지불 · 인출 · 처분 · 수입 · 수출 기타 취급과 권리 · 권력 · 특권의 행사'를 말한다 (제1조). 미군정청이 귀속재산을 접수할 무렵, 아놀드 당시 군정장관은 일본인 공 · 사유 재산의 미군 접수에 관한 성명에서, 미군정청은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접수 · 보호할 뿐이기 때문에 장차 한국 정부가 들어서면 원상 그대로 이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2) 이 조약의 체결에는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45개국 사이에 체결되었다. 대한민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취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약의 체결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제21조에서 "조선은 이 조약의 제2조, 제4조, 제9조, 제12조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함으로써 조선에 소재하는 일본국 및 일본국민(법인 포함)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인되었다.

이렇게 조선에서 일본인 재산에 대한 파악과 접수가 진행되던 것과 별도로, 일본에서는 도쿄의 연합군 최고 사령관(SCAP,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에 의해 일본 외부에 소재하였던 일본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즉 SCAP의 요구에 의해 일본에서는 대장성령 제95호「재외재산 등의 보고에 관한 대장성령(在外財産等ノ報告ニ關スル大藏省令)」을 공포하여 일본의 해외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3] 이 조사 중에서 법인에 대한 조사는 ① 금, 은, 화폐, ② 금, 은, 백금의 지금 및 합금, ③ 재외 부동산, ④ 재외 동산, ⑤ 재외 은행예금 및 기타 예금, ⑥ 재외 거주자의 부담으로 되는 계정, 수취어음 및 기타 대부금, ⑦ 재외 사업의 주식, 조합출자 및 기타의 출자, ⑧ 앞에서 보고되지 않은 채권, 사채 및 기타의 투자증서, ⑨ 앞에서 보고되지 않은 지불증서, ⑩ 저작권, 특허권, 라이센스,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⑪ 외국 통화, ⑫ 외국 정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발행한 채권, 기타 채무증서, ⑬ 외국거주자의 부담으로 되어야 할 보험증권 및 연금, ⑭ 일본 소재기업의 출자와 관련된 외국소재 지점 및 자회사, ⑮ 차지권 또는 재산의 사용 혹은 점유와 관련된 유사한 권리, ⑯ 일본 외에 소재하거나 또는 일본 외에서 효력이 있는 재산으로서 일본 내에 거주하는 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또는 지배하는 상기 이외의 일체의 재산 등의 16개 항목에 대한 조사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그리고 이들 모든 조사결과에 대한 총괄표로 이루어져 있다. 약 3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 결과는『1945년 8월 현재 일본의 해외재산(Japanese External Assets as of August 1945)』이라는 전 3권의 보고서로 제출되었다.[4]

미군정에 의해 접수된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소유하던 재산은 흔히 귀속재산(vested properties)이라 부르고, SCAP에 의해 조사된 것은 일본 해외재산(Japanese external assets)으로 불러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실체는 동일한 것이었다. 따라서 조사가 완벽하다면 양자는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사 방법상 전자는 과소집계 되고, 후자는 과대집계 되기 쉬운 것이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SCAP에 의해 파악된 일본의 해외

3) 대장성령 제95호「재외재산 등의 보고에 관한 대장성령(在外財産等ノ報告ニ關スル大藏省令)」은 "외환관리법에 의거하여 연합국최고사령관의 요구에 따른 사항을 실시하기 위한 재외재산 등의 보고"의 목적으로 1945년 11월 8일 대장성령으로 발령 되었다. 이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편,『해방 직후 한국 소재 일본인 자산 관련 자료』, 선인, 2005., 431~442쪽을 참조하라.

4) 이 보고서 중 조선에 관한 부분은 허수열에 의해 수집되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영인본으로 출간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편,『해방 직후 한국소재 일본인 자산 관련 자료』(근현대사자료총서 17), 선인, 2005.

재산을 정리해 보면【표 3】과 같다. 조선의 미군정에 의해 접수된 일본인재산은 이 표에 의한다면 '남한'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된다.

【표 3】 1945년 8월 현재 일본의 해외재산

(단위 : 달러)

지역 구분		정부	기업	개인	합계
조선	북한	549,024,674	2,210,674,940	211,260,000	2,970,959,614
	남한	449,202,006	1,333,393,416	492,940,000	2,275,535,422
	소계	998,226,680	3,544,068,356	704,200,000	5,246,495,036
중국	만주	218,300,000	7,248,133,939	1,163,249,000	8,629,682,939
	북중국	85,380,360	2,365,874,000	426,022,950	2,877,277,310
	중 · 남중국	58,019,640	1,496,662,000	294,477,050	1,849,158,690
	대만	592,642,000	1,055,162,564	250,114,000	1,897,918,564
	소계	954,342,000	12,165,832,503	2,133,863,000	15,254,037,503
기타 지역		199,424,660	925,709,077	255,000,000	1,380,133,737
합계		2,151,993,340	16,635,609,936	3,093,063,000	21,880,666,276

출처 : SCAP (Civil Property Custodian, External Assets Division, General Headquarters), *Japanese External Assets as of August 1945*, 1948.9.30., 18쪽

이 SCAP의 자료 중에서 한국에 관한 것만을 떼어 내어 좀 더 자세히 살펴 본 것이【표 4】이다. 남북한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부문의 재산이 67.6%를 차지하고 정부부문의 비중이 19.1%, 개인부분의 비중이 13.4% 정도를 차지하여, 기업부문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한만 보면 기업부문의 비중이 다소 낮아지지만 여전히 6할 가까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소유주체별, 남북한별 일본재산

(단위 : 달러)

종류	남북한 별 일본 재산			종류별 비중	
	북한	남한	합계	북한	남한
기업부문 재산	2,210,674,940	1,333,393,416	3,544,068,356	74.4%	58.6%
1500사 소계	2,165,924,940	1,175,443,416	3,341,368,356	72.9%	51.7%
3800사 소기업	23,700,000	94,800,000	118,500,000	0.8%	4.2%
기타 기업재산	21,050,000	63,150,000	84,200,000	0.7%	2.8%
정부부문 재산	549,024,674	449,202,006	998,226,680	18.5%	19.7%
개인부문 재산	211,260,000	492,940,000	704,200,000	7.1%	21.7%
총계	2,970,959,614	2,275,535,422	5,246,495,036	100.0%	100.0%

출처 : SCAP(Civil Property Custodian, External Assets Division, General Headquarters), *Japanese External Assets as of August 1945*, 1948.9.30., 36, 37쪽에서 작성.

SCAP에서 조사된 일본인 기업의 수는 남북한을 합하여 주요 1,500개 회사에 3,800개의 소회사를 합한 5,300개인데, 이것을 일제시대 최후의 회사자료인 1942년판『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과 비교해 보면, SCAP의 조사자료에서는 조선에 소재하던 일본인 회사의 거의 대부분이 파악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1942년에 조선에는 6,018개의 회사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사나 사원의 민족별 구성비를 기준으로 민족을 구분해 보면【표 5】와 같다. '일본인'과 '조일합동' 회사에 일본인 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조선인' 회사로 분류된 것 중에도 일부 일본인 지분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100% 조선인자본으로만 이루어진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귀속법인으로 파악될 것이기 때문에 그 수는 3,657개 + α로 된다. 1942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기간의 회사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 정도라면 1945년 8월 현재 조선에 소재하던 일본인 법인재산은 SCAP 조사에서는 거의 파악되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표 5】 1942년의 조선의 회사수

(단위 : 개)

	일본인	외국인	조일합동	조선인	총합계
경기	1,399	2	76	779	2,256
충북	31		6	37	74
충남	85		11	85	181
전북	137		6	93	236
전남	184		24	156	364
경북	224		33	176	433
경남	537		21	262	820
강원	32		8	71	111
황해	47		3	99	149
평남	188		12	146	346
평북	72		6	61	139
함남	223		19	233	475
함북	256		17	161	434
합계	3,415	2	242	2,359	6,018
남한	2,613	2	181	1,624	4,420
북한	802		61	736	1,599

〈출처〉 東亞經濟時報社,『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42년판에서 작성.

Ⅱ. 미군정에 의한 귀속재산의 불하와 이양

미군정에 의해 접수된 귀속재산은 1946년부터 민간에 불하되기 시작하였다. 미군정은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군정청에 귀속된 소사업기관 처분에 관한 건」(1946.3.24.)이라는 행정명령을 재산관리관에게 보내어, "군정청에 귀속된 재산을 취급함에 있어서 조선인에게 사업체 및 관계 기업체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도로 부담"하도록 할 목적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10만원 미만의 사업기관과 10만원 내지 100만원의 사업기관에 대해서는 조선인에게 불하하면 유효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불하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불하할 수 있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장부가격 100만원 미만의 사업기관은 "가급적 속히 조선인에게 불하"할 것을 지시하였다.[5] 이 행정명령에 이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도 귀속재산의 불하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져 1947년 4월 19일 소규모사업체 매각안이 통과되었다.

1946년 6월에는 유상매각 민영화원칙에 따른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안으로서 중앙과 각 도에 귀속재산의 매각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2월에는 중앙관재처에 적산주택평가위원회 및 무역자격심사위원회, 적산기업평가위원회 및 구매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각 지역에도 유사한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한편 1947년 5월에는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재조선미육군 군정청에 그 권리가 현재 귀속되어 있는 도시주택을 조선인에게 불하함에 대한 제반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일본인이 기왕 소유하였던 도회지 주택 불하에 관한 건」(1947.5.15.)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6]

귀속농지는 1945년 10월 9일자로 미군정에 의해 접수 운영되다가, 군정법령 제52호 「신한공사의 창립」(1946.2.21.)에 의해 "1945년 8월 9일 이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소유한 전 재산 및 1945년 8월 9일 이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조선 내 법인의 일본인 재산은 전부 신한공사에 귀속"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관재령 제3호 「접수

5) 이 행정명령의 원문은 조선은행 조사부, 『朝鮮經濟年報』 (1948년판), Ⅱ-87~88쪽에 재록되어 있다. 단 이 책에서는 '법령 제30호'라고 하고 있지만 '법령 제33호'의 오기가 분명하다. 한편 미군정이 귀속재산 불하에 나선 까닭으로서는 확대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또 민간기업에 불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나아가 민간기업에 의한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 도입의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장부가격은 1945년 6월 현재 장부상에 표시된 가격이고, 현재 시장가격 혹은 적정 불하가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6) 이 지시는 조선은행 조사부, 『朝鮮經濟年報』 (1948년판), Ⅱ-88~89쪽에 재록되어 있다. 이 지시의 목적은 도시 무주택자에게 자기 주택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을 없애고, 인플레이션 요인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농지에 관한 건」(1945.12.19.)에서는 "일본국민(자연인 또는 법인) 또는 일본정부 혹은 기타 대행기관이 소유하던 농지로서 육군부대 또는 조선군정청의 대행기관에 접수되지 않고 1945년 12월 6일부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그 소유권 수여의 결과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군정청의 소유가 된 모든 농지는 그 재산의 보존, 이용 및 회계에 관하여 신한공사를 재산관리관의 책임기관으로서 지명하고 이를 관리케 함"이라 하였다. 이로써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귀속농지는 대부분 신한공사의 관리로 넘어갔다.[7]

신한공사의 관리로 넘어간 귀속농지는 "토지를 소유치 못한 소작농민에게 전일본인 소유의 농지를 방매하야 소작농민으로 하야곰 자립농지 소유자가 되도록 협조하며 토지 소유권을 광범위로 보급식혀 조선의 농업을 발달식힘"을 목적으로 군정법령 제173호 「중앙토지행정처의 설치」(1948.3.22.)의 시행과 더불어 중앙토지행정처를 설치하여 농지불하 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신한주식공사는 해산되었다. 또한 상환지가는 평년 산출의 30할을 매년 20%씩 15년 동안 상환하도록 조처하였다.

귀속농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미군정기 동안의 불하실적은 【표 6】과 같다.[8] 그러나 이렇게 매각 처분된 귀속재산의 비중(금액 기준)은 1962년 말까지의 매각 총실적과 비교해 보면 0.4~0.5%에 지나지 않는 미미한 규모였다.[9]

【표 6】 미군정기 동안 불하된 귀속재산 (1945.8.15.~1948.10.12.)

(단위 : 백만원)

종류	사정건수		불하완료	
	진행중	완료	건수	금액
동산	1,173	961	416	66
기업체	1,434	660	239	1,109
주택	5,249	2,877	412	347
선박	291	230	92	67
물자영단	187	86	59	1,021
기타	241	65	61	1
합계	8,575	4,879	1,279	2,611

출처 : USAFIK, *Republic of Korea Summation*, No.35, 1948, 9-10, 7쪽.

7) 신한공사는 군정법령 제80호 「신한주식공사의 창립」(1946.5.7.)에 의해 신한주식공사로 개편되었다가 군정법률 제174호 「신한주식회사의 해산」(1948.3.22.)에 의해 해산된다.

8) 재무부, 『財政金融의 回顧』, 1958, 121쪽에 따르면, 미군정은 1945년 8월~1948년 10월 12일까지의 기간에 기업체 513건(금액기준 18,476,859환), 부동산 839건(5,214,679환), 기타 916건(2,823,267환), 총계 2,258건의 귀속재산을 매각 민영화했다고 하여 이 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9) 미군정기의 농지의 매각실적은 1948년 9월 15일까지 논 154,050 정보와 밭 44,979 정보, 합계 199,029 정보가 매각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사관계자료집』 제4집(신한공사 보고서류편), 1986, 177쪽.

미군정에 의해 접수된 귀속재산 중에서 이미 불하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한미간에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발효일 1948.9.20.)이 체결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다.[10]

이 협정 제1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좌기 재산에 대하여 미국이 보유하였던 일절의 권리 명의 및 이익을 자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함. 여기에서 좌기 재산이라 함은 지방세무서 부동산대장 및 도면 또는 법원 부동산등기부에 국유재산으로 기재된 바 재조선미군정청 및 남조선 과도정부의 일절 재산, 그 재산에 가한 일절의 현금 및 은행예금, 또는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한국경제에 제공한 일절의 구조물자 및 재건물자를 포함하여, 남조선 과도정부 각 부처 및 대행기관이 보유한 일절의 설비, 물자 및 기타 재산을 지칭함"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재조선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전 일본인 공유 또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재조선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을 승인하고 비준함. 본 협정 제1조 및 제9조에 의하여 미국 정부가 취득 또는 사용할 재산에 관한 보류 건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불하치 않은 귀속재산, 귀속재산의 임대차 및 불하에 의한 순수입금의 소비되지 않은 금액은, 일절의 수취계정 및 매매계약과 함께, 이것을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함..... 대한민국 정부는 본조에서 언급한 재산의 귀속,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발생한 일절의 현재 및 미래의 청구권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이로 인한 일절의 책임을 자에 미국으로부터 인수하며 미국은 그 책임을 면함"이라고 하였고, 제6조에서는 "전시규정 하에 일본정부가 압수, 몰수, 또는 가차압한 재한국 연합국 국민재산 및 일본정부가 적산으로 취급한 기타인의 재 한국 재산으로서, 제5조 규정 하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는 재산은 정당한 소유자가 적당한 기간 내에 반환을 청구하므로 당해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보호 및 보존함. 대한민국 정부는 소유자 및 대한민국 정부간의 상호협정에 의하여, 별도 처리를 정하지 않는 한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일절의 재산을 반환하기로 공약함.....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 유효 기일 전, 본조에 언급한 재산의 행정에 의하여 발생한 일절 청구권에 대한

10) 이 협정의 영문명은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이하 간단히 「최초협정」이라고 약칭하기로 한다.

책임을 미국정부로부터 인수하며 미국정부는 그 책임을 면함"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제9조 (라)항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본조 조건하에 미국정부가 상호협정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미국정부의 요구에 응하여 양도함"이라고 하였다.

이 협정 제1조에 의해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에 이관한 귀속재산의 추정가치는 305,331,089,000원 이었다.[11] 귀속재산 총건수는 291,909건인데 이를 재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면 기업체가 2,203건, 부동산이 287,555건, 기타 재산이 2,151건이며, 1958년 5월 말까지 그 90%에 해당하는 263,774건이 처분 되었다고 한다.[12] 그리고 귀속농지 분배사업 건과 귀속사업체 불하 건은 주택 점포 등 각종 부동산 건이 20만건 이상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제6조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연합국측 재산이란 1941년 12월 일제의 「적산관리법(敵産管理法)」에 의해 관리 혹은 처분되었던 영국과 미국의 재산이 대부분이었다. "1941년 1월말 현재 연합국 및 국민의 재산은 25,549,382.56엔인데, 그간 일본정부가 처분한 것이 8,350,747.17엔이고, 미군이 일본정부에서 인계한 것이 17,139,667.94엔에 해당"한다고 추정하고 있었다.[13] 대부분이 기독교 선교단체 등 종교단체와 석유회사 소유 재산이었다. 연합국측 민간인 소유자산에 대해서는 미 군정시대부터 이전 소유자에게 반환조치를 취해 왔다. 이 해설집 제1절에서 다루게 될《연합국 재산목록(聯合國 財産目錄)》 문서철은 일제강점기 동안 연합국의 국민들이 소유하던 재산이었지만 「적산관리법」에 의해 1942년 이후 적산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일본의 패전 후 그 관리대상에서 해제되는 재산에 관한 것이다. 단 이 문서철에서는 경상남도에 대한 것만 다루고 있다.

나아가 그간 미군정 관사나 미군 장교의 사택은 'D.H.'(Dependent House)로 분류된 주택을 징발하여 사용해 왔다. 이들 주택은 대부분 일제시대에 일본인 자산가들이 거주하던 고급 주택이었다. 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D.H'건물로 지정된 재산인 고급 주택과

---

11) USAFIK, *Republic of Korea Economoic Summation, 1948. Nov. Dec. No. 36,* p.9; 金基元, 『美軍政期歸屬財産에 관한 硏究-企業體의處理를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1989, pp.31~33

12) 이대근, 「미군정하 귀속재산처리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연구 I』, 한길사, 1983년, 425-6쪽.

13) 협정조문별 재산 세목 (제6조). (DA0421081).

호텔은 총 419건이었으며,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대부분 대한민국 정부에 이관되었지만 그 중 27건은 계속 미국관리 하로 두어지는 것으로 협약되었다. 제1절에서 다루게 될 《부산 D.H.목록(釜山 D.H.目錄)》이 여기에 해당한다.

Ⅲ.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귀속재산의 처리

「최초협정」이 체결된 것은 1948년 9월 11일이었고, 이 협정에 따라 미군정에 의해 일부 매각된 귀속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한국정부에 이관됨과 동시에 귀속재산의 처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도 한국정부에 이관되었다. 그리고 이관 절차상의 이유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업무는 실제로는 1948년 10월 12일 이후에야 비로소 한국 정부에 이관되었다.

한국정부는 귀속재산 전담기구로 1949년 2월 임시관재국을 설치하여 귀속재산을 처리하려고 하였지만, 1949년 7월의 국회에서 「귀속재산임시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귀속재산의 매각은 잠정적으로 중지되었다가, 1949년 12월에 귀속재산 처리의 원칙과 기본정책을 규정한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하면서 다시 귀속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귀속재산처리법」의 제정에 의해 정부는 미군정의 귀속재산처리의 방식과 원칙을 수용하면서 귀속재산처리를 위한 제도적 영역과 구체적인 조건들, 즉 민영화 대상물의 범위, 민영화 방법, 관할기관 등을 확정하였던 것이다.

정부 수립 후 10년째 되던 해에 발간된 『재정금융의 회고 : 건국십주년업적』을 통해 1958년 5월까지의 귀속재산 처분 실적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이 표를 보면 귀속재산 처분의 시기별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미군정기에는 기업체와 기타 등에서 건수 비중은 20.2%와 30.3%로 상당히 높지만, 계약액 비중은 0.04%와 1.7%로 무의미할 정도로 작다. 즉 이 시기의 귀속재산 처분은 앞에서 보았듯이 소규모 기업체나 주택 등의 소규모 귀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음이 뚜렷이 나타난다. 결국 대부분의 귀속재산은 한국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표 7】 연도별 귀속재산의 처분실적

(단위 : 건,원,%)

	기업체		부동산		기타		합계	
	건수	계약액	건수	계약액	건수	계약액	건수	계약액
미군정기	513	8,477	839	5,215	916	2,823	2,258	16,515
1948	407	12,086	541	3,450	590	1,991	1,538	17,527
1949	107	1,391	299	1,765	323	836	729	3,991
1950	162	74,038	731	15,990	161	1,159	1,054	91,186
1951	391	593,656	6,740	357,237	82	6,438	7,213	957,331
1952	359	860,700	9,981	683,846	81	17,849	10,421	1,582,395
1953	121	3,142,467	39,693	2,638,593	320	12,225	40,134	5,793,315
1954	233	1,219,071	92,735	7,852,064	95	31,834	93,063	9,102,970
1955	165	11,530,250	63,717	6,664,319	217	73,471	64,099	18,288,041
1957	61	4,037,434	36,418	2,810,299	162	12,243	36,641	6,850,075
1958.5.	23	983,169	8,784	732,102	75	3,167	8,882	1,718,438
합계	2,542	22,462,739	260,478	21,764,880	3,022	164,036	266,032	44,421,784
1948	16.0	0.05	0.2	0.0	19.5	1.2	0.6	0.04
1949	4.2	0.01	0.1	0.0	10.7	0.5	0.3	0.01
1950	6.4	0.33	0.3	0.1	5.3	0.7	0.4	0.21
1951	15.4	2.6	2.6	1.6	2.7	3.9	2.7	2.2
1952	14.1	3.8	3.8	3.1	2.7	10.9	3.9	3.6
1953	4.8	14.0	15.2	12.1	10.6	7.5	15.1	13.0
1954	9.2	5.4	35.6	36.1	3.1	19.4	35.0	20.5
1955	6.5	51.3	24.5	30.6	7.2	44.8	24.1	41.2
1957	2.4	18.0	14.0	12.9	5.4	7.5	13.8	15.4
1958.5.	0.9	4.4	3.4	3.4	2.5	1.9	3.3	3.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 재무부 편, 『재정금융의 회고 : 건국십주년업적』, 1958, 121, 161쪽에서 작성.

「최초협정」에 의해 귀속재산이 한국정부로 이관되고, 「귀속재산임시조치법」으로 그 처리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1949년 12월에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그 처리가 다시 활발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귀속재산 처리 사업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지만, 1951년 전선이 현재의 휴전선 부근에서 고착되면서 귀속재산 처리는 다시 활발해지게 되었다.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며,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불하에 나선 것도 원인이었다. 그리하여

1953~57년까지 5년간에 전체(미군정기~1958.5.) 계약 건수의 87.9%, 계약액의 90.1%가 불하되었다. 특히 기업체의 경우에는 1952년까지 건수 기준으로는 76.3%나 되었지만 계약액에서는 6.9% 밖에 차지하지 않아, 이 시기의 귀속기업체의 불하가 주로 소규모 기업체였음을 알 수 있고, 1953~57년간에는 건수 기준으로는 22.8%에 불과하지만 계약액 기준으로는 88.7%를 차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귀속사업체가 불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957년 이후에는 귀속재산의 불하가 건수 측면에서도 또 계약액 측면에서도 급속히 축소되기 시작한다.

한편【표 7】상단의 합계를 보면, 전체 건수 263,774건 중에서 기업체 건수는 2,542건으로 1.0%에 불과하지만, 전체 계약액 44,421,784원중 기업체의 계약액 22,462,739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0.6%로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기업체 형태의 귀속재산은 건수로는 소수이지만 계약액에서 보면 규모가 매우 큰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그 때문에 귀속재산 중에서 기업체가 특히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의【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재산의 크기(즉 계약액)에서 보았을 때 기업체 중에서는 개인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고 법인기업체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즉 귀속재산의 처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법인기업체의 처리라고 해도 좋다. 그 때문에 미군정 당국이나 혹은 한국정부 당국에서도 이 법인기업체의 파악과 처리에 역점을 두어 왔다. 단 법인기업체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조합,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의 법인형태로 된 기업체를 말한다.

미군정은 기업체 중에서 이 법인기업체의 파악에 특히 집중적인 노력을 하였다.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주주명부』류의 자료는 미군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법인기업체를 파악하였는지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경상남도 부분의『주주명부』를 보면, 각 법인기업별로 '법인기업체조사보고서(法人企業體調査報告書)', '귀속주식증명서(Certification of Vested Interests)', '주주명부(株主名簿)' 등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파악된 법인기업에 관한 자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최초협정」에 의해 한국정부에 인계되고, 한국정부에서는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법인주식대장』을 작성하였다.

등사본으로 되어 있는 이『법인주식대장』의 내용을 보면, 제목이『정본 법인주식대장

(국유재산)』이고 작성처는 국세청으로 되어 있으며, 첫 번째 쪽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1. 본 주식대장은 미군정청 재무관리관의 주식확인대장에 근거하여 재무부장관이 확인한 주식대장에 의하여 작성하였음.
2. 대한민국 각 행정기관은 본 주식대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국유주식을 인정할 수 있음.
3. 본 주식대장의 기재내용은 국세청장의 확인 없이 변경할 수 없음.
4. 국세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내용을 정정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비고난에 국세청장의 확인 근거 문서기호 및 일자를 기재하고 정정난 두부(頭部)에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2번째 쪽에는 이 『법인주식대장』에 수록되어 있는 법인에 대한 집계표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수〉

회사별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조합	기타	합계
수	43	146	997	82	61	35	1,364

그리고 제일 마지막 쪽에는 "상기 주식 또는 지분내용을 확인함. 1966.9.23. 국유주주 대한민국 정부 국세청장(직인)"이라고 적혀 있다.

국가기록원에는 이런 『법인주식대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서가 여러 가지 소장되어 있는데, 표지와 1~2쪽 및 마지막 쪽의 기재내용은 모두 동일하다.[14] 3번째 쪽부터는 각

14)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법인주식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단 ( ) 속은 관리번호를 의미하고, – 다음에 열거된 것은 그 문서철 내의 문서명을 의미한다. 『법인주식대장』(BA0908870) 『법인주식대장(원본)』(BA0907876) – 주식대장보관 4종, 주식대장배부, 주식대장회수, 『법인주식대장(원본)』(BA0907877) – 1945.8.9.현재 일본법인대장 보관, 일본법인대장 정정, 『국유법인주식대장』(BD0013324) – 국유법인주식대장(벌교세무서), 『법인주식대장(국유재산)』(BA0908922), 『법인주식대장(국유재산)』(BA0907882) 『법인주식대장(국유재산)』(BA1129851) – 법인주식대장 부본(국유재산), 공익법인 이사행사권 및 사원권대장(국유재산),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법인대장 부본, 『기능별 법인주식대장 정본(국유재산)』(BA1129718) – 기능별 법인주식대장 정본(국유재산), 공익법인 이사행사권 및 사원권대장(국유재산),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법인대장 정본, 관재19562~457(1969년 5월 23일), 국유화결정된 법인재산목록, 『69~75 휴면법인 주식대장 정리관계철』(BA0908273) – 주식대장정리(청산종결), 청산종결보고, 법인주식대장 신규등록, 법인주식대장 신규등록, 법인주식대장 정리, 법인주식대장 및 이사행사권 대장정리, 법인주식대장 주식내용정정, 법인주식대장 및 이사행사권 대장정리, 귀속휴면법인 청산종결, 법인주식대장 및 이사행사권 대장정리 ; 『69~75 휴면법인 주식대장 정리관계철』(BA0908598) – 임시주주총회참석, 법인주식대장 신규등록, 법인주식대장 정리, 법인주식대장 청정, 법인주식대장 청정, 법인주식대장 신규등록, 법인주식대장 신규등록, 법인주식대장 정리, 법인주식대장 정리. 단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법인대장』의 법인은 일본에 본점이 있었던 것을 말한다.

법인기업별로 회사명, 주소, 국유주, 한국인주, 법인주, 기타, 합계, 비고 등에 대한 기재가 있다. 비고난에는 불하, 지분매각, 주식매각, 증명교부, 국유, 국가수용, 일반재산화, 해산, 청산중, 청산종결, 소멸 등 각 법인기업의 처리내역과 처리일자에 대한 주기가 달려 있다. 즉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법인주식대장』은 모두 앞에서 본 『주주명부』 즉 '미군정청 재무관리관의 주식확인대장'에 의거하여 1966년에 작성된 것을 정본(正本)으로 하는 것들이다. 이 정본 『법인주식대장』을 토대로 여러 개의 사본이 만들어져 귀속재산 처리를 담당하는 각 정부기관에 배포되었다.

그런데 귀속법인기업체 중에는 정본 『법인주식대장』을 작성한 후에 추가로 발견된 것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추가로 발견되는 법인기업체는 회사형태별 제일 끝 페이지에 국세청장의 확인과 더불어 추가로 기입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인주식대장』에 수록되어 있는 회사수는 2쪽의 집계표 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10여종의 『법인주식대장』은 외형상으로는 동일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약간씩 차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법인주식대장』은 국유주식 혹은 지분(즉 국가에 귀속된 귀속주식 혹은 귀속지분)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기업체로서 미군정 및 한국정부가 파악한 것들에 대한 대장이다. 따라서 해방 당시 일본인이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출자하였던 법인기업체에 대한 정보는 현존 자료 중에서는 이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주식대장』과 별도로 국가기록원에는 『1945.8.9.현재 일본법인대장(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재산이 귀속된 법인)』이라는 자료도 소장되어 있다. 전자가 조선에 본점을 두던 법인에 대한 것이라면, 후자는 일본에 본점을 두던 법인에 대한 것이다. 『법인주식대장』과 마찬가지로 이 문서의 1번째 쪽에도 '유의사항'이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은 2번째 항목 즉 "1945.8.9. 현재 본 법인이 소유하였던 일체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되었음"이라는 항목 이외에는 모두 동일하다.

2번째 쪽에는 234개의 일본법인의 회사종류별 집계표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법인의 회사종류별 집계표〉

(단위 : 개)

회사별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수	215	5	10	3	1

3번째 쪽부터는 법인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는데, 『법인주식대장』과는 달리 '상호', '본점소재지', '지점소재지', '비고' 등의 4가지 항목만 기재되어 있는데, 소재지는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 중 하나만 적혀 있다(대부분 지점소재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 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945.8.9. 현재 본 법인이 소유하였던 일체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소유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되었음을 확인함. 1969.5.10. 대한민국 정부 국세청장(인)".

따라서 이 자료에서는 상호와 본점 혹은 지점소재지에 대한 정보만 알 수 있을 뿐이지만, 1945년 8월 9일 현재 조선에 소재하던 일본 본점법인의 명단을 알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법인주식대장』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사료로 판단된다.

Ⅳ. 귀속휴면법인의 청산

이처럼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하여 귀속재산 처리가 활발해지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튀어 나오기 시작하였다.

우선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1962년 말 현재, 전체 귀속재산 369,619건 중에서 85.4%인 315,642건이 매각되었고, 14.6%에 해당하는 53,977건만 아직 미처리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 귀속재산의 처리가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매각된 귀속재산 중 매각대금의 '미납'과 '체납' 비율이24.9%나 되는 등 실제 매각과정은 그다지 원활하지 못하였다. 한층 더 큰 문제는 관재당국이 귀속법인재산 일부를 국유재산으로 간주하여 처분한 사례가 발생하여 민간주주들의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는 등 귀속재산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청과 소원 건수는 전체 매각건수의 2.1% 정도이기 때문에 많지 않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건수가 6,634건에 달하고 있었고, 행정소송 건수 역시 1,303건에 달하고 있었다.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귀속법인의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26,700 건이나 되었는데, 법원은 그것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표 8】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 처리 내역

(단위 : 건)

귀속재산 건수					소원, 소청, 행정소송 사건수	
매각	미납	체납	미처리	합계	소청, 소원	행정소송
315,642	46,483	32,287	53,977	369,619	6,634	1,303
100.0%	14.7%	10.2%				
85.4%			14.6%	100.0%	2.1%	0.4%

〈주〉귀속재산 건수에 대한 통계는 1962년 12월 31일 현재이고, 소청사건수 혹은 소원사건수는 1949.1.1.~1958.4.31. 간의 것이며, 행정소송 사건수는 1951~1958년간에 대한 것이다.

이런 문제 중에서 특히 심각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귀속재산처리에 대해 법적 분쟁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법률 제1346호, 1963.5.29.시행)은 귀속재산처리를 합법화시킴으로써 예견되는 혼란을 미리 막고자 제정 · 시행되었다. 단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서 1964년 12월 말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임을 밝혔다. 또 이 법에서는 귀속휴면법인의 해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무부장관 또는 사세청장이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면법인의 재산처리는 이 법과 「귀속재산처리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 시행 전에 매각된 재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에 의거하여 처리한 것으로 합법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1964년 12월 말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 후 새로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휴면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률(안)」 혹은 「휴면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입법 목적으로 제정이 추진되었지만, 법무부 등의 반대의견에 부딪혀 결국 법률로 성립되지 못하고 사장된다. 이 해설집에서는 이 「휴면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다루게 되겠지만, 사장된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 그 자체보다도 그 제정 취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귀속법인의 청산업무는 1948년 9월 임시관재총국에서 청산을 개시하여, 2000년에 마무리된다. 그 동안의 청산업무에 대한 정리는 재정경제부 연합청산위원회에서 『국가귀속

청산법인 청산자료집』이라는 5권의 책자로 발간하였다.[15] 귀속법인의 청산에 관한 집대성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해설집에서는 이 자료집을 발간한 연합청산위원회의 문서철을 통해 연합청산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허수열(충남대학교)

15) 財政經濟部 聯合淸算委員會 [編], 2000, 『國家歸屬 淸算法人 淸算資料集』, 『淸算終結法人別 賣却財産 및 贈與財産目錄:가납양조주식회사 부터 일선해운주식회사 까지』, 『淸算終結法人別 賣却財産 및 贈與財産目錄:일질광업개발주식회사 부터 주식회사 고력농장 까지』, 『淸算終結法人別 賣却財産 및 贈與財産目錄:주식회사 고뢰농장 부터 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까지』 『淸算終結法人別 賣却財産 및 贈與財産目錄:주식회사 환육상점 부터 조선피복공업조합 까지』.

| Chapter I |

01 귀속기업체 현황 및 중요재산 처리개요 외(재무부)

관리번호 : DA0421081
쪽　　수 : 129
생산년도 : 1953년
생산기관 : 관재청

귀속재산에 대한 관심은 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 혹은 일본인이 소유하던 재산이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거치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하는 점에 집중되어 왔다. 이 문서철은 이런 귀속재산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재산을 다룬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① 일제강점기 동안 연합국의 국민들이 소유하던 재산으로서 일본의 「적산관리법(敵産管理法)」에 의해 적산으로 관리되다가 일본의 패전 후 그 관리대상에서 해제되는 재산, ② 귀속재산 중 일부를 미군정에서 사용하다가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해 반환되거나 계속 사용되는 재산,[16] ③ 한국전쟁기간에 미군에 의해 징발되었던 재산. 즉 이 문서철은 지금까지 거의 관심영역 밖에 놓여 있던 이런 재산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자료라 할 수 있다.

Ⅰ.《연합국재산목록(聯合國財産目錄)》

문서철《연합국인 재산관계 법령집(聯合國人 財産關係 法令集)》은 앞에서 본 3 종류의 재산의 처리에 관한 법령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우선 이 법령집의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법령들이 열거되어 있다.[17]

16) 이 최초협정은 1948년 9월 11일에 서명되고, 같은 달 20일부터 발효되었다. 한국에서는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49년 1월 18일에 공포되었다. 참고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종협정」(1950년 1월 17일 발효)이라는 협정도 있다.

17) 단 *표를 붙인 법령은 제목만 열거되어 있고 법령 자체는 편철되어 있지 않다.

*「적산관리법(敵産管理法)」, 일본법률 제99호(1941년 12월 22일 시행)
*「적산관리법을 조선, 대만 및 사할린에 시행하는 건」, 일본 칙령 제1178호 (1941년 12월 22일 시행)
*「적산관리법 시행규칙」, 조선총독부령 제342호 (1941년 12월 23일 시행)
「일본 적산관리인 명의 등기 말소에 관한 건」, 군정법령 제162호 (1948년 1월 15일)
「관재수속요령(官財手續要領)」, 제23호 (1948년 4월 22일)
「정책 및 전례(政策及前例)」, 제29호 (1948년 5월 3일)
「일본정부에 의하여 적산으로 동결된 재산의 해제」, 미군정법령 제210호 (1948년 7월 12일)
「한미협정(韓美協定)」 제6조 (1948년 8월 1일)[18]
한미협정 조문별 재산세목(韓美協定條文別財産細目) 제6조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歸屬財産處理特別會計法)」, 법률 제98호 (1949년 1월 1일 시행)

여기에서는 이런 법령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문서철 속에 들어 있는 자료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만주침략 이후 악화되기 시작하였던 미일 관계는 일본의 중국 본토침략 이후 한층 더 악화되었다. 1937년 10월, 미국대통령 루즈벨트는 이른바 '격리연설(Quarantine Speech)'을 통해 침략전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19] 12월 12일에는 일본군의 남경공격 과정에서 일본해군기가 양자강에 정박해 있던 미국 아시아함대 양자강경비선 퍼네이(Panay)호를 공격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이튿날에는 남경함락과 '남경대학살'이라는 만행이 벌어지게 된다. 13일 미국 국무성의 긴급회의에서는 "일본의 행위는 명백히 악질이지만, 일본에게 반성과 장래의 보장을 강요할 수 있는 해군력을 극동에 파견" 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사과, 배상, 관계 장교 처벌, 장래의 보장만을 요구" 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루즈벨트는 그것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14일에는

18) 「한미협정(韓美協定)」은 「최초협정」을 말한다.

19) "불행하게도 세계에는 무질서라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것 같다. 몸의 병이 퍼지기 시작하면 사회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자를 격리하는 것을 인정한다.....선전포고도 경고도 또 정당한 이유도 없이 부녀자를 비롯한 일반시민이 공중 폭격에 의해 가차 없이 살육되는 전율할만한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호전적인 경향이 점차 타국으로 만연될 염려가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공동행동에 의해 그들을 격리시켜야 할 것이다." 이 연설에서는 직접적으로 특정 국가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루즈벨트가 독일, 이태리, 일본 등을 비난한 연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연설 원문은 http://millercenter.org/president/speeches/detail/3310 참조.

일본이 행해야할 배상지불의 보증으로서 일본정부와 일본의 재미 전 재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대통령의 권한을 연구하도록 명했다. 재무성은 재미 일본 재산을 산출하고, 국가비상사태와 재산이동허가제 실시 선언에 의한 관리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재미 일본자산 동결관련 검토는 이 때부터 추진되었던 것이다.

단지 도덕적 비난과 항의에 그쳤던 미국의 대일 관계는 1938년 11월에 일본이 '동아신질서선언(東亞新秩序宣言)'을 발표하고, 1939년 2월 중순의 해남도(海南島) 침공 및 신남군도(新南群島, 현재의 南沙群島) 영유선언 등 남방진출 전략을 본격화하게 되자, 더 이상 실력행사를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경제제재를 예고할 단계에 이르렀다. 일본과의 전쟁에 말려들지 않으면서도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 결론이 바로 '미일통상항해조약(美日通商航海條約)'의 폐기 통고였다. 1939년 7월 26일 폐기통고로부터 6개월 후인 1940년 1월 26일 이후 그 조약은 실효(失效)되었고, 미국은 그 후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경제제재를 부분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6월 이후 일본에 대한 특수공작기계와 석유제품(주로 항공유) 및 철, 설철(屑鐵)의 수출은 허가제로 변경되었다. 또 8월부터는 일본에 대한 항공유와 설철의 수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1941년 7월 28일 일본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남부로 진주한 것이 알려지자, 미국은 미국에 소재하는 일본자산의 동결과 대일무역의 포괄적 제한을 결행하게 된다.[20] 일본도 이에 맞서 1941년 7월 28일 「외환관리법(外國爲替管理法)」에 근거하여 제정된 「외국인관계거래단속규칙(外國人關係取引取締規則)」으로 외국인의 재산 특히 적성재산(敵性財産)에 대한 거래금지와 자산동결 조치가 취해졌다.[21] 그리고 이 규칙이 발포된 28일에 미국과 미국 영지 전체, 필리핀 연방, 영국 및 북 아일랜드의 지정을 시작으로 진주만 공습이 행해질 때까지 네덜란드와 네덜란드령 인도(구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제외), 호주, 버마,

20)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는 오늘날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 해당한다. 1940년 6월 독일의 침공으로 파리가 함락되고 비시정권이 독일과 휴전하자, 일본은 프랑스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북부에 25천명의 일본군을 파견하여 운남철도를 통한 중국원조망의 차단에 나서게 된다. 1941년 7월에는 동남아시아 침략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역시 프랑스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남부에 진주하게 된다.

21) 「외국인관계거래단속규칙」은 1941년 7월 28일 대장성령(大藏省令) 제46호로 공포되었고, 제1조에서 대장대신이 적성국을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資産凍結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국령 말레이, 인도(실론 포함),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령 케냐, 영국령 우간다, 탕가니카 영국위임통치령 등으로 지정이 확대되었다. 진주만 공습 후에도 영국의 해외 영토(단, 홍콩, 구 영국령 보르네오, 버마, 구 영국령 말레이를 제외), 멕시코,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쿠바, 아이티, 컬럼비아, 엘살바도르, 이집트, 이라크, 벨기에, 그리스, 파나마, 노르웨이 등으로 그 지정이 추가로 확대되어 나갔다.[22]

그런데 이러한 자산동결 조치는 행위의 금지나 제한에만 국한되는 말하자면 매우 소극적인 제재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12월 8일의 대미 선전포고 이후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적산관리법(敵産管理法)」을 제정 공포하였다.[23] 이 법률에 의해 일본정부는 적국 및 적국인의 재산에 대해 관리인을 두거나 매각명령 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필요에 따라 적국 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일본에서 「적산관리법」이 공포된 바로 그 날, 조선에서도 「적산관리법을 조선 대만 및 화태에 시행하는 건」(칙령 제1178호, 1941년 12월 22일)에 의해 「적산관리법」이 시행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적산관리법 시행규칙」(조선총독부령 제342호, 1941년 12월 22일)을 제정하고, 1941년 12월 29일에는 「적산관리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적산관리법 및 적산관리법시행령의 대상이 되는 적국(敵國)으로 미국(필리핀 연방 및 영지 전체를 포함)과 영국(인도 및 해외영토를 포함)으로 고시하였고,[24] 1942년 1월 23일에는 조선총독부 고시 제99호로 적국에 네덜란드(난령 인도 포함)를 추가하였다.[25] 그리고 이 적국 고시에 의거하여, 조선에 소재하는 적국의 재산(敵産)에 대한 관리자 선임도 고시되었다. 조선총독부 관보에 의하면 다음의 적산에 대해 적산관리인(敵産管理人)이 선임되었다(【표 9】 참조).

---

22) 日本 大藏省外資局 編, 『敵産管理法及關係命令並告示』, 1943, 57쪽 및 93-95쪽 참조.

23) 「적산관리법(敵産管理法)」은 법률 제99호로 1941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그 하위법령인 「적산관리법 시행령」(칙령 제1179호, 1941년 12월 22일 시행) 공포에 이어 「적산관리법 시행규칙」(대장성령 제76호, 1941년 12월 23일 시행)이 각각 시행에 들어갔고, 조선에 대해서도 적산관리법을 조선 대만 및 화태에 시행하는 건」(칙령 제1178호, 1941년 12월 22일)에 의해 「적산관리법」이 시행되었다. 이상의 각 법령에 대해서는 日本 大藏省 外資局 編, 『敵産管理法及關係命令並告示』, 1943을 참조하라.

24) 조선총독부 『관보』, 1941년 12월 29일자, 조선총독부 고시 제 2086호.

25) 화란국(和蘭國)은 네델란드를 의미하고, 난령인도(蘭領印度)는 네델란드령 인도 즉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자바섬 등을 의미한다.

【표 9】 일본정부에 의하여 적산으로 동결된 자산

고시번호	고시연월일	적산으로 동결된 재산
186	1942.2.7.	Standard-Vacuum Oil Co.(Stanvac)
		Rising Sun Oil Co.
		Singer Sewing Machine Co.
		Corn Products Refining Co.
485	1942.3.31	재단법인 大英癩病者救療會 朝鮮支部維持財團
500	1942.4.6.	일본 나쇼날金錢登錄機販賣株式會社
722	1942.5.13.	魚乙彬제약주식회사
		雲昌광업주식회사
		京城모터스주식회사
		주식회사柳韓洋行
775	1942.5.22.	재단법인 미 감리교회 조선선교부 유지재단
		재단법인 미 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
		재단법인 남 감리교회 조선선교부 유지재단
		재단법인 미국 야소교 북장로파 조선선교회 유지재단
		경성 외국인학교 유지재단
		재단법인 皮漁善기념성서학원 유지재단
		재단법인 조선기독교 청년회 국제위원 간사 유지재단
		재단법인 야소교 동양선교회 유지재단
		재 일본 Presbyterian 선교사 사단
		재 일본 Congrigational(감리파)선교사 사단
		재단법인 미국 야소교 남장로파 조선선교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재 조선 야소교 장로파 선교회 신학교 유지재단
		재단법인 대영성서공회 조선지부 유지재단
		재단법인 조선기독교서회
		재단법인 호주 빅토리아국 장로파 조선선교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조선야소교 캐나다연합교회 유지재단
924	1942.7.1.	京城電氣주식회사의 주식
965	1942.7.8.	서선합동전기주식회사
		일본마그네슘금속주식회사
1011	1942.7.18.	Horace Grant Underwood
		강원도 고성군 巨津面 花浦里
		강원도 고성군 縣內面 竹亭里
		전라남도 求禮郡 山洞面 佐沙里
1116	1942.8.17.	사립연희전문학교 기독교연합재단법인

고시번호	고시연월일	적산으로 동결된 재산
1501	1942.11.30.	W. W. Taylor
		Albert Wilder Taylor
		Mary Linley Taylor
		Bruce Tickell Taylor
		George Alexander Taylor
1502	1942.11.30.	남선합동전기주식회사
		厚昌광업주식회사
		조선철도주식회사
116	1943.2.10.	L. C. Brannon
		C. I. McLaren
		H. W. Davidson
		수잔 G. 프레이어
137	1943.2.18.	C. S. Deming
267	1943.3.10.	L. H. Snyder
654	1943.5.28.	Alice R. Appenzeller
1276	1943.11.2.	경성체육구락부

〈주〉 적산관리인의 첫 선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참고로 魚乙彬은 Charles. H. Irvin의 한국이름이고, 皮漁善은 Arthur Tappan Pierson의 한국 이름인데 그의 유언에 따라 설립된 皮漁善기념성서학원이 평택대학교의 전신이다. 1942년 11월 30일자 고시에 의해 적산관리인이 선임된 테일러가(Taylor家)의 재산은 동양합동광업 (Oriental Consolidated Mining Co.), 평강광업, 북진금광, 경성모터스 등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 밖의 외국인들은 모두 선교사들이다.

출처 : 조선총독부 『관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측의 승리로 종결됨에 따라 일본의 「적산관리법」에 의해 관리되었던 연합국측 국민들의 재산도 동결해제 되었다. 조선에 소재하던 연합국측 국민들의 재산동결 해제에 관한 최초의 법령은 1948년 1월 15일에 제정되고, 1월 25일부터 시행된 군정법령 제162호 「일본 적산관리인 명의 등기 말소에 관한 건(日本敵産管理人名義登記抹消에關한件)」이었다.

전문 3조의 짤막한 이 법령은 "이전에 일본 적산관리인이 관리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소속을 명백히 하며, 이러한 소유권 등기를 정정(訂正)하기 위한 간이절차(簡易手續)를 설정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1941년 12월 23일자 일본법률 제99호(「적산관리법」)에 의하여 미국인, 연합국인 및 조선에서 창립된 법인소유 부동산이 관리의 명목으로 일본 적산관리인의 명의로 현재 등기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서 이를 전부 말소(抹消)" 할 수 있게 하였다(제2조).

나아가 1948년 7월 12일에는 「일본 정부에 의하여 적산으로서 동결된 재산의 해제(日本政府에 依하야 敵産으로서 凍結된 財産의 解除)」라는 군정법령 제210호를 제정하고, 1948년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26] 이 법령은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앞의 군정법령 제162호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조문별로 재산의 해제 방법(제2조), 재산의 반환(제3조), 권리이전절차(제4조), 현금의 처리(제5조)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재산문제라는 것이 매우 복잡하여 군정법령 제162호와 같은 간단한 법령으로 처리하기에는 처음부터 무리였다. 이에 군정법령 제210호 특히 그 제4조에서는 동결재산의 해제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부닥친 여러 가지 문제를 적시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다음에 살펴볼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제4조를 인용해 둘 필요가 있다.

제4조 (권리이전수속) 미국인, 연합국인, 미국 기타 연합국의 법인 및 조선법인으로서 제2조에 규정한 재산의 관리를 상실한 자는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 및 그에 기한 이후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

가. 부동산이 아직 일본 적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1948년 1월 15일부 법령 제162호(「일본 적산관리인 명의 등기말소에 관한 건」)의 규정에 의함.

나. 부동산이 일본인 또는 일본법인에 매도 또는 이전되어 현재 1945년 12월 6일부 법령 제33호(「조선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에 의하여 조선군정청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일본 적산관리인의 관리에 이전한다는 등기 또는 일본제국의 적국인 또는 적국인의 관리에 있다고 인정된 자연인 또는 법인소유 부동산의 동결을 명한 법률, 명령 또는 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한 기타의 등기 및 그 후의 일체의 등기를 말소할 관할권을 가진 지방법원등기소에 신청함.이 신청서에는 말소할 등기를 표시하고 관재처의 승인과 서명을 요하며 본 영 제4조에 규정한 현금이 있을 때는 이를 관재처에 이관하였음을 표시함. 신청인 또는 관재처로부터 관재처에서 승인 및 서명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등기소는 즉시 등기부에서 신청서에 표시된 사항을 말소하고 등기부에 말소의 일자와 그 말소는 본 영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를 기입함.

다. 부동산이 일본정부 조선총독부 기타 남조선의 각 관청 내지 정부기관에 매도 기타 처분되어 현재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조선군정청에 귀속되어 있을 때는 전항에 기재된 수속에 의함. 단, 관재처에 이전된 현금은 제4조에 기재한 기관을 위하여 보관하며 관재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함.

---

26) 1961년 12월 31일의 법률 제947호 「일본국 정부 동결 재산의 반환에 관한 법률(日本國政府凍結財産의返還에關한法律)」에 의해 군정법령 제210호 「일본 정부에 의하여 적산으로서 동결된 재산의 해제」는 폐지되고 이 법으로 대체되었다.

라. 부동산이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조선법인에 매도 또는 처분되어 또는 최초에 일본인 또는 일본 법인에게 매도 또는 처분되었다가 후에 조선인 또는 조선 법인에게 매도 또는 처분되고 그 부동산의 명의가 현재 조선인 또는 조선 법인에게 소속되어 있을 때는 그 법인이 전부 또는 일부 재조 선미군정청 관재처에 의하여 관리되는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 등기소에 대하여 신청하는 이외에 관재처에 대하여 부동산 시가의 평가를 신청하여야 함. 관재처는 그 부동산을 평가하고 현소유자에 대하여 평가액 및 그 부동산 평가액을 수취할 수 있고 그 금액은 특별히 소유자의 구좌로 보관되어 있으며 또 희망이 있으면 그 부동산 대신 그와 동등 가격으로 평가한 타 귀속 재산 또는 재산과 현금을 수취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통지서를 송달함. 나항에 의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지방법원 등기소에 제출할 신청서는 부동산의 시가평가 신청서와 같이 관재처에 제출함. 관재처는 부동산을 평가한 후 등기말소신청서에 승인 서명하며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였으면 그 금액은 현소유자의 특별구좌로서 보관 되어있다는 것을 표시함. 등기말소에 관한 승인 및 서명이있는 신청서가 부동산 등기소에 제출된 때는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는 즉시 등기부로부터 말소함을 요함.

《귀속기업체 현황 및 중요재산 처리개요 외》라는 이 문서철에는 일본의 「적산관리법」에 의해 동결되었던 연합국측의 재산 중 경상남도 관재국에서 작성한 《연합국재산목록(聯合國財産目錄)》이 들어 있다.[27] 모두 207건의 재산에 대한 목록이 있는데, 그 기재 양식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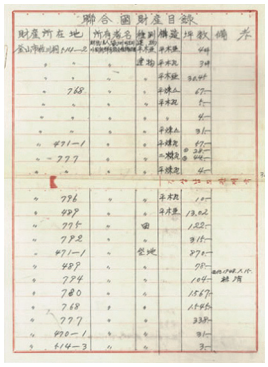
聯合國財産目錄

【그림 1】 연합국재산목록 (DA0421081)

기재양식은 재산소재지(주소), 소유자명, 종별(건물, 대지, 답, 전, 잡종지, 도로), 구조, 평수, 비고 (등기말소 연월일, 미등기, 부산시소유) 등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표 10】 및【표 11】과 같다. 경상남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경상남도의 경우에는【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호주 조선선교회(재단법인 호주 빅토리아국 조선선교회 유지재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66%), 소유부동산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라이징선 석유회사나 스탠더드 석유회사와 같은 기업체에 비해 거의 2배나 된다. 또 소유 부동산을 종류별로 보면,

27) 이 연합국재산목록의 작성연월일은 명기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문서철의 생산연도가 1953년이기 때문에 그 부근에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대지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전답 소유 면적도 제법 된다. 또【표 11】에서 이들 연합국재산을 지역별로 보면, 부산시, 마산시, 통영군, 거창군, 창녕군 등에 소재하고 있지만, 특히 부산 지역에 압도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라이징선 석유회사와 스탠더드 석유회사의 재산은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현재 영선대로와 태종로 사이 지역)과 청학동 일대 (현재 부산저유소 삼거리 북쪽 부근)에 소재하고 있었다.

【표 10】 연합국재산목록에 대한 소유자와 종별 분석

(단위 : 평)

소유자	건물	대지	답	전	사사지(社寺地)	잡종지	도로	총합계
Rising Sun Oil Co.	216	4,941		921		23	67	6,168
Standard Oil Co. of N.Y.	982	4,239				2,023		7,244
마구레 (McLaren)		12						12
호주 조선선교회	2,641	14,552	4,050	5,944	249		122	27,557
점셋			236	877				1,113
총합계	3,839	23,743	4,286	7,742	249	2,046	189	42,094

〈주〉 마구레와 점셋은 원본에 기입된 그대로 인데, 사람 이름으로 추측된다. '호주 조선선교회'는 '재단법인 호주 빅토리아국 조선선교회 유지재단'을 줄인 말이다.
출처 : (DA0421081) 에서 작성하였다.

【표 11】 연합국재산목록에 대한 소유자와 소재지역별 분석

(단위 : 평)

소유자	부산시	마산시	통영군	거창군	창녕군	총합계
Rising Sun Oil Co.	6,168					6,168
Standard Oil Co. of N.Y.	7,244					7,244
마구레 (McLaren)		12				12
호주 조선선교회	14,833	5,268	3,823	3,633		27,557
점셋			236		1,113	1,113
총합계	38,245	5,280	3,823	3,633	1,113	42,094

출처 : (DA0421081) 에서 작성하였다.

한편 비고난에서 '등기말소'로 기재된 것이 40건이고, '미등기'로 기재된 것이 14건, '소유자 부산시'로 기재된 것이 2건, '통영여자중학교 사용'으로 기재된 것이 6건, '등기상 입석산업(立石産業)주식회사'로 기재된 것이 1건, '등기부상 김ㅇㅇ' 혹은 '등기부상 송ㅇㅇ' 등과 같이 한국인 이름으로 기재된 것이 2건이었다. 비고난의 상당수가 여전히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문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연합국재산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든가 아니면 동결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등기상 입석산업(立石産業)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후자의 예에 속할 것이다. 또 부산시가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소유자 부산시'로 되어 있는 경우나 '통영여자중학교 사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 혹은 소유자가 한국인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동결해제 이전에 이미 소유권이 한국정부나 그 산하기관 혹은 한국인으로 이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결해제문제가 쉽지 않게 된다. 군정법령 제210호의 제4조와 같은 구체적 규정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구체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과 같은 새로운 변화요인이 발생함으로써 동결재산의 해제문제는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문서철에는 그와 관련된 2개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연합국인 소유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적용여부 질의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관재청장이 법제처장에게 보낸 질의 공문이고,[28]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법제처장이 관재청장에게 보낸 답신 공문이다.[29] 호주 빅토리아국 조선선교회 유지재단의 경우에는 상당량의 전답을 소유하고 있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Ⅱ. 《부산 D.H.목록(釜山 D.H.目錄)》

《귀속기업체 현황 및 중요재산 처리개요 외》라는 문서철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중요 문서들은 《부산 D.H.목록(釜山 D.H.目錄)》에 편철되어 있는 〈미 주둔군 사용해제 재산처리상황(美駐屯軍使用解除財産處理狀況)〉이라는 조사자료이다.

우선 'D.H.목록'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부터 설명해 보자. 경향신문의 '창간 30돌을 맞아 발굴하는 숨은 이야기들'에서는 '귀속재산 – DH 하우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30]

> 해방 직후 군정청의 고관들이 가장 군침을 삼키며 욕심을 냈던 적산가옥 3백여채가 서울에 있었다. 모두 건평 1백평이 넘는 대저택들이었다. 미군들은 군정이 실시되자마자 이들 고급 문화

28) (DA0421081) 관리 제387호, 1953년 4월 20일.
29) (DA0421081) 법제 2 제61호, 1953년 5월 11일.
30) 경향신문, 1977년 10월 14일자.

주택을 군정청의 귀속 내지는 종속가옥으로 지정하고 일반인들의 점유를 일체 허용치 않았고 연고권도 인정해주지 않고 마구 명도집행을 단행했다.

우선적으로 이 호화주택에 들어간 것은 물론 미군들이었고, 나머지는 한국인 고위관리들이 차지했다.

미군들은 이 고급저택을 군정청의 관사라는 뜻으로 디펜던트 하우스 (Dependent House)라고 불렀다. 이를 한국인들은 약자를 따서 「DH 하우스」라고 불렀고, 이 말이 하나의 유행처럼 호화주택의 별칭으로 시정에서 통용되었다.

따지고 보면 소위 DH 하우스들은 일제시대 이 땅에 진출한 일본의 대회사 중역들의 사택이 대부분으로 대지 2백~5백평에 건평이 1백평은 넘는 호화주택들이었다.....

서울 장충동(장충체육관 앞), 신당동, 약수동(장충체육관과 한남동으로 빠지는 길 사이 주택가) 등 3개동에 이런 주택이 1백 50채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남산동 청파동 후암동 신교동 등에 흩어져 있었다.

일본에서도 1945년 12월에 GHQ(General Head Quarter, 최고사령부)가 일본정부에게 약 2만호의 진주군(進駐軍) 가족용 주택을 건축하도록 명령했다. 이 주택을 디펜던트 하우징(dependent housing)이라고 하였다. 건축 장소는 동경, 요코하마를 비롯하여 일본 전국에서 1만 6천호, 조선 4천호였다고 한다. 그 일환으로 1948년 6월에 나리마스비행장(成增飛行場) 터에 그랜드하이츠(グラントハイツ)가 준공되었고, 그 자료집으로 발간된 것이『DEPENDENTS HOUSING』이라는 책자였다.[31] 다음에 살펴볼 디펜던트 하우징에 관한 자료를 보면, 디펜던트 하우징에는 가족용 주택뿐만 아니라 공관건물 같은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GHQ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서도 디펜던트 하우스가 건축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앞에서 인용한 경향신문 기사에서 보았듯이 조선에 주둔하던 미군은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주택이 귀속재산으로 미군에 접수됨에 따라 그 중에서 크고 좋은 것들을 골라 디펜던트 하우스로 삼아 미군정기간 동안 활용하였던 것은 확실하다.

---

31) GHQ Design Banch Japanese staff, 商工省工藝指導所 編,『デペンデントハウス : 連合軍家族用住宅集區(建築篇 · 家具篇 · 什器篇), 技術資料刊行會, 1948. 이 책의 영문제목은 DEPENDENTS HOUSING으로 되어 있지만, 일본어로 된 속표지는 'デペンデントハウス – 聯合軍家族用住宅集成'으로 되어 있어 DEPENDENT HOUSE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최초협정」 보충(supplement) 부분을 보면, 영문판에 'dependent house'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한글판에서는 그것을 '미군가족주택'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1948년 9월 11일 그간 미국이 보유하였던 일체의 권리, 명의 및 이익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며, 한국정부는 미군정청 및 과도정부가 제정 · 시행한 모든 법률과 규칙을 승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이 서명되고, 9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49년 1월 18일에 공표되었다.

이「최초협정」중에서 미군정이 사용하다가 한국정부에 이양하는 것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는 재산에 대한 부분만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32)]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재한미국육군이 철퇴 기간 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재산은 그 철퇴 기간 중 미국정부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하게 하며 미국정부에 부담 없이 이를 보존할 것을 협약함.

대한민국 정부는 부록 갑에 특기한 재산을 미국정부로 하여금 임시로 무상차용하게 할 것을 협약하며,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그 재산의 수선 및 보존에 요하는 일체의 비용을 한국통화로 부담할 것을 협약함.

.....

제9조

(나) 미군정부가 지정한 기일에, 그 지정한 금액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본조에 규정한 채무 중에서, 당시만기된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만기된 미불이식을, 한국통화로 지불하되, 본조 (라)항 규정에 의한 재산의 대가를 감하며 미국정부는 이 채무 중에 수취할 차액을 이 통화의 미화 해당액으로써 대방에 기입함. 미국정부가 위와 같이 수취한 통화일절은 본조 (다)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함.

(다)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정부는 아래와 같이 협약함. 본조 (나)항에 의하여 미국정부가 수취할 한국통화 및 본조가 (가)항에 규정한 이식으로 미국정부가 수취할 한국통화는 한국내에서 이것을 사용할 것이며, 미국정부의 한국내 비용일절의 지불에 이것을 사용함을 득함. 단, 그 비용은 아래에 대한 비용을 포함함. (1) 양정부가 상호 협정할 교육안 (2) 동산 또는 부동산, 유체 또는 무체임을 막론하고 미국정부가 관심을 가진 재 한국 재산 및

32) 인용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가져 왔다.

그 첨부물의 취득. 이 재산은 최초에, 본협정의 보충에 열거한 재산을 포함함.

(라) 대한민국 정부는, 본조 조건하에 미국정부가 상호협정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미국정부의 요구에 응하여 양도함. 이러한 재산의 소유권을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정부에 양도한 때에는 미국정부는 그 재산에 대하여 협정한 공정불화(弗貨)가격을 본조에 의한 대한민국 정부의 채권으로 계산함.

(마) 양 정부간의 특별협정에 의한 별도규정이 없는 한, 미국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본조 (나)항 및 (라)항에 규정한대로, 한국통화에 의한 지불 또는 재 한국재산의 소유권 양도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상 양자의 총액은 7월1일 시작하는 단일 회계연도에 있어서 5백만불의 해당액 및 본조 (가)항에 규정한 만기미불이식을 초과하지 못함.

.....

[부속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의 보충

북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약칭함) 정부 및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함) 정부간의 본 협정은 본일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9조의 보충이며, 한국에 제공한 과잉재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양도를 규정함.

記

한국 및 미국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9조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여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재한국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것이며, 우에 언급한 협정의 동조 (라)항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재산을 양정부간에 협정된 가격으로 양도할 것을 협약하였으며, 미국은 우에 언급한 협정의 조건하에 양수키 원하는 재산을 이미 선택하였으므로 이에 아래와 같이 협정함.

- 한국은, 본협정 유효기일부터 60일 전후에 아래 재산을, 아래 가격으로 미국에 양도함.
- 가격은 인정된 평정관 3인이 이를 결정하여 달러로 명시함.
- 평정관은 한국이 지명한 1인, 미국이 지명한 1인 및 양평정관이 최초에 선정한 위원장으로 구성됨.
- 재산은 아래 재산을 포함하나 이것에 국한되지 아니함.

(가) 미군가족주택 제10호 및 대지 정동 1의 39 1,362평.

(나) 러시아인 가옥 제1호 정동 1의 39 720평.

(다) 현재 미국영사관 서편공지 정동 1의 9 1,414평.

(라) 현재 미국영사관 남편공지 서울클럽 재산에 이르기까지 현재 미국영사관 곁으로 통한 도로의 일부 정동 8의 1, 8의 3, 8의 4, 8의 5, 8의 6, 8의 7, 8의 8, 8의 9, 8의 10, 및 8의 17 53,540평.

(마) 미군가족주택 제10호 및 러시아인가옥 제1호 정동편에 있는 3각지형 대지 및 그 대지상에 있는 창고 1동 가옥 3동 및 기타 건물 서대문구 정동 1의 39 1,675평.

(바) 전 군정청 제2지구 전부 및 그 대지상에 있는, 약 43동의 가옥 및 기타 건물 이것은 이 지역에 있는 식산은행 소유재산 전부를 포함함. 송현동 49의 1 전부. 사간동의 96, 97의 2, 98, 99, 102, 103의 1, 104의 1, 및 104의 2 및 그 대지상의 기타 건물 약 9,915평.

(사) 반도호텔 및 그 동편에 연접한 주차장 종로구 을지로 180의 2 1,944평

- 위 증거로서, 하기 서명인은 각자 정부가 부여한 권한에 의하여 1948년 9월 11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문 및 영문으로 본 협정에 서명함.
- 한국어 본문 및 영어 본문은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지만, 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 본문에 의함.
- 대한민국대표 이범석 장택상 미국대표 John J. Muiccio

부록

(갑)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정부로 하여금 임시로 무상차용케 할 재산은 아래 재산을 포함하나 이것에 국한되지 않음.

(가) 군용지대 제1, 제2 및 제7호 내에 있는 특정가옥 제1동 및 대지 .

(나) 각호에 산재한 미인가족주택 제9호, 제109호, 제143호, 제218호, 제221호 및 미군숙사 제5호, 제10호 및 제11호.

(다) 반도호텔 월편에 있는 삼정빌딩 및 대지.

(라) 미공보관 및 대지(전 수도청빌딩).

(마) 제24군단 특무대지구.

(바) 남대문 근처에 있는 제216 보급대용 콩크리트제식고.

(사) 미군 제7사단지구(서빙고)에 있는 56동의 가옥 및 대지.

(아) 중앙청지구내에 있는 57동의 가옥.

(자) 미군숙사 제32호(국제호텔) 및 미군숙사 제24호(수도호텔).

(차) 미군숙사 제23호(내자아파트)의 3동 건물.

(카) 미군숙사 제38호(프라자호텔).

(타) 영등포 미인가족주택지대 제1지구의 사용가옥 8동 및 15동의 아파트.

「최초협정」에 따르면, 그간 미군정에서 접수하여 관리하여 오던 모든 재산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지만, 제9조와 부속서에서 언급된 재산에 대해서는 양국간에 협정된

가격으로 미국에 그 소유권을 양도하고, 부록 (갑)에 특기한 재산은 미국정부로 하여금 임시로 무상차용하게 할 것을 협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부산 D.H. 목록》은 경상남도 관재처에서 작성한 2편의 보고서 즉 1949년 1월말일 현재 조사자료인 〈미군 사용해제 재산처리 상황보고서(美軍使用解除財産處理狀況報告書)〉와 1949년 4월 11일자 조사자료인 〈미 주둔군 사용해제 재산처리 상황 정례보고서 제출의 건(美駐屯軍使用解除財産處理狀況定例報告提出의件)〉이라는 두 가지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 즉 〈미군 사용해제 재산처리 상황보고서〉의 기재 양식산은행 【그림 2】와 같고, 이 보고서에서는 부동산을 (가) 주택, (나) 건물, (다) 토지, (라) 미군축조물의 4종류로 구분하여 미군이 사용 해제한 재산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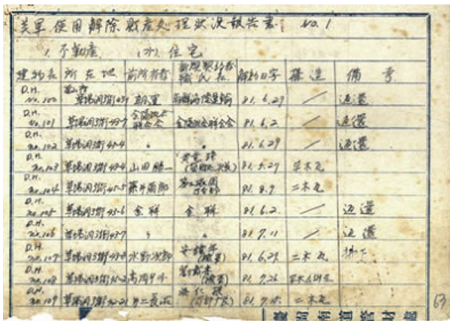

【그림 2】 미군 사용해제 재산처리 상황보고서 (DA0421081)

이 자료에서 주택 부분을 보면, D.H.No.100, D.H.No.101과 같이 D.H. 표시 뒤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 82개의 주택에 대한 리스트가 있다. 그 중 51개는 전소유자(前所有者)가 일본인 개인으로 되어 있어, 해방 전에 일본인들이 소유하던 주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51개는 금융조합연합회, 경남도청, 법원, 삼릉Co, 등의 단체, 정부기관, 개인기업체 등이 소유하던 주택이었다. 해방 전에 조선인이 소유하던 주택으로서 미군이 사용하던 것은 없었다. 대부분의 주택은 1948년 혹은 1949년에 해약되었는데, 신규계약자들은 그 직업이 AMIK(주한미국사절단) 18건을 비롯하여 판검사와 검찰관이 10건, 관재처 직원이 6건, 경찰관련 6건 등이었다. 주목할 점은 AMIK가 18건의 주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비고난은 한결같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군사용이 해제된 이후 대부분의 디펜던트 하우스는 미군정청에 소속되어 있던 한국인 직원이나 사법계 혹은 경찰이나 군인 등에 의해 신규사용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미군정에서 사용하던 이들 주택 중 일부는 그 후 AMIK에서 다시 사용하도록 계약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남부민동에 39건, 부민동 3가에 21건, 초장동에 17건으로 주로 이들 3개 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디펜던트

하우스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존재하였고, 주로 과거에 일본인 고급 주택지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군 사용해제 재산 중에서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명에 Port Club, M.G.Camp, B.O.Q. #1, Oriental Inn, CIS Qtrs, PX(1204), 71st Station Hospital, Finance Office 등의 41건이 있었다. 건물명에서 보듯이, 클럽(Club), 병사(兵舍, Camp), 장교 숙소(B.O.Q.), 호텔이나 여관(Hotel, Inn), 병원(Hospital), 각종 사무실(Office) 등으로 사용되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건물의 소재지는 부민동2가, 충무로 1가, 3가, 광복동 1가, 2가, 범일동, 대교로 2가, 대창동 1가 등등으로 주로 부산 시내에 산재해 있던 비교적 규모가 큰 사무실 혹은 공장 건물들이었다. '현점유자 또는 기관'을 보면, 전체 41건 중에서 육군, 해군 등의 한국군이 사용하는 것이 17건, AMIK가 사용하는 것이 3건, 경남도청, 부산부, 대한민국관찰부 등이 4건, 수산조합, 수리조합, 어업조합 등의 조합이 3건, 철도국이 2건, 기타 반공단, 국립수산검사소, 문교부 국립극장 등이 각 1건씩 모두 32건에 해당한다. 그 밖의 9건은 한일광공사, 문○○, 김○○, 한중무역공사 부산지점, 거제리 피복공장, 조선미곡창고회사(2건), 악단 신조선, 정○○ 등의 민간인 혹은 민간기업이 사용하였다.

미군 사용해제 재산 중에서 대지(垈地)는 모두 31건이 열거되어 있는데, 범일동에 소재하는 2건은 지목이 '매축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대지'이다. 주소는 초장동, 남부민동, 광복동 2가, 창선동 1가, 범일동, 부민동 3가, 충무로 2가 등이었다. 현사용자는 조선석탄배급회사와 대양상공주식회사 등 기업체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2건을 제외한 나머지 29건이 한국인 개인명의로 되어 있었다.

미군 사용해제 재산 중에서 '미군구축물(美軍構築物)'에는 유조(油槽, oil tank) 및 부대시설 1건과 건물과 주택 3건(건물 19동, 주택 55), 급수조(물탱크), 퀀셋(quonset) 클럽 등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사병용 퀀셋이었다. 그리고 비고난에는 '전부 미군 축조 혹은 건조물인 고로 전 소유자가 없음'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이 문서철에는 이 〈미군 사용해제 재산처리 상황보고서〉 이외에, 〈공관건물 통계표〉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1953년 현재 공관건물 통계를 지역별로 보면 전체 419건의 83%에 해당하는 345건이 서울과 부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미협정에

의해 한국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미군이 계속해서 사용하기로 협약된 것은 35건으로 서울에만 존재하고 있었다. 환언하면 미군정기에 부산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사용하던 재산은 모두 한국정부에 이관됨을 의미한다.

【표 12】 공관건물 통계표

(단위 : 건)

	총건수	한미협정건수	매각건수	비고
서울특별시	242	35	143	64
경기도	1			
강원도	7			
충청남도	14			
충청북도	16			
전라남도	26			
전라북도	8			
경상남도	103			
경상북도	2			
합계	419	35	143	64

출처 : (DA0421081)

《부산 D.H.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들은 미군에 의해 사용해제 된 재산의 목록을 보여 주는 것이고, 미주둔군이 사용하던 재산이 한국정부로 어떻게 이관되어 가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Ⅲ. 《미인 징발재산 일람표(美人徵發財産一覽表)》

이 문서철에 포함되어 있는 《미인 징발재산 일람표(美人徵發財産一覽表)》는 한국전쟁 중에 미군에 징발된 재산에 대한 조사표이다.

한국전쟁 중 이루어진 징발은 1950년 7월 26일 시행된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徵發에關한特別措置令)」과 국방부령 제1호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시행규칙(徵發에關한特別措置令施行規則)」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33]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은 "단기 4283년(1950년) 6월 25일 북한괴뢰군의 침구로

33)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은 1963년 5월 1일 시행된 법률 제1336호에 의해 폐지되었다.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작전상 필요한 군수물자, 시설 또는 인적자원(이하 징발목적물 또는 피징용자라 칭한다)을 징발 또는 징용"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제1조), "징발관이 발행하는 징발영장 또는 징용영장으로서 이를 행"하며(제2조), "징발목적물 또는 피징용자에 대하여는 따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회복 또는 보상을 한다"(제14조)고 규정하였다.

「미인 징발재산 일람표」(【그림3】 참조)는 이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및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미군이 사용할 목적으로 징발된 재산으로서, 부산부내 남부민동에 한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1930년대 말부터 1950년대 초까지의 10여 년간은 징발과 징용으로 얼룩진 참으로 힘든 시기였음을 이 일람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외국인에게 대여한 임대료 불징수 주택 조사서」라는 서류를 보면, 모두 25건의 주택에 대한 리스트가 있는데, 미국대사관이 사용하는 것이 22건, 영국대사관과 프랑스대사관 및 U.N.CIC가 각 1건이었고, 지역별로는 부산 소재 23건, 주문진읍 소재 1건, 대전 소재 1건 등이었다. 그리고 '적요'난을 보면, '임시대여'가 6건, 기재 없는 것이 1건이고 나머지 18건은 모두 징발에 의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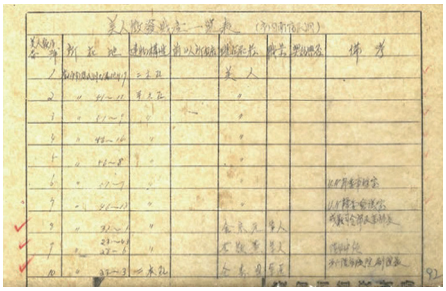

【그림 3】 미인 징발재산 일람표 (DA0421081)
[부산부내 남부민동(府內 南富民洞)]

허수열(충남대학교)

| Chapter I |

02 귀속재산처리 관계 법령집(재무부)

관리번호 : DA0422180
쪽　　수 : 152
생산년도 : 1959년
생산기관 : 재무부

이 문서철에는 「최초협정」에 의해 미군정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1949년 12월 19일 제정된 「귀속재산처리법」 및 이에 관련된 법령과 규정 즉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귀속재산매수대금납부규정」등이 편철되어 있다. 또 사립학교들이 농지개혁으로 그 주요 재원인 농지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농지보상액을 농지개혁법상의 15할보다 많은 30할로 하고, 차액 15할은 귀속재산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한 「문교재단소유 농지특별보상법」과 「문교재단소유 농지특별보상법시행령」, 그리고「지가증권으로써 귀속재산 매각대금 및 입찰보증금에 충당납입하였을 경우의 수불사무취급규정」등이 편철되어 있다. 법령 그 자체는 이미 널리 알려진 것들이지만, 법령의 체계 및 제정과 실시과정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해설집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해도 쉬워질 것이라는 점에서 다루어 두기로 한다.

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1) 「귀속재산처리법」의 제정이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1948.9.15) 제5조에 의하여 미군정에서 일부 불하한 나머지 귀속재산은 한국정부에 이양되었다.

이양된 귀속재산의 크기에 대해 당시의 한 신문에 "국내 재산의 8할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 추계가 정확하다고 믿기는 어렵지만, 귀속재산이 당시 국내 재산에 비교하여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34] 이 귀속재산에는 기업체가 무려 3,551개소이며, 주택은 서울의 3만 8,091호를 필두로 남한 전역에 걸쳐 8만여 호에 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귀속재산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그 건수는 【표 13】과 같다.

【표 13】 귀속기본재산 건수표

(단위 : 건)

	사업체	부동산	기타	합계
중앙직할	345	38	93	476
서울	350	51,354	208	51,912
경기	140	28,046	272	28,458
강원	61	7,972	40	8,073
수복지구	36	4,092	80	4,208
충북	53	14,305	180	14,538
충남	108	27,946	197	28,251
전북	238	25,099	157	25,494
전남	176	36,540	89	36,805
경북	277	36,350	333	36,960
경남	419	55,823	492	56,734
합계	2,203	287,565	2,151	291,909

출처 : 재무부 편, 『재정금융의 회고 : 건국십주년업적』, 1958, 127쪽.

그리고 그 중에서 귀속사업체에 대해서만 살펴 보면【표 13】과 같다. 【표 13】의 사업체수 합계는【표 14】의 사업체수 보다 훨씬 적어 다소 과소평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표 14】에서 보면 귀속사업체에는 '조사불능', '소재불능', '해산' 등에 속하는 사업체가 '총계'에 거의 필적할 정도로 많았다. 결국 일제시대의 일본인사업체 중에서 절반 정도는 해방 이후에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보아도 좋다는 의미가 된다.

34) 경향신문, 1949.12.6.

【표 14】 귀속사업체 조사일람표

(단위 : 개)

	지방관할	중앙관할	합계
금속공업	66	10	76
기계기구공업	359	12	371
화학공업	353	24	377
전기공업	38	13	51
요업	100	3	103
섬유공업	232	75	307
식품공업	710	8	718
제재가구공업	95	102	197
인쇄출판업	97	–	97
기타제조업	164	8	172
광업	286	31	317
농림업	54	54	108
수산업	58	15	73
금융보험업	23	–	23
운수창고	33	48	81
토건업	61	–	61
상업	313	–	313
기타제조업	110	–	110
총계	3,152	403	3,555
조사불능	94	–	94
소재불명	2,406	–	2,406
해산	826	–	826

〈주〉 임시관재총국 및 상공부 귀속사업국의 자료에 의함. 도별자료는 생략하였음. 중앙관할 403개 (상공부 148개, 농림부 208개, 교통부 47개), 지방관할 3,152개 임.
도별로는 서울시 1,013개, 경기 302개, 충남 234개, 충북 73개, 전남 253개, 전북 245개, 경남 743개, 경북 387개, 강원 285개, 제주 20개, 합계 3,555개 임.

출처 : 조선은행조사부, 『경제연감』1949, Ⅳ–154쪽에서 작성.

【표 14】의 자료는【표 13】의 자료보다 훨씬 정치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는 "일람표 작성에 이용한 자료는 a=임시관재총국의 법인대장, b=상공부 귀속사업국 작성의 귀속사업체일람표, c=임시관재총국의 중앙직할사업체일람표, d=임시관재총국의 각도 귀속사업체 처리상황 보고 서류철 및 운휴사업체일람표 (단 양자 모두 남한 전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현하 귀속사업체의 완전한 일람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일람표도 임시관재총국과 당행(한국은행–인용자) 지점의 절대한 협력 하에 가급적

정확을 기하였으나 역시 미비한 점이 많을 것이며 차후의 수정을 기함"이라고 함으로써 여전히 수정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35]

아무튼 미국정부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귀속재산을 이양 받은 한국정부는 이 이양받은 귀속재산을 "유효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하여 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74호로 제정 · 공포하였고, 그 시행령으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과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을, 그리고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의 시행규칙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을 각각 제정 · 공포하였다. 그 법령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귀속재산임시조치법
귀속재산처리법
-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2)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

(1) 「임시관재총국직제」[대통령령 제42호, 1948.12.29. 시행],
「귀속재산관리위원회규정」[총리령 제8호, 1949.2.28. 시행],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총리령 제9호, 1949.2.28. 시행]

1948년 9월 11일 〈최초협정〉이 체결된 지 한달 후인 10월 11일에 귀속재산에 대한 재산권이 한국정부에 완전히 이양됨에 따라 이것을 관리할 기구로 대통령령 제42호로 〈임시관재총국직제〉가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임시관재총국'이 조직되었다. 그 당시 정부조직법에는 이러한 기구를 설치할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임시직제를 두게 한 것이었다.

35) 조선은행조사부, 『경제연감』1949, Ⅲ-79쪽

〈임시관재총국직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5년 8월 9일 이전의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한 농지 이외의 일체의 재산(이하 귀속재산이라 칭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임시관재총국을 둔다(제1조), 임시관재총국에 귀속재산관리위원회 및 귀속재산심의회를 둔다(제9조).

귀속재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장이 선임한 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정원은 20인 이내로 한다. 1) 내무부, 재무부, 상공부, 농림부, 사회부, 문교부, 법무부, 교통부, 체신부, 총무부, 법제처, 기획처 및 임시관재총국에서 각 1인, 2) 민간권위자 약간인. 위원회는 관재기본정책을 심의하며 이에 관한 국무원의 자문에 응한다(제10조).

귀속재산소원심의회는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장이 선임한 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상공부, 사회부, 법무부, 총무처, 법제처, 기획처,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지방법원에서 1급 내지 3급 공무원 각 1인
2) 임시관재총국차장. 심의회는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처분에 관한 소원을 심의결정한다(제11조).

귀속재산관리위원회와 귀속재산소원심의회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따로 총리령으로 정한다(제12조).

그리고 이 〈임시관재총국직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국무총리의 감독에 속하여 아래의 사항을 심의하며 이에 관한 국무원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었다.

1) 국영공영기업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원매인 및 기업체 임차인의 자격표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귀속재산 임대료 기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귀속재산불하 기준가격(시가 조사에 의한 기준액) 지정에 관한 사항
5) 관재제반규정 및 수속요령의 제정에 관한 사항
6) 예산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7) 연합국인 재산 처리 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8) 기타 귀속재산 처리에 관하여 국무원이 자문하는 사항

한편 이 〈임시관재총국직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소원심의회규정」[총리령 제9호, 1949.2.28. 시행]이 제정되었고, 이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직속 하에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두게 되었다. 귀속재산소원심의회는 국무총리 감독에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처분에 관한 소원을 심의결정하였다(제1조).

(2) 귀속재산 사무 재개 임시조처에 대한 요강[36)]

지난 5월 7일 이범석 국무총리는 앞으로 일정한 관재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적산(敵産)에 대한 잠정적 조치로 오는 6월 1일을 기하여 가옥불하 또는 임대료 인상을 단행하기로 되었다고 담화를 발표한 바 있거니와, 임시관재국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으며 임시관재국에서는 총국장 임병혁(林炳赫)씨 명의로 각도 임시관재국장에게 귀속재산 불하사무 재개 임시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요청으로 4월 8일부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부동산 불하 계약서 용지가 배부 되는대로 적극 추진하라는 통첩을 지난 4월 16일 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하대상 재산의 범위
   (가) 황폐 혹은 노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재산의 범위
      ① 목조 초가건물 및 그 부속대지
      ② 목조 기와건물로서 그 신축일로부터 20년 이상을 경과한 건물 및 그 부속대지
      ③ 위 2항 범위 외의 건물로서 특별한 원인(예 화재손상 · 수해 · 풍해 및 기타 원인의 손상)으로써 그 상태가 황폐한 건물 및 그 부속대지
      ④ 건물의 위치, 용도관계로 그 현황 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및 그 부속대지
      ⑤ 기타 이유로써 급속 처분을 요하는 건물 및 그 부속대지
      이상 범위의 구체적 결정에 있어 앞의 1) 2) 3) 4)항은 각도 관재소장이, 5)항은 임시관재총국장이 결정함
   (나) 처분을 요하는 기업체 소속 지상시설의 범위, 기업체 소속건물로써 앞의 (가)항에 해당하는 재산 중 아래 조건을 구비한 재산
      ① 해당 기업체의 주요 재산 소재 집단지 외에 소재할 것
      ② 해당 기업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장래 사용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것
      ③ 해당 건물 내에 기계 등 특별한 설비가 없는 것
      이상 결정은 도(道) 관재소장이 결정함
   (다) 국가 경제상 처분이 필요한 재산의 범위 · 용도 · 조건이 있겠음
2. 구매자 자격 요건
   별도 통첩이 있겠음

36) 연합신문 1949년 05월 11일.

3. 대금 지불방법

(가) 주택 및 점포, 여관, 창고, 기타 건물 : 현금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되 최고 15년 이하의 분할불로 할 수 있음. 단 계약 당시에 일시불 입금으로 총 불하대금의 1할 이상을 지불함을 요함

(나) 기업체 : 현금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되 최고 10년 이하의 분할 납부 할 수 있음

단, 계약 당시 일시불 납금으로 총 불하대금의 2할 이상을 지불함을 요함. 전기 양항에 있어 분할 불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미불납금에 대하여 年 5분 내지 7분의 이자를 연체금에 대하여는 미불 이자율에 3할을 가산한 이자를 지불함을 요함

4. 기타

(가) 현재 각도에서 구매 신청서를 접수한 건도 특별 취급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앞의 불하 대상 재산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나) 불하계약을 체결한 재산은 처분 주보(週報)를 제출할 시 그 불하의 사유를 첨부할 것

(다) 황폐한 재산의 불하는 적극 추진할 것

(라) 본 총국에서는 현재 가격승인 보류건 중 급속 불하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건에 한하여 각도에 회송할 것이나 반면 각도 소장도 전기 건 중 급속 불하를 요하는 건이 있으면 그 일람표를 작성 제출할 것

단, 앞의 회송건은 구매자 자격 급 급속 처분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할 것

(마) 공매(公賣)는 일체 보류할 것. 단 경우에 따라 지명 입찰은 무방함

(바) 하여간 다소라도 불하결정 또는 자격요건에 있어 질문이 있거나 분쟁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당분간 그 불하를 보류할 것

(3) 「귀속재산임시조치법」 재통과(1949.6.15.)

앞에서 보았듯이, 임시관재총국에서 국가경제상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귀속재산에 한해 군정 법령의 매각 규정에 의하여 매매를 재개할 것을 언명하게 되자, 조병한 의원 외 11명의 의원은 「귀속재산처리법」이 아직 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귀속재산을 불하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귀속재산 임시조치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였다. 즉 "우리나라 국가재산의 근 8할을 점하고 있는 귀속재산의 처리지침을 내용으로 하는 「귀속재산처리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는 이때,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단시일 내에 이를 불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법의 제정시까지 귀속재산처리를 동결시킴으로써, 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 임시조치법안에 대하여 황폐노후(荒廢老朽)한 주택 · 점포 또는 소규모 기계류를 시급 불하할 필요가 있다고 이를 거부하였는데, 국회는 1949년 6월 15일 본회의에서 토론의 여부없이 즉결에 부친 바 동 법안은 재석 144인 중 130대 3표의 3분지 2 이상의 득표로 재통과되었다.

(4) 「귀속재산임시조치법」 시행 (법률 제36호, 1949.7.22. 시행)

1949년 7월 22일에 제정된 「귀속재산임시조치법」은 제1조에서 "1948년 9월 11일자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기(施行期)까지 이를 불하하지 못한다. 단 농지는 제외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임시관재총국에 의한 귀속재산 불하를 봉쇄하였다.

이 법안에서는 귀속재산 불하금지 시기를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일까지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1949년 12월 19일에 「귀속재산처리법」(법률 제74호)이 제정 · 시행됨으로써 「귀속재산임시조치법」은 자연히 실효되었다.

「귀속재산처리법」이 시행될 때까지 일체의 귀속재산은 불하하지 못한다는 「귀속재산임시조치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됨에 따라 임시관재총국에서는 지난 6월 20일부로 각 도에 귀속 재산의 불하를 모두 중지하라고 통첩하는 한편, 특별 행정조치로 가계약에 의한 불하 사무처리 방법을 예의 강구 중에 있었는데, 가계약의 방법 및 수속절차가 결정되었으므로 드디어 지난 18일부터 가계약에 의하여 소규모의 기업체 및 가옥의 불하 사무를 계속 집행하게 되었다 한다.

그런데 금번 임시관채총국에서 실시하게 된 가계약에 의한 불하 사무는 종전의 불하계약 방법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관재당국은 귀속재산의 불하를 원하는 사람이 불하신청서, 이력서, 신원증명서, 임대료 납부상황, 임대계약서 사본, 서약서 등 소요서류를 제출하면 이에 의하여 불하 신청인의 자격 심사, 재산 조사, 재산 감정을 한 다음 불하여부를 결정하되 계약서면에는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면 동 법에 준하여 정식 계약 또는 계약 파기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한다.[37]

37) 동아일보 1949년 07월 23일.

(5) 「귀속재산처리법」 시행 (법률 제74호, 시행 1949.12.19)

1949년 12월 19일에 제정 ·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법에 따라 처리할 귀속재산의 범위를 1948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 중 농경지를 제외한 것으로 하고,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 귀속재산은 국 · 공유재산 또는 국영 · 공영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하도록 한다.
③ 귀속재산중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 등 공공성이 있거나 보존을 요하는 것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④ 귀속기업체중 공공성을 가진 것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하도록 한다.
⑤ 귀속재산의 매각은 기업체매각, 부동산매각, 동산매각, 주식·지분매각으로 구분하여 매각하도록 한다.
⑥ 귀속재산은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연고자, 종업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되,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주택 없는 빈곤한 근로자 등에게 우선 매각 하도록 한다.
⑦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산매각 외의 재산매각에 있어서는 최고 1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⑧ 국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이 법에 규정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직속 하에 관재청을 두도록 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중 「귀속재산의 처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개정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54년 9월 23일(법률 제342호)의 개정에서는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즉 "앞의 2항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기업체는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매각한다." 그리고 제17조는 "귀속재산의 매수자의 결정은 관재청장이 행한다." 제31조의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라는 말은 "관재청장과 합의하여"로 개정하고 제38조는 삭제하였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본 개정법률 시행전에 정부에서 가매각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는 계약일자로써 본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함으로써 「귀속재산임시조치법」 기간의 가매각 계약에 의한 불하를 합법화시키려고 하였다.

1956년 12월 31일(법률 제427호)의 개정에서는 ① 북위 38도선 이북의 수복지구

내에 있는 재산으로서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인 개인, 법인, 단체, 조합, 그 대행기관이나 정부의 조직 또는 통제한 단체가 직접 · 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 내지 관리하던 유형 · 무형의 일체의 재산은 이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게 하였고, ② 귀속재산의 가격감정의 위촉을 받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직접감정하는 자는 그 귀속재산을 감정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갖도록 하였으며, ③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하게 하였고, ④ 귀속재산을 허가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한 기간 중 취득한 이득과 임대료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금으로 부과 · 징수할 수 있게 하였다.

1959년 12월 18일(법률 제521호)의 개정에서는 제8조 제1항 제4호 중 "제2조 제2항"을 "제2조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의 2를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이나 분납금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금의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신설한다. "제24조 제2항" 중 "제19조와 제21조"를 "제19조, 제21조와 제21조의 2"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1960년 2월 17일(법률 제521호)의 개정에서는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 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과태금 징수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이나 분납금은 물론 과태금까지도 납부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차압 · 공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962년 7월 14일(법률 제1099호)의 개정에서는 정부의 사정가격이 10만원(서울특별시는 30만원)미만의 재산에 대하여는 연고자 · 종업원 등 우선매수자의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3) 「귀속재산처리법」의 시행

(1) 관재청, 귀속재산 매수우선권자의 매상신청 접수 사무 개시

1950년 3월「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이 공포되자, 관재청에서는 그 후속 조치로 5월 27일「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귀속재산 입찰규칙」,「대금납부 규정」, 중앙과 각 도에 설치하게 될「관재위원회 규정」,「청산사무 처리 요령」등 불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마련하여 6월 1일자로 일반에 고시하고, 우선 시급을 요하는 매수우선권자의 매상신청 접수사무를 개시하여, 6월 말 경부터는 실제로 공매(公賣)를 시작하였다.

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하여 처리될 귀속재산은 기업체가 무려 3,551개소이며 주택은 서울의 3만 8,091호를 필두로 남한 전역에 걸쳐 8만여 호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결정한 그 처리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매수우선권자의 자격 :

기업체는 (1) 임대인 관리인 (2) 당해 기업체의 주주 (3) 사원 (4) 조합원 및 2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의 순이나,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 주주 · 사원 · 조합원이어야 한다.

주택은 (1) 임대인 (2)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및 유가족 (3) 주택 없는 빈곤한 근로자 (4) 적산집 이외의 집을 구하기 곤란한 자의 순이며, 점포 · 대지 ·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1) 임대인 (2) 관리인의 순으로 한다.

우선 매수권자와 일반매원자가 동시에 원매가격을 입찰하여야 되는데 최고 입찰가격이 우선매수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당시의 최고입찰가격으로써 전기 우선매수권자의 순위로 매각한다. 그러나 어떠한 최고입찰가격이라도 정부사정가격보다 쌀 때에는 정부사정가격으로 전기 순위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나, 이렇게 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최고입찰자에게 파는 것이다. 그러나 이 최고입찰자가 결격자인 경우 또는 계약을 이행치 않는 경우에는 제2, 제3의 고가입찰자에게 한하여 이 재산을 매각할 수 있지만 매각가격은 최고입찰가격이라야 한다. 그리고 우선권자라 할지라도 당해 재산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결격사항이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때의 최고입찰자에 매각하는 것이다.[38]

(2) 귀속재산 제1차 경매입찰이 서울 충무로 상가를 대상으로 시작

「귀속재산처리법」이 제헌국회를 통과하고 1949년 12월 19일에 공포되었으며 그 후 3개월간의 시일을 두고 검토된 후 동 시행령은 1950년 3월 30일에야 공포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당시 우선 매수권자는 6월 말일까지 원매신청을 귀속재산이 소속되고 있는 각

38) 자유신문 1950년 4월 9일.

부처장관에게 제출키로 되었었다. 그런데 그 후 시행령으로 말미암아 야기될 것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재검토하게 되어 일부 수정을 한 결과 6월 말까지의 원매신청을 폐기하여 입찰전일까지 우선 매수권자로 하여금 신고케 하는 동시에 되도록 현 거주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마침내 지난 22일부터 서울시내의 충무로 1가 점포 12호를 최초로 경매를 개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날 경매입찰의 최우선 매수권자인 현 거주자들을 비롯한 충무로 명동 상가는 가가호호 문을 굳게 닫고 경매를 거부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경매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경매로 말미암아 정부사정가격보다도 훨씬 고가로 모리배들의 손에 귀재가 떨어지기 쉽다는 것과 1회 불입금이 입찰가격의 1할인만큼 심각한 현실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불입이 안되어 또 다시 입찰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이며, 또한 15년 연부로 상환하게 된 대금에 이자를 붙인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등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은 심각한 현 사회 실정과「귀속재산처리법」및 시행령이 공포 당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더러「귀속재산처리법」의 모법 자체가 대단히 시행하기 어렵게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으며, 한편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 경매를 하지 않고 최소단위인 동 단위의 지역별 경매를 하게 된 기본 정신 역시 이번 귀속재산처분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난국을 스스로 조절하고 검토하여 이를 평온하게 끝마치고자 하였던 것인 만큼 최초의 경매에서 이와 같이 우선 매수권자가 경매를 거부한 데 대해서 새로운 조치가 있기를 일반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39]

(3) 국무원 고시로 상동광산 등 42개소를 국영기업체로 지정

한편 국무원에서는 1950년 5월 29일자 고시 제13호로써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 국영기업체를「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영기업체를 지정하고 고시하였다.

삼화흥업공사(삼척), 대한중공업공사(인천), 조선기계제작소(동), 유항상공주식회사(서울), 삼화정공주식회사(서울), 동양화학공사(삼척), 삼척시멘트공사(동), 조선유지화학주식회사(인천),

39) 자유신문 1950년 6월 23일

조선석유주식회사(울산), 조선전업주식회사(서울), 경성전기주식회사(서울), 남선전업주식회사(부산), 서선전기주식회사(개성), 한국은행(서울), 주택영단(서울), 대한수리조합연합회(서울), 대한농지개발영단(서울),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서울), 장항제련소(장항), 옹진광산(옹진), 금정광산(경북), 구봉광산(충남), 해주광산(황해), 율포광산(황해), 순천광산(전북), 무극광산(충북), 함안광산(전북), 군북광산(경남), 일광광산(경북), 고성광산(흥남), 여미산광산(강원), 김제 사금광산(전북), 상동광산(강원), 달성광산(강원), 옥방광산(강원), 삼화철산(삼척), 해선방적주식회사 부산공장(부산), 동 대구공장(대구), 함백탄광(강원), 길원광산(경북), 동선광산(경북), 단양광산(강원).[40]

(4) 1956년 귀속재산처리가 일단락 됨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 앞의 【표 12】에서 본 귀속재산 중에서 1956년 9월 말까지 정부는 모두 20만 7천 8백 42건의 귀속재산을 처분(부동산, 동산 포함)하여, 불하대금 계약액이 3백 36억 2천 2백 88만환에 달했고, 징수결정액이 71억 3백 93만환이나 되었다. 이 때까지 처분되지 않은 것은 8천여 건에 불과하였다. 물론 아직 미진한 점이 다소 남아 있었지만, 이렇게 귀속재산이 거의 대부분 처리됨에 따라 1950년 4월 24일에 발족하였던 관재청도 1956년 12월 31일 법률 제427호(「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의해 7년만에 해체되었다.

(5) 「귀속재산 매수대금 납부규정」

1950년 6월 1일, 관재청장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재위원회의 심사 결의를 거쳐서 제정한 「귀속재산 매수대금 납부규정」을 공고하였는데 전 항 13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매수대금 분납을 규정한 것인데 그 중요한 조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2조 제1기 분납금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매수인은 언제든지 분납금 납부기일 전이라도 분납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3조 분납은 연부(年賦) · 6개월부 · 3개월부 또는 1개월부의 4종으로 함
③ 제5조 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 대금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④ 제7조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최고 15년을 기한으로 분할하여 분납할 수 있다.

40) 부산일보 1951. 6. 1.

⑤ 제11조 법령 제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주식 또는 지분을 매수한 자는 최고 10년을 기한으로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⑥ 제12조 선박을 매수한 자는 철제선은 최고 3년, 동력시설이 있는 목제선은 최고 2년을 기한으로 분납할 수 있고, 기타의 선박은 일시 금액납부로 한다.

Ⅱ. 「문교재단 소유농지 특별보상법」(법률제214호,1951.7.18.시행) 「문교재단 소유농지 특별보상법시행령」(대통령령 제788호, 1953.5.7.시행)

1) 제정 이유

해방 후 한국의 교육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비중은 매우 컸다. 사립 중학교 283개교 102,600명, 사립 고등학교 148개교, 49,050명, 사립 대학교 44개교, 34,540명으로 관공립 학교와 대조할 때 비율이 대학은 60.8%,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2%나 되었다.

그런데 이들 사립학교의 경영은 그 재원을 대부분 농토에 의존해 왔다. 농토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교재단은 소학교가 2개교, 중학교가 148개교, 대학교가 30개교로 총수 180개교에 달하고 있고, 이들 문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총면적은 1억 1천여 만 평이다. 이를 기초로하여 각 문교재단은 17억 8천 7백여 만원의 연수입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들 문교재단이 농지개혁에 의하여 그 보상금을 일시불로 취득하게 되는 수입액은 겨우 7억 6천 8백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농지개혁 이전의 연수입보다도 10억이 적은 금액의 수입이 된다.[41]

이렇듯 국내 전 교육기관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단에 의지하는 사립대학과 사립 중학교가 농지개혁으로 인하여 재단 농토로부터의 소작료 수입이 없어지게 되어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현재 남한에는 대학교 총수의 72%에 해당하는 30개교의 사립 대학과 중학교 총수의 36%인 189개교의 사립중등이 매년 소유재단의 5,688만 9,900평의 전답으로부터 수입되는 20만 6,400여 만원의 소작료로써 12만 6,000명의 중학생과 1만 4,000여 명의 대학생을 교육해 왔던 것인데 이를 농지개혁으로 상실케 되어 전란에 의한

41) 동아일보, 1950.6.25.

교사(校舍)의 파괴와 함께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어 현 상태로 방임하면 부득이 교문을 폐쇄치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립교육기관의 위기를 구출하고자 문교부에서는

1.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매수 당한 문교재단 소유 농지의 보상은 평년작 주산물의 30할로 할 것
2. 문교재단 소유 농지의 보상은 농개 실시와 동시에 일시불로 할 것
3. 앞 조의 보상은 15할은 귀속재산 매각대금으로, 잔금 15할은 농개법에 의한 보상으로 할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문교재단 소유농지 개혁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지난번 농림, 재무, 기획처의 합의를 요구하는 일방 문교재단을 위한 귀속우선불하책을 관재당국과 협의 중에 있던 바 지난 5일 재무부와 기획처로부터

(가) 귀속재산 매각대금은 적립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적 경비가 아닌 건설적 · 투자적 경비에 한하여서만 지출한다는 정부의 재정방침에 위반되므로 이로써 문교재단 보상금을 지출할 수 없다는 것

(나) 일시불은 농민으로부터 초년도에 3할을 징수하여 문교재단의 15할을 보상하려면 12할 해당액이 부족되는 바 이에 대한 재원으로서는 정부차입금 외에는 발견할 수 없는데 정부가 차입을 하여서까지 문교재단을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왔다고 한다.[42]

이리하여 사립대학교, 사립중학교는 또다시 존폐의 위기에 서게 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강구가 시급히 요망되고 있는데 재무부로부터 합의 거부를 받은 문교부에서는 대안을 협의 중이라고 하였다.

1951년 8월 7일의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표결 통과된 「문교재단 소유농지 특별보상법」에 의하여 178개 문교재단과 30개소의 교화재단은 그 소유 토지보상금으로 15할을 받는 것 이외에 15할은 귀속재산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귀속사업체의 불하를 받을 때에는 문교재단연합회로 하여금 다른 신청자에 최우선하여 매수하고 각 재단별 매수 순위는 문교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이 정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문교재단의 집요한 협잡성을 미연에 막기 위해 제5조에서는 보상받은 문교재단의 해체할 때에는 그 재산은 정부에 흡수시키자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가결하였다.[43]

---

42) 동아일보 1951. 4. 6.

43) 부산일보 1951. 6. 9.

2) 「문교재단 소유농지 특별보상법」의 내용

전문 5조의 「문교재단 소유농지 특별보상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매수하는 문교재단의 소유농지에 대한 보상은 농지개혁법에 의하는 외에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본법에서 문교재단이라 함은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치원, 학교, 장학회 또는 교화사업을 경영하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 문교재단의 소유농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15할을 30할로 하여 그 보상를 정한다.

전항의 보상액중 15할에 해당하는 액은 귀속재산으로서 보상한다.

제4조 농지를 매수당한 문교재단이 귀속재산의 매수를 신청할 때에는 문교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이 정한 문교재단간의 순위에 의하여 정부는 모든 신청자에 우선하여 문교재단에 매각하여야 한다. 전항의 매수대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증권으로써 납부할 수 있다.

제5조 본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문교재단이 해산될 때에는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44]

허수열(충남대학교)

44) 제5조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여 삭제되었다.

03 휴면법인 청산종결법(안)(재무부)

관리번호 : DA0423886
쪽　　수 : 488
생산년도 : 1967년
생산기관 : 재무부

「휴면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률(안)」 혹은 「휴면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률(안)」은 재무부에서 그 제정을 위해 1965년 5월부터 1967년 3월까지 거의 2년에 걸쳐 노력했지만 결국 입법화되지 못한 법률안이다.[45] 한시법으로서 1964년 12월 31일에 실효되는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치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청산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제정이 추진되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결국 시행에 이르지는 못하고, 「국유재산법」에 일부 포함되면서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법안의 성안과 협의 및 수정과정을 통해 휴면귀속법인 처리와 관련하여 주무부처가 가졌던 고민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자료라고 생각한다.

Ⅰ. 「휴면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률(안)」 연혁

이 문서철에 편철되어 있는 문서들을 기안 날짜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휴면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률(안)」 [1965.5.19.]
「휴면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률(안) 심의 요청」 [1966.3.9.]
「휴면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률(안) 심의 요청」 [1966.4.12.]
「휴면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률(안) 철회」 [1966.4.20.]

45) 그간 법률안의 명칭도 처음에는 '청산에 관한 법률'이던 것이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률'로 해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고 있다. 이하 이 법률(안)에 대한 명칭은 「휴면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휴면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률(안) 심의 의뢰」[1966.12.23.]
「휴면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률(안) 심의 요청」[1967.2.8.]
「휴면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률(안) 협의」[1967.3.7.]

위의 문서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법안의 입안과 검토과정을 살펴 보기로 하자.

이 법률(안)은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실효된 이듬해인 1965년 5월에 성안(成案)되었고, 내부 심의를 거쳐 8월 23일에 법제처에 심의 회부하였다.

1965년 9월 24일, 이 법률(안)은 "법원행정처, 경제기획원, 법무부와 합의를 거쳐 다시 제출"하라는 단서와 함께 법제처장으로부터 반려된다.

이에 1965년 9월 22일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휴면법인의 재산처분, 해산 청산종결 및 소멸에 따른 등기절차 및 구비서류 간소화 관계 조문에 대한 협의' 요청서를 보냈고, 1965년 10월 7일 대법원 행정처장으로부터 약간의 자구 수정은 있었지만, 이의 없다는 회보를 접수하였다.

1966년 10월 1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휴면법인 재산 중 소송수행 결과에 따라서 당해 법인으로 환원가능 재산에 대하여서는 동 법인에 대한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가에 소송당사자 능력을 부여하고 국고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한 규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1965년 10월 13일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이의 없다는 회보가 있었다.

1965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에게도 협의요청을 하였고, 1965년 11월 23일 의견 없다는 회보를 받았다.

1965년 10월 5일 이 법률(안)이 회계관계법률(안)이기 때문에 감사원에도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1965년 11월 2일자로 이의 없다는 회보를 받게 된다. 이리하여 1965년 11월 26일 법제처에 심의 재회부하게 되었다.

1966년 3월 9일에는 휴면법인 청산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작성하게 된다. 수정된 부분은 부칙제 4조와 기관명칭 변경이었다. 기관명칭 변경은 재무부장관 · 사세청장 · 재무부 · 사세청을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 국세청 · 지방국세청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법제처 안에 따라 부칙 제4조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신설하였다.

이 법 시행전에 귀속재산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1. 제소자가 당해 재산을 국가로부터 매수한 원매수자로부터 양수한 자이고
2. 이 법 시행당시 당해 법인조합 기타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3. 그 양수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본다.

이 법률(안)에 대해 국고국장은 협의를 거부하였다. 우선 법률안은 직제상 국고국 소관이 아니고, 시행령 제정 때까지 실제적으로 지원토록 조치할 것이라는 단서와 함께 협의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한 법무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법무관 의견

1. 본 규정은 소급입법이 되고
2. 행정처분이 원인무효가 되면 원상회복시켜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고 당해 재산은 공매하여야 하며
3. 이와 같이 구제하면
   (가) 수익당사자의 입찰참가 기대권을 박탈하며
   (나) 한인주주가 있는 경우 현시가에 의한 잔여재산 분배 기대권을 침해한다.
4. 회계관계법령이므로 감사원의 의견을 구할 것

1966년 3월 11일에는 감사원, 국세청, 경제기획원, 대법원 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협의요청을 하여, 감사원장, 경제기획원장, 국세청장으로부터 이의 없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는 회신을 받게 된다.

이유

1. 매매계약이 근본적으로 취소된 재산은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화되었음으로 매수자로부터 양수한 자에게 정부가 직접 매각한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
2. 동 재산은 정부로부터 매수한 자가 2중으로 매각하였다면 소송을 제기한 자 만이 타 양수인보다 정당하게 양수하였다는 근거가 없다.

이에 1966년 4월 8일 「휴면법인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률(안)」의 부칙 제4조 단서를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작성하여 1966년 4월 12일 법제처장에게 심의 요청을 하였다가, 1966년 4월 20일 법제처장에게 법안 자체를 철회하는 공문을 보내게 된다.

1966년 8월 3일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부칙 제4조에 대한 의견을 재조회 하였다.

1. 정부에서 휴면법인 재산을 해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한 재산을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구제한 바 있다.
2. 본 법안 부칙 제4조 단서의 경우도 확정판결의 선고 유무의 차는 있으나 질적으로 전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인무효하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11항에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완납전에 매수자 명의변경을 인정하고 있음.

상기 1,2,3을 참작하여 재조회함

이 재조회에 대해서도 1966년 10월 31일 법무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칙 제4조 단서를 규정하여야 할 의의가 없다는 회보를 받게 된다.

이유

1. 본조의 규정은 정부와 거래관계가 없는 전매자가 당해 재산을 정부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다.
   (가) 이는 정부와 원매수자간의 매매행위를 유효로 보고
   (나) 원매자와 전매자간의 거래관계를 유효로 보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됨
   (다) 그러므로 이는 본안 부칙 제4조 본문의 규정 취지와 동일하다.

이 문서철에는 1967년 2월 27일자 법률안이 마지막이지만, 그 내용은 그 전의 수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더 이상 입법을 추진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이 법률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법률안은 폐안된 것으로 판단된다.

Ⅱ. 제정 이유

이 법률안은 귀속휴면법인을 규율하고 있는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64년 말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 그것을 대치하는 법률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청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안되었다.

이 법률안이 제안되어야 했던 이유를 당시의 통계를 통해 알아 보자. 【표 15】에서 보면, 1966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휴면법인수 803개 중에서 해산된 법인수는 27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530개는 여전히 해산되지 않은채 남아 있었다.

【표 15】 휴면법인 해산통계(1966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개)

사세청별	전체 법인수	해산 법인수	미해산 법인수
서울	556	124	432
대전	54	27	27
광주	57	55	2
부산	136	67	69
계	803	273	530

출처 : (DA0423886)

이들 803개의 휴면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은【표 16】에서 볼 수 있듯이, 1/2 미만인 것은 15개이고 거의 대부분이 1/2 이상의 비율을 갖는 것이었다. 정부비율이 미상인 것은 법인에 대한 자료 자체가 멸실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16】 정부비율별 법인상황

(단위 : 개)

사세청별	법인수	정부비율		
		1/2 이상	1/2 미만	미상
서울	556	389		167
대전	54	52	2	
광주	57	51	3	3
부산	136	31	10	95
계	803	523	15	265

출처 : (DA0423886)

이들 휴면법인의 재산 종류별로 재산금액을 살펴보면, 대지가 전체의 약 2/3에 해당하는 289백만원이었고, 그 뒤를 이어 전, 임야, 답의 순서로 되어 있다. 또 건물, 대지, 전, 답, 임야와 같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알 수 있다(【표 17】 참조).

【표 17】 휴면법인 재산 총계표(1965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1,000원)

재산종별	건수	수량	금액
건물	118	3,333	6,289
대지	5,641	436,298	288,813
전	2,418	547,233	58,611
답	1,776	662,199	27,005
임야	1,380	7,005,691	39,472
기타	863	233,272	6,019
합계	12,196	8,888,656	426,209

〈주〉 사세청별 데이터는 생략하고, 합계만 표기하였다.
출처 : (DA0423886)

이들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65년 12월 31일 현재에도, 전체 휴면법인 중에서 미해산 법인이 66%나 되고, 정부비율조차 불명확한 법인이 265개나 되고 있지만,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실효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로서는 합법적으로 이를 처리하기 어렵게 되어, 그 법을 대치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Ⅲ. 주요 내용

문서철의 기록에 의하여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휴면법인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휴면법인은 다음의 2종으로 한다. (안 제3조)

(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그 주식, 지분,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이 정부에 귀속된 후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유화된 영리법인, 조합, 기타 단체,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 그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었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기능상실 법인)

(나) 기타의 영리법인, 조합 기타 단체로서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 임원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 중 출자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것 (출자자 불명 법인)

2. 휴면법인의 해산

(가) 기능상실 법인의 해산

① 정부 주식 등이 1/2 이상인 경우(안 제4조). 국세청장이 출자자 총회의 의결없이 해산할 수 있다.

② 정부주식 등이 1/2 미만인 경우(안 제5조) . 국세청장의 소집에 의하여 집회한 출자자 총회의 결의로써 해산된다.

(나) 출자자 불명 법인의 해산(안 제6조). 출자자를 알 수 있게 될 때까지 그의 권리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를 제외하고 정부가 이를 행사하되 정부가 행사하는 권리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출자자 총회의 의결 없이 해산할 수 있다.

(다) 무재산법인의 소멸(안 제7조). 소유재산이 없는 휴면법인은 해산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3. 휴면법인의 청산

(가) 법정청산인(안 제10조 내지 제12조).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을 정부주식 등이 1/2 이상인 기능상실 법인과 출자자 불명 법인의 법정 청산인으로하고 그들의 자문기관으로서 휴면법인청산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

(나) 분배청구 없는 잔여재산의 처리(안 제17조). 청산인은 소정기간 내에 분배 청구가 없는 잔여재산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인계하여 지급을 위임하며, 인계후 5년이 지나도 여전히 청구권이 없는 분은 원칙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4. 본점 재북 법인의 재산처분(안 제24조)

정부가 출자, 출연한 법인으로서 그 본점, 주사무소가 미수복지구 내에 있고,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복지구 이남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당해 법인의 출자자 총회를 소집하여 그 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되, 재북 권리자에 대한 분배금은 국세청장이 관리하도록 한다.

허수열(충남대학교)

04 청산연합회 규정 및 휴면법인 처리요령

관리번호 : DA0210781
쪽　　수 : 507
생산년도 : 1967~1974년
생산기관 : 성업공사 등

휴면법인에 대한 청산기구는 몇 차례에 걸쳐 조직이 변화되어 왔다. 1) 1949년 12.19.「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 법인별로 청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산사무에 임했으나, 2) 1966년 4월부터는 청산기구를 통합하여 연합청산사무국이 설치되고 청산위원회가 세무서 단위로 제1차 통합되었다. 연합청산위원회는 국세청이 각 지방국세청 및 각 세무서에서 청산 중에 있던 귀속휴면법인(그 당시 313개)에 대하여 그 청산업무를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경비절약을 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구성토록 한 청산조직이다. 3) 1970년 9월 1일에는 제2차 청산기구 통합이 이루어져 청산위원회가 각 지방 국세청 단위로 통합되었고, 4) 1973년 7월 16일에는 청산기구가 전국적으로 단일화되는 제3차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 문서철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들은 위의 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1966년에 발족한 연합청산사무국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연합청산위원회에 관한 실무적 차원의 자료로서 의의를 갖는다.

Ⅰ.「청산사무예규 배부」,「청산사무예규」, 국세청 (1969.7.16.)

이 문서는 국세청에서 발간한『청산사무예규』라는 소책자의 배부에 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공문과『청산사무예규』라는 소책자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공문에 의하면, "그 간 청산업무 처리요령 또는 청산에 관한 지시 등을 청산의 지침으로 삼아 업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무의 특수성에 조감할 때 지시, 요령, 질의 조복 등 예규의 성격을 띤 사안들이 허다하면서도 수차 개정되는가 하면 관재업무 담당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이를 기본으로 연구하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기왕에 시달된

사안에 대하여도 무성의하게 문의하는 사태가 종종 있으므로, 별첨과 같이 예규가 될만한 사안을 한데 묶어",『청산사무예규』라는 소책자로 만들어 배부하겠다고 하였다.

『청산사무예규』라는 소책자에는 발간연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위의 공문의 내용에서 보았을 때, 1969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소책자는 기왕의 지시, 요령, 질의 조복 등의 예규가 될만한 사안들을 묶어서 정리한 것이다. 이 소책자는 다음과 같은 15가지의 요령, 지시, 질의 조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귀속공익법인의 재산처리 요령(1964.10.5) 재무부

재국기1251-1234(1964.10.5)

국징처1256.2-4633(1966.10.19)개정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이 2분의 1 이상 정부에 귀속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등의 귀속공익법인의 재산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관할법인에 대한 조사, 휴면법인의 기준, 정관과 재산대장의 비치, 이사회의 정원수, 이사임명, 이사회의 해산결의, 사원총회의 해산결의, 해산허가신청, 대표청산인, 해산등기, 채권신고최고, 재산의 매각, 정관의 변경,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청산종결등기와 고시 등의 19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2) 귀속휴면법인 청산업무 처리 요령

재국기1256.2-1286(1964.10.21)

목차에는 있으나 원문 없음

(3) 귀속휴면법인의 청산에 관한 지시

재국기1256.2-3865(1965.5.15)

목차에는 있으나 원문 없음

(4) 귀속휴면법인 청산분배금 처리 요령

재국기1256.2-6273(1965.7.29)로 시달

1965년 9월 1일자로 시행

귀속휴면법인의 청산분배금(잔여재산)을 각 출자자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결산시기, 잔여재산의 산출, 총회의 승인, 분배통지와 공고, 청산반환금의 처리, 분배시의 공제액, 정부분배금에 대한 처리, 분배시의 필요서류, 출자증권이 없는 때의 처리, 매각재산조서의 작성, 조서작성 부수, 조서의 대조확인,

조서의 처리, 청산반환금 등의 전문 15개조와 조서작성 일정 및 조서의 정기작성, 시행기일 등의 부칙 3개조, 귀속휴면법인 재산매각목록, 타 관할 귀속휴면법인 재산매각대 수납액 조사서, 귀속휴면법인 재산매각대 수납액 조사서, 민간출자자 청산반환금 청구액, 귀속휴면법인 재산매각목록, 타 관할 귀속휴면법인 재산매각대 수납액 조사서, 귀속휴면법인 재산매각대 수납액 조사서 등의 7개의 서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5) 상법시행법 제15조에 의한 해산간주법인의 청산에 대한 질의

국징처1256.2-1174(1966.5.6)

서울지방국세청의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에 대한 해산간주법인의 해산등기 절차가 등기소의 직권등기 사항인지 혹은 당사자의 신청사항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이 당사자의 신청사항이라는 조복(照覆 즉 회답)과 그 이유를 다루고 있다.

(6) 미해산 귀속 휴면법인 재산 관리 및 청산사무 취급에 대한 질의

국징처1256.2-2165(1966.6.18)

서울지방국세청의 미해산 귀속휴면법인 재산관리 및 청산사무 취급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국세청의 조복과 그 이유를 다루고 있다.

(7) 정부소유주식 관할 한계

국징처1256.2-(1966.6.23)

정부소유 주식의 관할 한계에 대한 국세청의 재무부에 대한 질의와 그 조복이다. 질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재무부가 관할하는 법인은 (1) 정부관리 기업체, (2) 재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청산법인, (3) 소관부 또는 기타 기관과의 협조상 재무부에서 관할하는 법인 등이고, 그 이외의 모든 출자법인(휴면법인, 가동법인으로 정부출자 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함)은 국세청 관할법인으로 관리한계를 지정하고 있다. 재무부가 관할하는 법인의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관리기업체는 1966년 3월 31일 현재 다음과 같다.

기업체명	설립연도	법정자본 (백만원)	납입자본 (백만원)	발행주식 총수(주)	정부보유주 주식수(주)	비율(%)
한국은행	1950	-	-	-	-	-
한국산업은행	1954	20,000	9,980	109,706	-	100
중소기업은행	1961	3,000	810	900,000	699,000	86
국민은행	1962	500	450	100,000	519,405	58
대한손해재보험공사	1963	500	100	-	100,000	100
한국조폐공사	1951	500	478	5,200,000	-	100

기업체명	설립연도	법정자본 (백만원)	납입자본 (백만원)	발행주식 총수(주)	정부보유주 주식수(주)	비율(%)
한국증권거래소	1956	2,600	2,600	–	2,408,400	45
대한석탄공사	1956	2,000	2,000	–	–	100
한국전력주식회사	1961	11,507	11,507	11,507,226	7,840,742	68
대한석유공사	1962	2,500	2,500	2,500,000	1,875,000	75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1963	500	473	473,202	473,202	100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1934	850	770	1,540,000	1,115,632	72
한국공업제련공사	1962	600	508	–	–	100
인천중공업주식회사	1962	1,400	1,120	2,239,692	2,239,692	100
대한조선공사	1962	1,000	1,000	2,000,000	1,458,494	73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1963	700	700	1,400,000	971,400	69
충주비료주식회사	1964	3,000	2,002	4,004,000	4,004,000	100
호남비료주식회사	1963	3,500	2,849	5,698,563	5,277,000	93
대한염업주식회사	1963	1,000	857	857,110	857,110	100
대한무역진흥공사	1962	200	190	–	–	100
한국수산개발공사	1963	5,000	1,834	1,834,000	1,834,000	100
대한통운주식회사	1930	592	592	1,184,000	605,546	51
대한해운공사	1957	1,100	1,037	1,036,890	650,795	63
대한항공공사	1962	3,500	500	500,000	500,000	100
국제관광공사	1962	2,500	2,474	2,474,387	2,474,387	100
대한주택공사	1962	1,000	474	–	–	100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52	69	69	137,936	70,448	51
(시중은행)	–	–	–	–	–	–
조흥은행	1897	1,000	1,000	1,000,000	378,832	38
상업은행	1899	1,100	1,100	1,100,000	357,044	36
한일은행	1932	1,100	1,100	1,100,000	334,002	30
제일은행	1929	1,100	1,100	1,100,000	747,550	68
서울은행	1959	400	200	200,000	79,350	40

2. 재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청산법인은 1966년 3월 23일 현재 다음과 같다.
① 삼국석탄공업주식회사 청산위원회, ② 조선제련주식회사 청산위원회, ③ 주식회사 성업사 청산위원회, ④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청산위원회, ⑤ 조선은행 청산위원회, ⑥ 한국식산은행 청산위원회, ⑦ 구 신탁재산 처리위원회 청산위원회

3. 소관부 또는 기타 기관과의 협조상 재무부에서 관할하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신문사, ② 한국화물자동차 주식회사, ③ 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그 밖에 새로 국세청에 이관된 법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법인명	소재지	주식내용		
		총주수 (주)	정부소유 (주)	주당액면 (원)
회동탄좌개발(주)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14	34,400	140	1,000
신광기업(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2가	5,000	200	1,000
국제전기통신(주)			36,700	0.05
조선마그네사이트(주)			100,000	0.05
만주척식(주)			150,000	0.05
경성방직(주)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240,000	18	1,000
농지개발영단		240,000	3	1,000
충남여객자동차(주)	대전시 선화동 27-5		1,040	500

(8) 국유이사 행사권 및 사원권 행사에 관한 질의

법무법810-22160(1966.9.27)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이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국유화 조치된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재무부장관은 기능을 상실한 휴면법인 이사 일부의 임명을 소관부처 장관에게 추천하는데 그치고 이사의 임명권은 여전히 소관부장관이 행사하고 있는데,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휴면법인이거나 운영법인이거나를 막론하고 국세청장이 이사행사권이나 사원권을 행사함이 마땅하며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임면도 국세청장이 하여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질의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국세청장이 행사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는 회답과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

(9) 귀속휴면법인 청산분배금 처리

국징처1256.2-2924(1966.7.25)

서울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게 (1) 국가의 법인에 대한 채무와 법인의 국가에 납부할 세금과를 상계하거나 면세할 수 있는가? (2) 법인 상호간의 채권채무를 국가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가? (3) 법인의 청산이득금을 중간분배 할 경우 연부로 매각한 재산의 매각 수입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입각하여 매각대금 전액으로 할 것인가?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중간분배 당시의 수납대금으로 할 것인가? (4) 청산법인도 자산재평가를 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국세청장은 (1)의 경우 상계하거나 면세할 수 없다, (2)에 대해서는 상계할 수 있다, (3)에 대해서는 연부액의 비례에 의하여 계산한다, (4)에 대해서는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다는 회답과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

(10) 구 만주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재산처리

국징처1256.2-4601(1966.10.18)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국세청장에게 "기왕에 재무부에서 일본인 청수영차랑(淸水榮次郎)이 설립한 국내법인 주식회사 대영상회(株式會社 大榮商會 100퍼센트 귀속법인)를 소유재산으로 인정하고 동법인 재산과 일괄하여 기업체 재산으로 매각하였다가 매각대금 체납을 이유로 동 매매계약을 취소한 재산 중에 본점이 구 만주국(舊 滿洲國) 안동시 1번통 5정목 1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대이상회(株式會社 大二商會) 소유 재산이 있는 바, 동 주식회사 대이상회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국세청장으로부터 "국유재산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회답과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

(11) 휴면법인 청산기구 통합

국징처1256.2-6183(1966.12.30)

1. 현재 청산 중인 법인은 해산 당시의 적용근거 법률에 따라
   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
   나.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
   다. 「상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
   라. 「민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

   등으로 구분되고 그 청산기구도 각각 상위한 조직을 이루고 있으나 1964년 12월 31일자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실효되고, 1965년 1월 1일자로 귀속주식이 국유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앞에서 든 각 법인은 그 구분의 의의를 상실하고 오직 「상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 귀일(歸一)하였음.

2. 상법상 청산법인은 동법에서 규정한 대강을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한 바에 따라 법원의 감독을 받을 뿐 청산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법인의 자율적인 규범에 일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기 위하여 가칭 휴면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바,[46]

3. 앞에서 본 법률제정이 지연될 뿐 아니라 그간 당해 법인의 자율적인 청산에 일임한 결과는 일부 성실과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청산을 촉진한 법인도 불무하나 이를 기화로 청산경비를 남용하는 법인이 있는가하면 청산업무가 부진상태에 있는 법인이 있어 청산경비 지출을 통제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휴면법인 청산연합회 규정"을 제정 시달하니 모든 법인은 예산안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연합회에 가입하여 청산기구를 통일하고 청산종결을 촉진할 것.

   별첨 :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관할 휴면법인 청산연합회 규정」

46) 「휴면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률(안)」을 의미한다.

(12) 휴면법인 재산 현물분배

국징처1256.2-1227(1967.3.8)

상법상의 청산은 환가처분에 의한 현금청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환가처분하기 곤란한 특수재산에 한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얻어 현물분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물분배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러한 특수재산의 현물분배 역시 당해 법인의 청산인으로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집행하는데 불과하나 국유주주가 그 현물분배 재산을 인수(국유재산 취득)하는데 있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현물분배를 할 경우에는 미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

(13) 미수복지구내에 본점을 둔 법인의 재산처리

국징처1256.2-3569(1967.7.3)

1945년 8월 9일 현재 미수복지구내에 본점을 둔 법인재산으로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이러한 법인의 재산을 「귀속재산처리법」을 준용하여 직접 처리할 수 있었던 기간(즉 1963년 5월 29일 ~ 1963년 12월 16일간)까지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국"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재산은 이해관계자의 소 제기로 소유권 확인 판결에 의하여 동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국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사실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자도 없으므로 국유재산으로 취급할 것.

참고 : 미수복 지구 내에 본점을 둔 법인재산의 귀속 [법무부 연도미상, 법무부][47]

《질의요지》

1. 미수복 지구 내에 본점을 둔 법인 소유로서 그 재산의 일부가 미수복 지구 이남에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한시법인 1963. 5. 29. 법률 제1346호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지 않고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곧 정부에 귀속된 재산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위 법인재산을 1963. 5. 29 법률 제1346호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유화된 것으로 본다면 정부의 민간인 주주 등에 대한 보상책임은 남는지의 여부.

《회답》

1. 귀문의 경우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에 의해 정부에 귀속된 재산으로 해석할 수 없다.
2. 귀문의 경우 당해 법인의 민간인 주주 등에 대한 보상책임은 없다 할 것이다.

《이유》

1. 귀속재산이라 함은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①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군정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 즉 북위 38도 이남의 한반도 지역에 존치하던

4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가져 왔다.

재산으로 미군정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양한 재산과(「본법 제2조제1항」 참조) ②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 내(이것도 실질상 북위 38도 이남지역에 국한함)에 설립된 영리법인, 조합,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서 그 주식 또는 지분이거나(영리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 그 이사 행사권 또는 사원권이(비영리법인의 경우)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것과 ③ 북위 38도선 이북 수복 지구 내에 있는 재산으로서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인 개인, 법인, 단체, 조합, 그 대행기관이나 그 정부의 조직 또는 통제한 단체가 직접 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재산만을 일컬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미수복 지구 내에 본점을 둔 법인 소유로서 그 재산의 일부가 미수복 지구 이남에 있는 경우는 위 귀속재산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곧 정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본문에 대하여는 종전 당부의 관재 1256-5399(68 .12. 27)에 대한 법무법 810-1586(69. 2. 10)을 참조)

2. 귀문의 경우의 재산은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귀속재산(영리법인 또는 조합의 귀속 주식)이 아니고, 1963. 5. 29. 법률 제1346호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해 재무부장관(현 국세청장에 해당) 또는 지방관재국장(현 지방국세청장에 해당)이 「귀속재산 처리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아 정부의 보상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당해 법인에 대한 보상 문제이고, 직접 당해 법인의 민간인 주주 등에 대하여 정부가 보상할 것이 아니므로 당해 법인에 대한 보상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당해 법인의 민간인 주주 등에 대한 정부의 보상책임은 없다 할 것이다.

(14) 주식가격 평가대상에서 누락된 법인재산의 처리

관재1256.2-1817(1969.5.10)

주식가격 평가개상에서 누락된 법인재산이라고 함은 기왕에 정부가 귀속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할 주식가격 평가를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일체 재산의 평가총액을 동 법인의 총주식수로 나눈액을 주당 가격으로 하였는바, 이러한 주식가격 평가대상에서 빠진 재산을 말함.

주식가격 평가대상에서 빠진재산에 대한 귀속주식 비율 상당액의 재산대금을 추징하기 위한 처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달함.

1. 주식매도증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가) 빠진 재산을 현시가로 평가하여 귀속주식비율 상당액의 주식매각대금을 추징하고 주식매도증서를 교부할 것.
   (나) 주식매수자가 위의 방법에 불응할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관할세무서 공무원으로 이사를 개임한 후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아래 방법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일하여 처분한 후 주식 매도증서를 교부할 것.

① 빠진 재산을 귀속주식 비율만큼 분할하여 "나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② 귀속주식 비율만큼 빠진 재산의 지분권을 "나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③ 빠진 재산 전부를 매각하여 귀속주식 비율 상당의 대금은 국고에 수납하고 나머지 대금은 민간인 (또는 국내법인) 주주에게 보상하는 방법

2. 주식매도증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가) 빠진 재산을 현시가로 평가하여 귀속주식 비율 상당액의 재산대금을 당해법인으로부터 추징할 것.
(나) 당해 법인이 위의 방법에 의한 처리에 불응할 경우에는 귀속주식 비율만큼 빠진재산을 분할하거나 또는 지분권을 "나로"로 소유권 이전 받도록 할 것.

(15) 국유화 조치한 휴면법인 재산의 청산

관재1256.2-1891(1969.5.17)

1. 국유화 조치를 전제로 국가에서 행정재산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거나 그 관리청에서 기히 매각하여 그 소유권이 타에 이전된 재산은 국유화 조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국유화 조치 이후 보통재산으로 용도폐지 이관되었거나 사실상 용도폐지되어 행정재산 관리청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재산은 당해 법인이 환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할 것.

2. 국유화 조치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환가처분한 대금으로 법인세 및 청산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무조건 국유주주에게 현물분배하여 국가의 소유권 취득 원인을 합법화 하도록 조치할 것.

3. 현물분배 가격은 유상 국유화한 재산은 국유화 당시의 평가액에 의하고 무상 국유화한 재산은 현물분배 할 때의 평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것.

4. 국유화 조치한 재산 이외의 잔여재산이 없거나 이러한 재산을 환가처분한 대금만으로 법인세 및 청산경비를 충당할 수 없어 국유화 조치한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청산종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청산경비 충당액 한도까지만 처분하고 나머지는 국유주주에게 현물분배하여 청산을 종결하도록 조치할 것.

5. 본건 사무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부에서 무상으로 국유화 조치한 법인재산(임야) 목록을 작성 송부하니 참고할 것. (첨부 목록은 존재하지 않음)

6. 기타 국유화 조치한 재산은 각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비치 국유화 재산대장에 의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1969년 5월 31일까지 당해 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것.

7. 본건에 대하여는 각 행정재산 관리청에도 이를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당해 법인의 청산인으로 하여금 국유화 조치한 행정재산 관리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여 청산을 촉진할 것.

Ⅱ.「청산관리 업무현황」, 재무부 재산담당관실, 1972.4.30.

주식회사 삼국상회(株式會社 三國商會), 조선제련주식회사(朝鮮製鍊株式會社),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朝鮮鑛業振興株式會社–청산종결), 주식회사 성업사(株式會社 成業社) 등의 4개의 청산법인은 각 회사별로 청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1966년 1월 22일자 재무부장관의 공한에 의해 각 청산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연합사무국을 설치하고, 재무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변경된다. 이 문서는 재무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이들 4개 청산법인의 청산관리 업무현황에 대한 것이다.

(1) 법인별 연혁

주식회사 삼국상회(株式會社 三國商會), 조선제련주식회사(朝鮮製鍊株式會社),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朝鮮鑛業振興株式會社–청산종결), 주식회사 성업사(株式會社 成業社) 등의 직접 관장하는 4개의 청산법인에 대해 설립연월일, 설립당시의 법정자본금과 업종, 변경 이후의 법정자본금, 업종, 청산 개시 연월일과 청산사유 등을 정리해 놓고 있다. 비고난을 보면, 삼국상회의 주요 재산은 내자아파트라는 부동산이고, 조선제련의 주요재산은 국회 제2별관이며, 조선광업진흥은 1970년 10월 22일에 청산종결되었고, 성업사는 1969년 9월 1일에 청산종결 되었다.

(2) 청산법인 임직원 명단

삼국석탄공업주식회사, 조선제련주식회사, 조선은행, 식산은행, 구 신탁재산처리위원회(舊 信託財産處理委員會) 등의 청산법인에 대해 대표청산인 위원장, 청산인 위원, 간사 참여직원, 촉탁 사무직원, 가사 등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1972년 4월 30일 현재).

(3) 청산법인 정부소유주식 현황

1. 직접관장하는 청산법인

구 분	발행주식(주)	정부보유(주)	비율(%)
삼국석탄공업주식회사	300,000	260,070	86
조선제련주식회사	200,000	167,185	84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1,000,000	846,250	85
주식회사 성업사	34,000	34,000	100

2. 감독하는 청산법인

구 분	발행주식(주)	정부보유(주)	비율(%)
조선은행	800,000	625,044	76
한국식산은행	1,200,000	938,725	78
조선신탁주식회사	53,639	52,565	98

(4) 법인별 재산현황(1972년 4월 30일 현재)

(단위 : 1000원)

법인별	자산	부채	자본	
			미처분 이익	기타 유보
삼국석탄	159,838	3,980	150,804	5,054
조선제련	191,727	3,805	178,071	9,851
조선은행	272,118	20,525	235,205	16,388
식산은행	237,143	16,549	219,554	1,040
구 신탁	571,179	11,330	534,369	25,479

(5) 각 법인의 청산인 및 청산위원회 구성인원

각 청산법인별로 위원장, 위원, 대표청산인, 청산인, 감사, 기타의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다.

(6) 소송계류현황

삼국석탄(부동산 소유권 등기말소 청구), 조선은행(조선철도 보상청구), 식산은행(경춘철도 보상청구, 주식인도 등 청구), 구 신탁(주주권 확인 청구) 등의 각 청산법인에 대해 현재 계류중인 소송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7) 청산법인의 청산촉진방안

1. 삼국석탄 :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내자아파트를 정부에 현물분배하고 민간주주에게는 상당비율의 분배금을 현금으로 분배조치하여 종결을 기함.
2. 조선제련 : 그 소유재산 중 처분이 가능한 재산은 조속 처분하고, 국회 제2별관은 신축 중인 의사당이 완공되어 국회가 이전한 후 처분하여 청산종결코자 함.
3. 청산상의 문제점 : 삼국석탄공업 Co.의 내자아파트를 정부에 현물분배함에는 정부에서 분배받는 현물의 가액이 정부에서 분배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액만큼의 반환금을 정부예산에 확보하여야 하는 바 정부의 재정형편상 이의 확보가 지난한 실정임.

(8) 기타 참고자료

기타 참고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1. 「귀속재산처리법」 및 동법 시행령 (초)
2.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초)
3. 청산사무국 통합 (재무부장관 공한) 1966.1.22
   (가) 재국기 1256.1–9739(65.12.14)로 시달한 각 청산위원회사무국 통합은 별지 직제 및 보수규정(안)을 참작하고 다음 요령에 의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각 청산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연합사무국을 설치할 것.
   (다) 전항의 결의를 받은 후에 즉시 각 청산위원회의 직원을 해면하는 동시에 연합사무국에 국장 1인, 직원 4인, 타자원 1인, 사환 1인을 새로히 발령조치할 것.
   (라) 연합사무국 예산은 따로 편성하되 각 청산위원회 소요예산 편성시에 이를 "사무국 운영부담비" 과목을 설정하여 계리할 것
   • 수신처 : 주식회사 성업사, 삼국석탄공업 주식회사, 조선제련 주식회사,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 첨부 : 연합사무국 직제(안), 청산위원회 연합사무국 보수규정(안)
4. 청산업무의 인수(재무부장관 공한) 1966.7.1.
   (가) 귀사의 청산사무국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정부에서 인수하기로 이미 통지한 바 있으나,
   (나) 앞으로 귀사의 청산업무는 별지의 "청산준칙"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으니, 귀사의 업무를 당부 소속 공무원이 인수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다) "삼국석탄" 및 "광업진흥"의 청산인을 소송수행상 필요하다면 종전의 직원을 금년 12월말까지 촉탁으로 위촉하여도 무방함.
   • 수신처 : 삼국석탄공업 주식회사, 조선제련 주식회사, 한국광업제련 주식회사, 주식회사 성업사 대표청산인
   • 첨부 : 청산준칙
5. 청산법인의 보수규정 및 사무취급규정 (1966.7.1 위원회 제정)
6. 청산준칙 (삼국석탄공업, 68.9.20 주주총회 결의)
7. 청산준칙 제2조의 수권사항에 대한 결의 (조선제련. 69.1.24 주주총회결의)
8. 임원기념품 증정 및 직원퇴직금 지급 규정 (삼국석탄공업)
9. 임원 및 사무국 직원 보수 규정 (조선제련)
10. 청산위원회 운영지침 (재무부장관 공한, 70.11.10)
11. 청산법인의 운영개선 (재무부장관 공한, 72.4.6)

Ⅲ. 「국세청 잡종재산 관리처분체계 확립방안」, 국세청 관재과, 1974년

오늘날에는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잡종재산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이 문서철에서는 이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 누락재산의 조사등록, 은닉재산의 회수와 불법등기의 방지, 휴면법인의 청산 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수록하고 있다. 이 해설집과 관련하여서는 1974년 시점에서 국세청이 매우 적극적으로 휴면법인의 청산에 임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1) 관리

1. 국유재산 용도 분류

(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그 용도와 속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처분재산

② 현물관리재산

(나) 처분재산의 범위는 다음에 게기한 재산을 말한다.

① 국가기관 사용재산

② 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사용재산

③ 특별법에 의하여 타 기관에 관리권을 이관할 재산

④ 매각처분할 불용재산의 범위에 속하는 재산

(다) 현물관리재산은 처분재산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재산으로서 행정목적에 전용할 재산을 말한다.

2. 매각처분할 불용재산의 범위 명시

처분대상 재산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국한하여 재량에 의한 무궤도한 처분을 지양한다.

(가) 점유자 있는 건물

거주용, 사업용 건물로서 사회정책상 또는 성질상 명도가 곤란한 재산

(나) 사유주택 부지

타에 거주용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건물 부지 또는 등기된 건물 부지로서 경계에 구축물이 없는 것은 50평, 구축물이 있더라도 건평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면적

(다) 공익사업용 건물부지

주무부 장관이 인가한 공익사업용 건물부지로서 법정기준이 있는 것은 그 기준면적까지, 기준이 없는 것은 건평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면적

(라) 정부가 인정하는 사업용 건물부지

정부가 인가하였거나 영업감찰을 소지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용 건물 부지로서 건평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면적

(마) 설치허가가 있는 공작물 부지

허가서에 사용면적이 있는 것은 그 면적까지, 면적표시가 없는 것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최소면적

(바) 공유지분

분할에 의하여 지분을 특정시키기 곤란한 것

(사) 특정목적용 재산

국가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시설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결정되어 있는 것

(아) 법정 연고재산

법률, 법원판결 등으로 연고자가 결정되어 있는 재산

(자) 농경지

시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농민이 실경하고 있는 농경지

(차) 원상회복이 곤란한 재산

점유자가 그 점유재산 가액의 2배 이상의 비용을 투하 가치증가를 시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재산

(카) 활용가치 없는 영세 재산

시 지역 내에 소재하는 가격 200만원 미만 또는 면적 50평 미만의 공지와 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가격 100만원 미만 또는 면적 100평 미만의 공대지

(타) 기타 차상급 기관의 승인을 얻어 불용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3. 불용재산의 대부

(가) 연고자에 대한 대부계약 촉구

① 출원자 위주의 대부계약은 지양하고 행정구역 단위로 집단적으로 일정기간 (최장3개월) 이내에 3회 이상 계약체결을 촉구한다.

② 대부 촉구는 정비된 대장에 근거하고 (용도 폐지 가능 조사보고 폐지), 타 관리청 소관 또는 소관청 불명재산 대부 촉구 엄금

(나) 변상금 청구대부계약 불응자로서 매수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수익성 있는 재산 사용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대부료 상당액의 변상금을 청구한다.

(다) 공매 회부와 소 제기변상금 납부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청구 명도의 소를 제기하고 공매에 회부한다.

4. 현물관리재산의 관리

(가) 현물관리 재산목록, 비치현물관리 재산목록을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각각 비치하고 처분을 제한한다.

(나) 관리자의 지정행정구역 단위로 관리책임자를 지명하고, 책임자가 경송될 때는 반드시 그 현황을 파악 인계토록 한다.

(다) 표식설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액재산에는 "국세청 관할재산"이란 표식을 설치하도록 한다.

(라) 불법침입의 방지

(마) 현황변경 금지

(2) 처분

1. 불용재산 매각

(가) 매각가격의 시가실현

(나) 수의매각 재산의 특약등기

(다) 공매재산의 범위 한정

① 매수요구 기간 도과(徒過)재산

② 대부계약 불응재산

③ 유찰재산 (2회 이상 유찰재산의 수의계약 지양)

④ 활용가치 없는 영세재산

(라) 정기공매제 실시

(마) 공매재산대금 분납제 제한

(바) 매수인 명의변경 촉구와 매도증서 즉시교부

2. 관리이관

(가) 국가기관 사용재산

① 국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

② 국가기관이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

③ 상이한 회계간의 처리

(나) 지방자치단체 사용재산

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

②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

(다)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양여대상 재산

(라) 특별법에 의한 양여대상 재산

(마) 기타 처분보류 재산의 관리 이관

(3) 누락재산 조사등록

1. 대장등재, 누락재산의 양태
   (가) 귀속재산의 국유화 조치시 대장전재 누락된 것
   (나) 국유농지(귀속농지 포함) 분배 누락된 것
   (다) 지분매각 후 잔여지분을 등재하지 아니한 것
   (라) 공부 멸실 지구내의 회복등기 미필된 것
   (마) 각 관리청이 서로 등록하기를 기피한 것
2. 조사방법
   (가) 지적공부 조사
   (나) 농지분배대장 조사
   (다) 국유재산대장 조사
   (라) 등록부 조사
   (마) 대장등록 절차
3. 조사기간
   (가) 1차연도 (1974.6.1. ~ 1974.9.30.) 지방청 소재지 및 세무서 소재지
   (나) 2차연도 (1975.4.1. ~ 1975.7.31.) 잔여지역
4. 소요인원 및 경비
5. 공로자 표창
6. 확인

(4) 은닉재산 회수와 불법등기 방지

1. 은닉재산의 유형
   (가) 해방전 일본인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해방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한 경우
   (나) 해방전 일본인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방 후 미군정법령 제103호에 의거한 간이 소청절차에 의거 귀속해제 결정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하였으나, 법률 제120호에 의한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확인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공부멸실을 기화로 국유재산(전 귀속재산 포함)을 개인 소유처럼 보존등기한 경우
   (라) 농지분배를 받은 사실이 없는 국유재산을 분배받은 것같이 가장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한 경우
   (마) 일본인 명의를 한국인이 창씨개명한 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등기상 명의를 변경한 경우 또는 그 상속자가 유산상속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2. 색출방법
   (가) 누락재산 조사와 병행하여 등기부에서 색출한다.
   (나) 구 관재국 기록과 국유재산 대장 및 매각기록을 대사하여 색출한다.
3. 색출자 포상
4. 불법등기방지
5. 확인

(5) 휴면법인의 청산

1. 재산처리 촉진
   (가) 100% 귀속법인의 잔여재산은 현물분배 또는 기부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나) 혼합법인의 재산이라도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에 현물분배하여 활용케 한다.
   (다) 국가기관에서 행정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국유화하여 사용기관에 이관한다.
   (라) 처분할 재산은 회사별 또는 지역별로 대부촉구하고, 불응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청구함과 동시 공매한다.
   (마) 매각대금의 분납을 가급적 지양한다.
2. 청산종결
   (가) 100% 귀속법인 213개 법인은 매년 71개 법인씩 종결시킨다.
   (나) 77년 이후의 잔여법인 업무는 본청과 지방청 직원으로 하여금 처리케 함을 원칙으로 한다.

Ⅳ. 「국세청관할 휴면법인 청산연합회 규정 및 사무국 처무규정」, 국세청, 1976

이 문서철은 「국세청관할 휴면법인 청산연합회 규정」(73.7.16 제정)과 「국세청관할 휴면법인 청산연합회 사무국 처무규정」(74.6.15. 시행) 등의 두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정경제부 연합청산위원회에서 발간한 『국가귀속 청산법인 청산자료집』을 다룰 경우에는 이 규정집이 참조가 될 것이다. 다만 이 해설집과 관련하여서는 소략하게 다루어 두기로 한다.

(1) 「국세청관할 휴면법인 청산연합회규정」

휴면법인 청산연합회는 국세청관할로서(제1조), 국세청에서 관장하는 각종 휴면법인의 청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각 법인의 대표청산인으로서 청산연합회를 조직하고, 1945년 8월 9일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과 이사행사권, 사원권 및 기타 권리가 있는 국내법인으로서 각 지방 국세청에서 관장하고 있던 해산법인의 조속한 청산종결을 기함을 목적

으로 한다(제2조). 연합회에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간사장, 감사 각 1인과 간사 2인을 둔다(제3조). 연합회 업무와 각 법인의 청산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청산사무국을 둔다(제4조). 국세청장은 감독관청으로서 연합회를 감독하며, 연합회 소관 각 법인의 청산업무 처리내용을 실지 감사하며, 감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7조). 그리고 부칙에서는 청산연합회 사무국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국 처무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 「국세청관할 휴면법인 청산연합회 사무국 처무규정」

이 규정은 국세청관할 휴면법인 청산연합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조, 목적)한 것으로서, 직원의 정원과 임용(제2장), 재정보증(제3장), 직원의 복무(제4장), 보수(제5장), 문서처리(제6장), 직인과 비밀의 간수(제7장), 재산의 환가처리(제8장), 회계(제9장), 장부(제10장), 보고(제11장) 등 전문 11장과 47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산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이해하려면, 제6장과 제8장 및 제10장, 제11장 등의 규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사무국에서 사용한 각종 서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하 사무국에서 사용한 서식 목록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서식목록 :

서식1호 임명장, 서식2호 발령통지서, 서식3호 발령대장, 서식4호 이력서,
서식5호 인사기록카드, 서식6호 재정보증서, 서식7호 출근부, 서식8호 외출부, 서식9호 당직명령부, 서식10호 당직근무상황부, 서식11–1호 출장명령서(관외),
서식11–2호 출장명령서(시내), 서식12호 출장복명서, 서식13호 근무실적평정부,
서식14호 직인사용부, 서식15호 재산실태 및 평가조서, 서식16호 부동산감정표, 서식17호 가격사정표, 서식18호 조사서(대부, 매각), 서식19호 대부료산정조서, 서식20호 대부계약서, 서식21호 재산매수요구서, 서식22호 매매계약서, 서식23호 매도증서, 서식24–1호 년도 수입지출예산서, 서식24–2호 수입예산명세서, 서식24–3호 지출예산명세서, 서식25–1호 수입결의서, 서식25–2호 지출결의서, 서식26호 수입부, 서식27호 지출부, 서식28호 재산대장, 서식29호 처분재산등록부, 서식30호 유가증권등록부, 서식31호 예금통장등록부, 서식32호 대체전표, 서식33–1호 청산법인재산처분계획표, 서식33–2호 청산법인재산처분 계획표, 서식34호 휴면법인청산상황표, 서식35호 국유주주배당 및 법인세납부상황표, 서식36호 청산종결예정계획서, 서식37호 년도 휴면법인재산처분실적표, 서식38호 법인별 시재액보고, 서식39호 시재일보

그 밖에 이 문서에는 '청산사무국 주재직원 복무요령'과 '청산사무 위임전결규정'도 포함되어 있음을 부기해 둔다.

Ⅴ. 규정집, 연합청산사무국, 1978

이 문서철은 연합청산사무국에서 휴면법인 청산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규정 자체로서는 특별히 자료적 가치가 있는 것은 없지만, 휴면법인 청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한자리에 모아 놓았다는 의미에서, 관련 규정을 일람하는데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국유재산법 〈제55조〉
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3. 국유재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4. 귀속법인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법률
5. 연합청산사무국의 설치
6. 연합청산사무국 직원의 보수 등에 관한 규칙
7. 위임전결규정
8. 청산사무국 직원의 당직근무 규칙

여기에서는「국유재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국유재산법」제55조,「국유재산법시행령」제60조 및 제61조,「국유재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국유재산법(제55조)[법률 제2750호, 1976.12.31, 공포]

제55조 (청산절차의 특례)(법률 제2750호 1976.12.31 공포)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권한, 소집 · 결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48]

(2) 국유재산법시행령(제60조, 제61조)[대통령령 제8598호, 1977.6.13, 공포]

제60조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의 적용의 제한을 받는 회사는「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이하 "청산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 총괄청은 청산법인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8) 개정 후에는 제80조로 변경된다.

제61조 (청산에 관한 특례)

① 청산법인이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의 적용의 제한을 받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

1) 청산인 및 감사의 선임
2) 상법 제5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의 승인
3) 영업의 양도 · 양수, 자본의 감소와 정관의 변경
4) 청산경비 · 결산 및 청산종결의 승인
5) 잔여재산의 분배 및 분배방법의 결정
6)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소집
7) 서류보존인의 선임 및 보존방법의 결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의 적용이 제한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연합청산위원회를 둔다.

③ 연합청산위원회는 다음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무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2인
2) 법무부장관 · 법제처장 및 국세청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각 1인
3) 재무부장관이 청산법인의 주주 중에서 지정하는 자 2인

④ 연합청산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합청산인 1인을 두되, 연합청산위원회가 청산법인의 청산인 중에서 선임한다.

⑤ 연합청산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⑥ 청산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령(법률을 제외한다)의 규정중 이 영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의 규정에의한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49)]

[재무부령 제1270호, 1977.7.13, 공포]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조의 적용을 받는 회사를 지정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5항에 규정하는 연합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9) 개정 후 「국유재산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되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제2조 (회사의 지정) :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로 한다. [50]

1) 삼척철도주식회사

2) 삼척개발주식회사

..... 중략 .....

32) 조선제련주식회사

제3조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영 제61조 제1항의 각호의 사항과 기타 청산법인의 청산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재무부 세정차관보인 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 (세부사항) :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청산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국유재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지정된 회사를 정리해 두면 다음 표와 같다.」

50) 제2조에서 열거된 회사들은 제정 당시에 지정된 회사이고, 그 후 개정에 의해 지정 회사가 계속 증가한다. 그 변화에 대해서는 아래의 "「국유재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지정된 회사"라는 제목의 표를 참조하라.

	연	77	78	78	78	79	80	80	81	83	83	86	88	89	90	91	92	93	94	'09
법인명	월	7	2	3	10	6	4	10	12	4	7	12	5	11	6	11	9	11	5	7
	일	13	20	30	10	15	4	6	21	15	8	13	28	7	26	8	1	20	21	31
고뢰(명)		○	○	○	○	○	○	○	○	○	○	○	○	○	○	○	○	○	○	○
고복상점㈜		○	○	○	○	○	○	○	○	○	○	○	○	○	○	○	○	○	○	○
공영상공㈜					○	○	○	○	○	○	○	○	○	○	○	○	○	○	○	○
금정광업㈜															○	○	○	○	○	○
남선토목(자)															○	○	○	○	○	○
대한임업개발㈜				○	○	○	○	○	○	○	○	○	○	○	○	○	○	○	○	○
도곡산업㈜													○	○	○	○	○	○	○	○
동면섬유공업㈜		○	○	○	○	○	○	○	○	○	○	○	○	○	○	○	○	○	○	○
동아공업㈜																		○	○	○
동아산업(자)														○	○	○	○	○	○	○
동양운모광업㈜					○	○	○	○	○	○	○	○	○	○	○	○	○	○	○	○
마산금융㈜												○	○	○	○	○	○	○	○	○
반전농림(명)												○	○	○	○	○	○	○	○	○
보국산업㈜		○	○	○	○	○	○	○	○	○	○	○	○	○	○	○	○	○	○	○
부산교통공업㈜									○	○	○	○	○	○	○	○	○	○	○	○
부산수산㈜		○	○	○	○	○	○	○	○	○	○	○	○	○	○	○	○	○	○	○
부산진매축㈜		○	○	○	○	○	○	○	○	○	○	○	○	○	○	○	○	○	○	○
부산토지유한회사		○	○	○	○	○	○	○	○	○	○	○	○	○	○	○	○	○	○	○
삼국석탄공업㈜		○	○	○	○	○	○	○	○	○	○	○	○	○	○	○	○	○	○	○
삼척개발㈜		○	○	○	○	○	○	○	○	○	○	○	○	○	○	○	○	○	○	○
삼척철도㈜		○	○	○	○	○	○	○	○	○	○	○	○	○	○	○	○	○	○	○
삼하청과㈜			○	○	○	○	○	○	○	○	○	○	○	○	○	○	○	○	○	○
서선합동전기㈜																			○	○
석천현농업㈜												○	○	○	○	○	○	○	○	○
여수토지건물㈜																	○	○	○	○
영전산업㈜													○	○	○	○	○	○	○	○
용산공작㈜																○	○	○	○	○
울산건설㈜		○	○	○	○	○	○	○	○	○	○	○	○	○	○	○	○	○	○	○
인곡토지건물㈜			○	○	○	○	○	○	○	○	○	○	○	○	○	○	○	○	○	○
일질광업개발㈜																			○	○
임전조선농사개량㈜												○	○	○	○	○	○	○	○	○
입정토건㈜						○	○	○	○	○	○	○	○	○	○	○	○	○	○	○
전남식산㈜			○	○	○	○	○	○	○	○	○	○	○	○	○	○	○	○	○	○
전북산업㈜										○	○	○	○	○	○	○	○	○	○	○
전주대가조합		○	○	○	○	○	○	○	○	○	○	○	○	○	○	○	○	○	○	○

법인명	연	77	78	78	78	79	80	80	81	83	83	86	88	89	90	91	92	93	94	'09
	월	7	2	3	10	6	4	10	12	4	7	12	5	11	6	11	9	11	5	7
	일	13	20	30	10	15	4	6	21	15	8	13	28	7	26	8	1	20	21	31
정읍연료㈜												○	○	○	○	○	○	○	○	○
제국석면광업㈜																	○	○	○	○
제등(명)																		○	○	○
제일농림㈜	○	○	○	○	○	○	○	○	○	○	○	○	○	○	○	○	○	○	○	○
제일산업㈜	○	○	○	○	○	○	○	○	○	○	○	○	○	○	○	○	○	○	○	○
조선건물㈜	○	○	○	○	○	○	○	○	○	○	○	○	○	○	○	○	○	○	○	○
조선경합금공업㈜	○	○	○	○	○	○	○	○	○	○	○	○	○	○	○	○	○	○	○	○
조선금속공업㈜	○	○	○	○	○	○	○	○	○	○	○	○	○	○	○	○	○	○	○	○
조선기업금융㈜	○	○	○	○	○	○	○	○	○	○	○	○	○	○	○	○	○	○	○	○
조선기업㈜											○	○	○	○	○	○	○	○	○	○
조선낙농㈜	○	○	○	○	○	○	○	○	○	○	○	○	○	○	○	○	○	○	○	○
조선녹화㈜		○	○	○	○	○	○	○	○	○	○	○	○	○	○	○	○	○	○	○
조선농공㈜												○	○	○	○	○	○	○	○	○
조선농림㈜												○	○	○	○	○	○	○	○	○
조선도시경영㈜	○	○	○	○	○	○	○	○	○	○	○	○	○	○	○	○	○	○	○	○
조선레용㈜																○	○	○	○	○
조선산업무역㈜		○	○	○	○	○	○	○	○	○	○	○	○	○	○	○	○	○	○	○
조선삼공㈜	○	○	○	○	○	○	○	○	○	○	○	○	○	○	○	○	○	○	○	○
조선생사㈜																○	○	○	○	○
조선석유㈜	○	○	○	○	○	○	○	○	○	○	○	○	○	○	○	○	○	○	○	○
조선선광제㈜		○	○	○	○	○	○	○	○	○	○	○	○	○	○	○	○	○	○	○
조선은행	○	○	○	○	○	○	○	○	○	○	○	○	○	○	○	○	○	○	○	○
조선자동차판매㈜	○	○	○	○	○	○	○	○	○	○	○	○	○	○	○	○	○	○	○	○
조선전변제약㈜																		○	○	○
조선제련㈜	○	○	○	○	○	○	○	○	○	○	○	○	○	○	○	○	○	○	○	○
조선주조㈜																	○	○	○	○
조선직물㈜							○	○	○	○	○	○	○	○	○	○	○	○	○	○
조선축산㈜	○	○	○	○	○	○	○	○	○	○	○	○	○	○	○	○	○	○	○	○
조선토지㈜																			○	○
조선특종광업㈜		○	○	○	○	○	○	○	○	○	○	○	○	○	○	○	○	○	○	○
조선피혁㈜												○	○	○	○	○	○	○	○	○
조선화약총포㈜				○	○	○	○	○	○	○	○	○	○	○	○	○	○	○	○	○
조선흥업㈜					○	○	○	○	○	○	○	○	○	○	○	○	○	○	○	○
조영토지㈜												○	○	○	○	○	○	○	○	○
㈜ 경업사		○	○	○	○	○	○	○	○	○	○	○	○	○	○	○	○	○	○	○

	연	77	78	78	78	79	80	80	81	83	83	86	88	89	90	91	92	93	94	'09
법인명	월	7	2	3	10	6	4	10	12	4	7	12	5	11	6	11	9	11	5	7
	일	13	20	30	10	15	4	6	21	15	8	13	28	7	26	8	1	20	21	31
㈜ 고뢰농장			○	○	○	○	○	○	○	○	○	○	○	○	○	○	○	○	○	○
㈜ 길촌농림부												○	○	○	○	○	○	○	○	○
㈜ 대교농장												○	○	○	○	○	○	○	○	○
㈜ 도곡농장													○	○	○	○	○	○	○	○
㈜ 마산조면공장																	○	○	○	○
㈜ 본전상점			○	○	○	○	○			○	○	○	○	○	○	○	○	○	○	○
㈜ 부안농장							○			○	○	○	○	○	○	○	○	○	○	○
㈜ 삼곡농장												○	○	○	○	○	○	○	○	○
㈜ 삼국농장												○	○	○	○	○	○	○	○	○
㈜ 성업사		○	○	○	○	○	○			○	○	○	○	○	○	○	○	○	○	○
㈜ 스타크리닝상회													○	○	○	○	○	○	○	○
㈜ 이등상행														○	○	○	○	○	○	○
㈜ 추야상점										○	○	○	○	○	○	○	○	○	○	○
㈜ 한국식산은행		○	○	○	○	○	○			○	○	○	○	○	○	○	○	○	○	○
㈜ 해동흥업공사		○	○	○	○	○	○			○	○	○	○	○	○	○	○	○	○	○
㈜ 환육상점																	○	○	○	○
㈜대원농장																			○	○
중부농사㈜												○	○	○	○	○	○	○	○	○
중시산업㈜												○	○	○	○	○	○	○	○	○
중앙물산㈜		○	○	○	○	○	○			○	○	○	○	○	○	○	○	○	○	○
중정토지(자)																	○	○	○	○
중천광업㈜			○	○	○	○	○			○	○	○	○	○	○	○	○	○	○	○
진전농사(명)																	○	○	○	○
청수(명)										○	○	○	○	○	○	○	○	○	○	○
충남흥업㈜												○	○	○	○	○	○	○	○	○
하조(명)																	○	○	○	○
한국광업진흥㈜		○	○	○	○	○	○			○	○	○	○	○	○	○	○	○	○	○
(명) 국무농장																	○	○	○	○
(자) 경성연와																	○	○	○	○
(자) 광연장상행						○	○			○	○	○	○	○	○	○	○	○	○	○
(자) 금곡상회												○	○	○	○	○	○	○	○	○
(자) 성환농장			○	○	○	○	○			○	○	○	○	○	○	○	○	○	○	○
(자) 장포농장																	○	○	○	○
(자) 조선유지공업소		○	○	○	○	○	○			○	○	○	○	○	○	○	○	○	○	○
(자) 총본농장																	○	○	○	○

	연	77	78	78	78	79	80	80	81	83	83	86	88	89	90	91	92	93	94	'09
법인명	월	7	2	3	10	6	4	10	12	4	7	12	5	11	6	11	9	11	5	7
	일	13	20	30	10	15	4	6	21	15	8	13	28	7	26	8	1	20	21	31
(자) 평전상점																	○	○	○	○
해운대기업(자)													○	○	○	○	○	○	○	○
해운대온천(자)												○	○	○	○	○	○	○	○	○
흥아화학공업㈜																		○	○	○
지정 회사수 합계		32	44	45	48	51	52	54	56	57	58	76	81	83	85	88	101	105	109	109

〈주〉 연월일은 시행연월일을 의미한다. (주)=주식회사, (명)=합명회사, (자)=합자회사를 의미한다.
출처 : 제정 1977.7.13, 개정 1978.2.20, 1978.3.30, 1978.10.10, 1979.6.15, 1980.4.4, 1980.10.6, 1981.12.21, 1983.4.15, 1983.7.8, 1986.12.13, 1988.5.28, 1989.11.7, 1990.6.26, 1991.11.8, 1992.9.1, 1993.11.20, 1994.5.21, 2009.7.31 등에서 작성하였다.

Ⅵ.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사무취급요령」– 산림청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69년 5월 21일자 법률 제2111호로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이 1969년 7월 18일자 대통령령 제3988호로 공포됨으로서 임야소유권 현실화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임야를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에게 등기하게 함으로써 국토개발의 촉진과 산림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문서철은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동 '시행령' 및 동 '사무처리요령', 기타 이 법령과 관련된 법령의 조문(발췌) 등과 이 법령 제정의 취지를 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제정의 취지

1. 전체 임야면적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 중 약 50%는 현실 소유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상의 소유자인 산주에게 이전 등기케 함으로써 국토개발의 촉진과 산림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여야 함이 국가의 당면한 중요 과제인 것이다.
2. 임야에 대하여는 재산적 가치관 또는 권리관념이 희박한 소치와 등기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등기에 따르는 비용부담이 크고 또한 산에 대한 고래의 관념 등으로 인하여 대체로

등기의식이 결여되어 누대에 걸쳐 상속되어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몇 차례 매매되어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임야소유권이 분명하지 못하므로 대단지 조림 및 기업가 조림과 자발적 산주의사를 반영한 영림계획수행 등 산림행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시한 국토개발계획사업에 있어서도 용지확보에 막심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어 이와 같은 임야에 대한 미등기 요인을 제거하여 조속히 임야소유권 등기를 현실화하고 임야소유권제도의 확립을 기하여 산주의 권익과 산림행정 및 정부의 국토건설사업에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 시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지금까지 누적된 폐단과 모든 어려운 점을 타개하고 아울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사업의 조속한 종결을 위한 특별조치를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함으로써 본법의 목적한 바와 같은 성과를 거양코자 하는 것이 이 법을 제정 실시하게 된 취지이다.

(2) 주요 내용

1. 이 법의 등기 대상은 이 법 시행 당시 현실 소유자 명의로 미등기된 임야로 하였다.
2. 과거 구 민법에 의하여 한 임야의 양도에 관한 채권적 합의 및 물권행위는 이의신립이 없는 한 민법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3. 임야등기의 신청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등기원인 서류는 임야소재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이 위촉한 3인의 보증인이 발행한 보증서 및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발행한 확인서로서 갈음할 수 있게 하였다.
5. 이 법에 의하여 수반된 공과금은 이를 모두 면제케 하였으며, 등기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등기기간은 조속히 종결키 위하여 1년 이내로 한정하였다.
6.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함을 예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두었다.

(3) 수록 법령 :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11호, 1969.5.21],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988호 1969.7.18] , 사무처리 요령

(4) 관계법령 조문(발췌)

1. 산림법 제2조 (산림의 정의)
2. 민법부칙 제10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경과 규정)
3. 부동산등기법 제2조 (등기할 사항)
4.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3조 (과세대상)
5.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시행령 제6조 (과세대상)

Ⅷ. 〈구신탁재산 처리현황 보고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 사무국, 1974.9.30

해방 이전에 조선신탁 주식회사(1933년 설립)에 신탁되어 있던 구 신탁재산의 처리를 위하여 1962년 9월 24일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 시행됨에 따라 당시의 재무부 산하에 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위원회에서 구 신탁재산의 처리방법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여 수탁자인 당시의 한일은행에 업무지침을 제공하면 한일은행은 그 지침에 따라 수익자를 확인하고 분배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위 위원회는 1976년 11월 24일 결산서의 승인결의를 한 후 임무를 종료하였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일은행과 그 승계자인 우리은행 등이 수탁재산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이 문서는 1974년 9월 30일 현재 '구신탁재산 처리현황 보고서'로서, 동 위원회의 연혁과 처리업무 개황, 소유 유가증권 명세표, 소유부동산 목록, 배당 실적 및 관련 법규 등을 다루고 있다.

(1) 구신탁재산 처리위원회의 발족 연혁

1933.1.7.	조선신탁업법령에 의거 조선신탁주식회사(한일은행 전신)설립으로 영업개시
1946.10.29.	조선신탁주식회사를 조선신탁은행으로 상호 변경
1950.4.25.	한국신탁은행으로 상호 변경
1954.10.1.	신탁, 상공 양 은행 합병으로 한국흥업은행으로 상호 변경
1960.1.1.	한국흥업은행을 한일은행으로 상호 변경
1960.7.21.	한일은행에 대하여 신탁업 면허 취소 및 신탁재산 동결
1961.11.3.	재무부는 한일은행의 신탁업 면허취소처분의 취소 통첩
1962.9.24.	법률 제1147호 '신탁회사의 구 신탁재산의 처리에 관한 법률' 공포
1962.11.13.	동법 시행령 공포 시행
1962.11.30.	1960.7.21.자 동결조치된 신탁재산을 당 위원회와 한일은행은 '구신탁재산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인수인계함
1962.12.1.	당 위원회의 발족으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한일은행 본점에 둠

(2) 발족 동기

1. 수탁자는 신탁법 제28조 또는 제30조 및 31조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관리 및 처분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분별 관리하여야 되는 것이나,

2. 수탁자 한국신탁회사의 전신인 한일은행은 이 법의 정신에 반하여 신탁재산(1962년 11월 30일자로 당 위원회가 인수한 재산)을 은행의 고유재산과 혼합취급하려고 하였음으로 1960년 7월 21일자 재무부령에 의하여 신탁업 면허가 취소됨과 동시, 신탁재산을 동결조치 하였던 것이며,
3. 이에 따라 한일은행은 동년 8월 8일 서울고법특별부에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신청 및 신탁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임.
4. 그 후 한일은행이 소송사건을 취하함에 따라 1961년 11월 3일자 재무부는 한일은행에 대하여 신탁업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통첩을 시달하였고, 동년 11월 13일자 한일은행은 신탁업무를 재개하게 되었음.
5. 한일은행은 신탁업무 재개 이전의 구신탁재산을 제1계정이라 하여 고유재산 또는 타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분할관리하였으며, 당 위원회 발족으로 이를 인계하였음.
6. 1962년 9월 24일자 법률 제1147호로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공포 시행하였으며, 동년 11월 13일 동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었음.
7. 전기한 사정으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3) 처리업무개황

당 위원회는 1962.12.1자로 발족하여 현재에 이른 바 청산법인체인 조선은행 청산위원회와 식산은행 청산위원회 및 해동흥업청산위원회를 비롯하여 잔여 11개여의 휴면업체에 대한 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바, 동 휴면업체에 대한 투자주식(1,571,931주)의 건이 미상환 중에 있으며 당 위원회 소유인 고유부동산의 매각 미처리를 비롯, 현재 진행 중인 내외흥업주식회사에 대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며,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대하여 1972.2.11 당 위원회 소유인 유가증권의 신고를 필하였는 바, 동 청구권에 대한 보상 문제 등 미결건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코자 함.

다음

1. 소유부동산

   당 위원회 소유인 고유부동산이 부산직할시와 호남, 충남 지방에 산재하고 있는 바, 부산소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1971.8.30과 1971.9.6 2차에 걸쳐 매각입찰을 신문공고로 실시한 바 있었으나 응찰자가 없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원매자가 없는 실정임. 부동산 대지 89.7평 감정원 감정가격 13,455,000원

2. 소송관계

   가. 내외흥업회사에 대한 1972.7.10 소송재기로 (주주권 확인 및 주주명부 기재 청구의 건)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나 소송결과에 따라서 상당액의 보상금이 기대 됨.

   나. 소유권 이전 등기부 절차 이행 청구소송에 대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계류 중임(원고 : 장○○)

3. 대일배상관계

   대일민간청구권 신고법에 따라 1972.2.11당 위원회 소유인 유가증권을 청구권 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음으로 앞으로 보상여부가 미결 중임

4. 부동산 징발에 의한 공탁금 관계

근자 전국에 걸쳐 실시중인 토지구역정리사업과 지역개발에 따른 토지부동산 중 명의신탁(조선신탁주식회사에 신탁행위)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 본래의 신탁행위의 위탁자 불명으로 토지징발에 대한 보상금이 1973.11월 이후 수시도래되고 있는 현상에 감하여 앞으로 처리업무면에 그 수익성이 기대됨

5. 의정부세무서 관할을 비롯하여 각지에 산재해 있는 신탁행위에 의한 소속불명의 부동산을 발굴확인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등기절차에 의한 취득으로 수익성 증대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됨.

(4) 처리전망

당 위원회는 구 신탁재산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47호, 동 법률 전문 8조 각항 및 동시행령 전문 9조 각항과 구 신탁재산처리위원회 처무규정 전문 5조 각항 및 동 위원회 직제 전문 3조 각항에 의거하여 1962.12.1 부로 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그간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수익성 증대로 인한 업적 신장이 현저하였는 바(배당액 10억원) 당 위원회의 처리업무촉진에 있어서는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투자한 휴면법인체와의 관련성에 비추어 그 법인체의 청산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당 위원회 소유 부동산의 매각처리를 촉진하여 제반 업무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본 위원회는 위의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발족한 기관임으로 정부측의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조치에 대비코자 하는 것임.

(5) 기타 첨부자료

대차대조표 1962.11.30
대차대조표 1974.9.30
연도별 손익실적표 1969~73
경비실적대비표 1973년 하반기와 1974년 상반기
소유 유가증권 명세표 1974.9.30 현재
소유 부동산 목록 1974.9.30
배당실적표(총괄)
배당현황조서
배당실적명세
구 신탁재산처리관계법규

1. 신탁회사의 구 신탁재산의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7호 1962.9.24]
2. 신탁회사의 구 신탁재산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각령 제1038호 1962.11.13]
3.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 처무규정 [1962.12.7 개정 1963.4.2]
4.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 직제 [1962.12.7 제정 수차 개정]

허수열(충남대학교)

| Chapter I |

05 휴면법인 청산연합회 관계철

관리번호 : BA0908850
쪽　　수 : 635
생산년도 : 1964~1977
생산기관 : 재무부 국고국, 국세청 납세지원국 징세과, 휴면법인 연합청산사무국 등

이 문서철은 크게 3종류의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문서들로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및 그 해설,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운영요강〉, ②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영요령에 해당하는 문서로서, 「귀속휴면법인 청산업무처리요령」, 「귀속공익법인의 재산처리요령」 및 그 해설, ③1966년 설립된 '휴면법인 청산연합회'에 의한 귀속휴면법인 처리 현황(1973년), '연도별 청산종결 예정법인 목록'(1974년),'귀속휴면법인 청산사무 연혁과 통계'(1975년), '청산법인의 잔무처리 요령'(1977년) 등 주로 휴면법인 청산연합회에 의한 귀속휴면법인의 청산계획 및 청산통계 등에 관한 문서들이다. 대부분의 법령은 국가법령센터 등에서 쉽게 그 원문을 찾아 볼 수 있어 자료적 가치가 별로 크지 않지만, 이 문서철에 포함되어 있는 법안과 운용요강 및 운용요령 및 그 해설 등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자료들이고, 또 귀속재산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살펴보는데 매우 큰 의의를 가진 것들이라 할 수 있다.

Ⅰ. 《회의각서》, 국무총리 비서실, 1966.3.7.

귀속사업체 중 영리법인(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 단체)에 대해서는 「귀속휴면법인 청산업무 처리요령」, 그리고 비영리법인(재단법인과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귀속공익법인의 재산 처리요령」이 각각 제정됨으로써 귀속휴면사업체 전체에 대한 청산업무 처리요령이 체계를 갖추게 된다. 문서철 《회의각서》는 재무부 국고국에서

작성한 「귀속공익법인의 재산 처리요령」과 「귀속공익법인 청산분배금 처리요령」 등 귀속공익재산 처리와 관련된 '요령' 및 「귀속공익법인의 재산 처리요령 해설」이라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귀속휴면사업체의 재산이 실무차원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살펴볼 때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하자. 단 이들 요령은 모두 한시법인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해당 조문에 의한 것이다.

1) 「귀속휴면법인 청산업무처리요령」, 재무부 국고국, 1964.10.21.

이 요령은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귀속휴면법인(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 단체 등)의 청산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목적).

이 때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는 귀속휴면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임원이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법 공포 전일까지 한국인 명의로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며, 주주총회 사원명부와 구성원 총회를 소집한 일이 없는 것, ② 법 공포 전일까지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것, ③ 법 공포전에 해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재산의 대부분이 처분되어 존속시킬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제2조 ; 귀속휴면법인의 인정기준).

세무서장은 그 관할 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귀속휴면법인을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상업등기부(비송사건절차법 제190조)에 의하여 귀속휴면법인을 조사하여 법인대장을 작성하고, 그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법인별로 재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제3조, 제4조).

그리고 이들 귀속휴면법인을 해산절차 하고(제6조~제10조), 다음의 요령에 따라 그 청산절차를 진행한다. 즉 재산목록 등 교부(제11조), 주주명부 등 비치(제12조), 대차대조표 작성(제13조), 채권자에 대한 최고(제14조), 관계서류의 인계(제15조), 임대계약의 갱신(제16조), 비치장부(제17조), 매각대 등 납부한계(제18조), 매각의 위탁(제19조), 현물분배(제20조), 경비지출(제21조), 은행예치금(제22조), 일시차입(제23조), 수입금의 계리(제24조), 제세납부(제25조), 잔여재산의 분배(제27조), 청산종결의 등기(제28조), 기타 청산사무(제29조).

2) 「귀속공익법인의 재산처리요령」, 재무부 국고국, 1964.10.5.
「귀속공익법인의 재산처리요령 해설」, 재무부 국고국, 1964.10.5.
「귀속공익법인 청산분배금 처리요령」, 재무부 국고국, 1965.7.29.

「귀속공익법인의 재산처리 요령」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소위 민법상의 공익법인) 중에서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의 1/2 이상이 정부에 귀속된 귀속공익법인의 재산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 문서철에는 이와 관련하여 「귀속공익법인의 재산처리 요령 해설」이라는 해설 문서도 같이 편철되어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와 조문별로 대비해 가면서 해설되어 있어 '귀속공익법인'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 갔는지 상세히 알 수 있다. 이하 「귀속공익법인의 재산처리 요령 해설」을 중심으로 이 두 문서의 내용을 조문별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귀속공익법인의 재산처리 요령 해설」

제1조 (목적)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공익법인은 그 재산이 정부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을 운영하는데 기간이 되는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이 정부에 귀속된 것에 불과하다. 「귀속공익법인의 재산 처리요령」은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이 1/2 이상 정부에 귀속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이하 귀속공익법인이라 한다)의 재산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 법인의 조사) : 세무서장은 그 관할 내에 주 사무소를 둔 귀속공익법인을 재단법인, 사단법인 별로 조사하여 관할법인을 파악해야 한다. 관할법인을 조사하는 방법으로서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법인등기부를 열람 조사하여 그 법인의 귀속성을 판정한다. 이 요령에 의하여 조사된 사항 중 1945.8.9. 현재의 이사성명이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정부에서 그 이사행사권을 사용한다. 사단법인에 있어서 귀속된 사원권을 파악하는 것은 대부분의 법인이 1945.8.9. 현재의 사원명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지난하나 사원명부에 의하여 파악된 사원권 행사에 유루 없도록 한다. 그리고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조사된 귀속공익법인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인(운영법인)과 현재 휴면상태로 있는 법인(휴면법인)으로 구분한다. 귀속법인 중 휴면상태에 있는 법인은 본 요령에 의하여 그 소유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나, 운영법인은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민법 제77조에 규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귀속된 이사행사권을 행사하더라도 해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3조 (휴면법인의 기준) : 귀속공익법인 중 세무서에서 처리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인은 휴면상태에 있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임으로 휴면법인을 어느 기준에 의하여 구분할 것인가는 중요한

것이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형식적으로 보아 법인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1945.9.9. 현재 이사명의가 일본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현재까지 등기부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법인은 휴면법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인은 존립기간이 만료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으로 해산사유가 발생한다. 2) 해방 후에 법인의 기능이 회복되어 운영된 일이 있었던 법인이라 할지라도 존립기간이 만료된 것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것임으로 해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다.

제4조 (정관비치) : 세무서장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을 처리하여야 한다. 운영법인은 그 정관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구하기가 용이하나 휴면법인은 이해관계자 또는 법인설립 등기신청 할 당시에 첨부되어 있는 정관을 등기소에서 열람하여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할 것이다.

제5조 (재산대장의 비치) : 관할 법인에 대하여 법인별로 그 소유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재산파악은 휴면법인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재산대장의 서식산은행 귀속재산의 재산대장에 준하여 작성할 것.

제6조 (휴면법인의 해산) : 귀속공익법인 중 운영법인은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산할 수 없으므로 바로 청산의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면법인으로부터 해산하여 청산할 수밖에 없다. 휴면법인을 해산한 후에는 청산인은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가 끝나면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7조 (이사의 정원수) : 이사의 정원수는 정관에 규정되는 것이 상례이며, 이 정원 범위 내에서 이사가 등기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1945.8.9. 현재로 등기되어 있는 어느 법인의 이사의 수가 5인 중에서 3인이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2인이 한국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인 3인의 이사행사권을 정부에서 행사하고 잔여 2인은 민간인의 이사가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귀속된 이사행사권에 해당하는 이사는 재무부와 소관부서에서 1/2씩 추천한다. 그러나 어느 법인의 이사 전원이 일본인으로 되어 있어 이사행사권 전부가 정부에 귀속된 경우에는 그 수를 제한하더라도 귀속된 이사행사권의 행사에는 영향될 바 없으므로 그 수를 3인 이내로 하면 운영의 간편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재무부(세무서)와 소관부(지방 일반 관서)에서 1/2씩 이사를 추천하되, 소관부서에서 추천하게 될 수는 1.5인이 됨으로 단수인 0.5는 재무부에서 추천하는 수에 합하여 재무부에서 2인 소관부서에서 1인을 추천하게 되는 것이다.

제8조 (이사임명) : 휴면법인의 대부분은 1945.8.9. 이후 이사가 없는 상태로 있으므로 청산업무를 처리하려면 법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제1보로서 이사의 임명이 중요하다. 이사의 임명은 정관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된 이사행사권에 상당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정관 규정절차를 밟아 정부측의 이사가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장관이 귀속된 이사행사권

행사로서 즉 지명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휴면법인의 청산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세무서장은 휴면법인을 해산하기에 앞서 소관부 장관으로부터 이사로 임명받은 후에야 비로소 이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여 당해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서장은 이사임명요청서를 소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9조 (해산통지) : 세무서장은 소관부 장관에게 이사임명을 요청하는 이사 외에 잔여 이사도 소관부에서 추천 임명되어야 한다는 뜻을 소관부 장관에게 통지하여 이사임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제10조 (이사회의 해산결의) :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며, 해산에 관한 절차는 ㉮ 이사회의 해산결의 ㉯ 사단법인의 경우는 다시 사원총회의 결의 ㉰ 주무관청의 허가 ㉱ 주무관청에 대한 해산신고로 구분되나 모든 법인이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므로, 정관에 상세한 해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이 절차에 따라 해산하여야 하며, 정관이 없거나(망실) 정관에 해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요령에 의하여 해산절차를 밟아 청산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각 이사의 결의권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결의방법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결의권의 과반수로 한다. 이사회가 소집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둔다.

제11조 (사원총회의 해산결의) : 재단법인은 그 구성분자로써 사원을 결하고 있으므로 사원총회가 없으나, 사단법인은 사람이 집단이므로 최고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해산결의를 받은 후에 다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사원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 등은 이사회의 경우와 같다. 주의할 점은 해산하기 위한 총회의 결의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총사원의 3/4 이상의 동의로써 해산결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12조 (해산허가신청) : 정관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정관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밟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해석된다.

제13조 (대표청산인) : 법인이 해산되면 청산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청산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청산인은 이사의 지위와 같은 것이며 법상 청산인이 되는 순위는 1)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서 정한 자, 2) 이러한 자가 없는 때에는 이사가 계속하여 청산인이 된다. 그러므로 해산된 경우에는 이사가 그대로 청산인이 되는 것이 보통이며, 귀속공익법인의 해산에 있어서는 소관부 장관이 이사로 임명한 자가 계속하여 청산인이 된다. 청산인은 각자가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대외적인 활동을 단일로 하기 위하여 청산법인을 대표할 청산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세무서장을 대표청산인으로 할 것으로 규정한다. 즉 대표청산인 이외에는 그 법인을 대표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제14조 (해산등기 등) : 해산이 되면 다음과 같이 청산사무를 추진한다. 1) 해산등기, 청산인등기 및 해산신고, 2) 현존 사무의 종결, 3)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4) 잔여재산의 인수.

제15조 (채권신고최고) : 청산인은 민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척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척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청산에서 제외된 자라 할지라도 청산법인이 채무를 완제한 후 잉여재산을 귀속권리자에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제16조 (재산의 매각) : 공익법인은 잔여재산을 현물로 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소속재산을 매각할 필요는 별로 없으나, 부채상당액의 재산을 매각할 때는 어느 법령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냐가 문제되지만, 그 귀속성으로 보아 「귀속재산처리법」을 준용하여 매각하는 것이 정부와 이해관계 있는 재산은 가급적이면 획일적인 법령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며, 청산인은 이 취지를 사전에 이사회나 사원총회에서 결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정관의 변경) : 공익법인에 있어서 정관 변경가능 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단법인은 인적결합을 본체로 하며 최고결정기관인 총회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므로 자주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결정한 정관에 의하여 이사가 활동할 뿐이며 법인의 의사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자체에 정관변경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귀속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실질적으로 국고에 귀속되어야할 성질의 것이므로 청산법인의 정관에 잔여 재산의 귀속권리자가 국고 이외의 다른 자에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국고 귀속한다고 그 정관을 변경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18조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사원이나 출연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지 않으며,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귀속자에게 현물로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환가처분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그러므로 귀속공익법인이 해산된 때에는 부채상당액의 재산만을 환가처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잔여재산은 현물로 정관에서 규정한 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정관에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규정하는 것은 설립 당시의 출연자의 의사가 존중되어 규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귀속공익법인의 설립 당시의 출연자의 의사는 현재로서는 정부 이외에는 대변할 자가 별로 없으므로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청산인은 세심하게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청산종결등기신고) :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종결등기를 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동 취지를 재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귀속공익법인 청산분배금 처리요령」, 재무부 국고국, 1965.7.29.

이 문서는 휴면법인(귀속휴면법인)의 잔여재산(청산분배금)을 각 출자자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각 조문의 항목만 열거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제2조(결산시기), 제3조(잔여재산의 산출), 제4조(총회의 승인), 제5조(분배 통지와 공고), 제6조(청산반환금의 처리), 제7조(분배시의 공제액), 제8조(정부분배금에 대한 처리), 제9조(분배시의 필요서류), 제10조(출자증권이 없는 때의 처리), 제11조(매각재산조서 작성), 제12조(조서작성부수), 제13조(조서의 대조확인), 제14조(조서의 처리), 제15조(청산반환금)

Ⅱ. 「현황」, 국세청관할 휴면법인 연합청산사무국, 1973.8.

이 문서철은 '청산종결 3개년 계획'(1974~76)에 의해 본격적으로 휴면법인 청산종결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인 1973년까지의 청산종결 사업의 연혁과 현황을 정리하고 있다. 1973년까지의 종결법인이 121개였던 것과 청산종결 3개년 계획기간 동안 청산종결하려는 법인의 수가 278개인 것을 비교해 보면, 3개년 계획기간 동안에 청산종결이 중점적으로 추진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서철의 '청산사무추진계획'을 보면, 1973년에 청산종결 3개년 계획이 입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연혁

1. 1949.12.19. – 귀속재산처리법
   (가) 법인별(청산위원회설치)
   (나) 청산위원
   위원장 – 재무부장관
   관재청장 또는 지방관재국장
   위 원 – 관재당국 2인
   관재부처 2인
   민간주주 2인
2. 1963.5.29. –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가) 청산인 – 본점 소재지관할 세무서장
   (나) 청산사무국 – 각 법인별 설치
3. 1966.4. – 제1차 청산기구 통합 – 세무서 단위 통합
   (가) 청산연합회 조직
   (나) 연합청산사무국

4. 1970.9.1. – 제2차 청산기구 통합 – 각 지방 국세청 단위 통합
5. 1973.7.16. – 제3차 청산기구 통합 – 전국적 단일화 통합

(2) 청산사무국 편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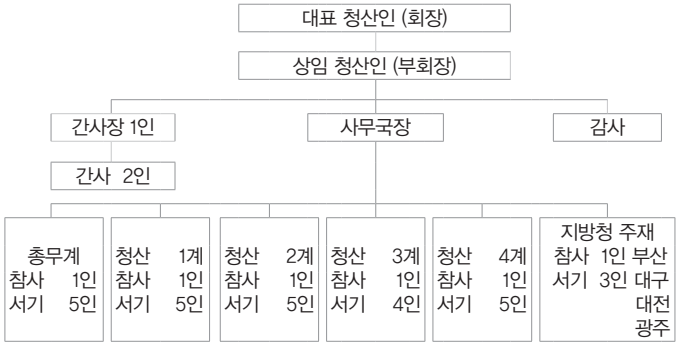

(3) 청산법인 현황

청별 / 법인종별	서울	중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계
주식회사	62	29	44	14	11	35	195
합자회사	9	8	9	4	8	6	44
합명회사	3	4	1	3	2	6	19
유한회사			2				2
조합		3	2			2	7
재단법인	5	1	1	1	1	1	10
사단법인							
계	79	45	59	22	22	50	277

(4) 종결법인 현황

청별 / 법인별	서울	중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계
주식회사	52	3	22		2	11	90
합자회사	3	1	1	1	1	4	11
합명회사	2	1			1	2	6
유한회사						1	1
조합	1						1
재단법인	5	1				1	7
사단법인	5						5
계	68	6	23	1	4	19	121

(5) 법인별 재산보유(미처분 재산) 현황

구분 / 법인종별	법인수	재산보유고		비고
		유	무	
주식회사	195	157	38	
합자회사	44	35	9	
합명회사	19	14	5	
유한회사	2	2		
조합	7	5	2	
재단법인	10	8	2	
사단법인				
계	277	221	56	

(6) 보유재산 현황

종별 / 구분		건수	수량	추정액(원)	비고
고정자산	토지	21,203	6,100,967.99	3,426,925,470	
	임야	546	16,896.9128	667,546,328	
	건물	143	8,361.98	83,610,000	
	시설물	철도시설 철암~묵호		988,255,000	
	비품집기	500	500	1,186,000	
	광업권	1	1	1,000	
	기타무형재산	11	11	2,150,000	
	소계			5,169,673,798	
당좌재산	유가증권		176,106	1,675,101,000	군징발보상증권 1,670,140,000 주권 4,961,000
	미수금		7,766	1,071,772,214	연부금 404,747,863 일일채권 667,024,351
	예금		477	571,130,466	보통예금 118,093,984 정기예금 453,036,482
	소계			3,318,003,680	
총계				8,487,677,478	

〈주〉 단위는 토지와 건물의 수량 단위는 평이고, 임야는 정보임.

(7) 국 · 공공기관 점유 재산 현황

구분 / 종별	국 및 공공기관		군징발		합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추정액
토지	2,047	450,611.8	174	56,449.6	2,221	507,061.4	1,521,184,200
임야	39	10,886.6017	5	11.1900	44	10,897.7717	381,933,151
건물	6	1,513	17	3,172.03	23	4,685.03	46,850,000
시설	철도시설철암~묵호				철도시설		988,255,000
비품집기	28	28			28	28	722,000
기타무형재산	9	9			9	9	1,350,000
계							2,940,294,351

(8) 소유권 분규 재산현황

토지(평)	임야(정보)	건물(평)	시설(식)	주권(주)
459,080	10,485.7725	1,882.36	1	1,232

(9) 처분실적

(73. 8. 현재)

구분 / 재산종별	건수	수량	금액(원)	비고
토지	31,926	18,950,231.90	4,614,823,163	평
임야	711	20,767.1618	492,278,733	정보
건물	1,782	146,177.336	496,639,263	평
시설물	5,909		126,765.505	
광업권	32		148,363,292	
계	40,360		5,879,069,956	

(10) 소송사건 현황 (생략)

(11) 청산사무 촉진방침

1. 잔여재산이 없는 법인은 일단 청산종결(청산종결등기는 유예)
2. 대 정부 미수금 대위변제 청산종결
3. 정부채무의 대위변제금은 국주주 배당금에서 상계 정산
4. 국가기관의 일반 행정자산으로 필요한 재산의 현물분배
5. 미해산법인은 잔여재산 확인 후 해산
6. 재단법인 잔여재산 국고귀속

(12) 청산사무추진계획

1. 청산의 종결계획
   1973년도 종결법인수 36
   1974년도 종결법인수 90
   1975년도 종결법인수 120
   1976년도 종결법인수 잔여전부
2. 1973년 사무처리계획
   (가) 세입목표
   연간목표 862,947,000원
   실적(6.30현재) 283,783,000원
   9.1.~12.31 계획 579,164,000원
   (나) 미처분재산의 현 용도별 구분조사 : 9.1.~10.31
   (다) 국고수납한 재산 매각기록의 조사 : 9.1.~12.31
   (라) 관계기관과의 협의회 개최
   ① 철도청 9월 중순
   ② 교통부 (해운국) 9월 하순
   ③ 산림청 10월 상순
   ④ 국방부 (시설국) 10월 중순
   ⑤ 서울특별시 10월 중순
   ⑥ 부산직할시 11월 중순
   ⑦ 문교부 11월 하순
   (마) 중간결산 : 12.1~ 12.31
   (바) 법인세 예납 및 주주 중간배당 : 73.12.26~74.1.20

Ⅲ. 「국세청 관할 귀속휴면법인 처리 요령」, 국세청, 1974.10.21.

귀속휴면법인의 청산실적은 1974년부터 1976년 사이에 크게 높아진다. 이 기간에 귀속휴면법인 청산종결 3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청산종결이 촉진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청산종결 3개년 계획에 의한 청산종결의 방법, 법인보유 미처분재산에 대한 조치, 청산종결 후의 기록방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청산종결의 방법

1. 현재 청산 진행 중인 법인은 연도별 청산종결 예정계획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결하도록 한다.
   (가) 1974년도 종결 99법인
   (나) 1975년도 종결 76법인
   (다) 1976년도 종결 81법인
   (라) 1977년도 이후 종결 22법인 계 278법인
2. 1977년도에는 청산사무국을 해체하고, 잔무청산업무는 국세청직원이 담당처리하되,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불가결한 인원은 그 인원을 필요로 하는 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3. 연도별 청산종결 예정계획에 따라 그 종결작업은 청산법인 종결작업 계획표 대로 추진하여야 한다.
4. 연도별 청산종결 법인에 대한 작업진행 계획표는 이를 사무국장실에 첨부하고 진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해산을 요하는 법인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고 1년 내에 종결하도록 한다.

(2) 법인보유 미처분재산에 대한 조치

1. 100% 귀속법인의 잔여재산은 현물분배 또는 기부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2. 혼합법인 재산이라도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에 현물분배하여 활용케 한다.
3. 국가기관에서 공용, 공공용, 기업용 등 행정목적에 공용하고 있는 재산은 국가에 현물분배 또는 기부에 의하여 국유화한다.
4. 전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재산은 청산종결 연도 내에 매각처분하되 점유자가 매수에 불응할 경우에는 변상금을 청구함과 동시 공매처분한다.
5. 혼합법인의 미처분재산은 이를 국가에 현물분배하여도 그 법인의 보유현금으로써 민간인 주주분배금을 포함한 모든 청산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잔여 미처분재산은 전부를 국가에 현물분배 한다.
6. 매각대금의 분납은 그 법인의 종결시기 이전까지만 인정한다.

(3) 청산종결 기록철

1. 청산종결법인의 기록은 법인별로 서류의 순서대로 이를 파일에 철한다.
2. 파일의 표면에는 법인명칭, 번호, 주식수와 비율, 해산일자를 기재한다.
3. 파일 표지 내측에 청산법인 종결작업 점검표를 견고하게 첨부하고 진행과정을 점검하여 관계자가 날인 확인한다.
4. 보관문서 (주로 매각건철)에는 완결 연월일 순으로 각 건철 표지에 번호를 붙여 법인별로 집합 보관한다.

Ⅳ. 「연도별 청산종결 예정 법인 목록」, 국세청, 1974.10.21.

앞에서 보았던 「국세청관할 귀속휴면법인 처리요령」과 더불어 이 문서철 역시 1974년 이후의 귀속휴면법인 청산종결에 관련된 문서인데, 수록 내용은 ① 각 연도별로 청산예정되어 있는 개개의 법인목록과 그것을 집계한 표, ② 청산법인 종결작업 진행계획표, ③ 청산법인 종결작업 점검표 등의 3종류의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서에서는 '청산종결 3개년 계획'(1974~76년) 기간 동안의 청산종결의 실적과 각각의 청산종결 예정법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1) 연도별 청산법인 종결 예정계획표

이 항목에서는 우선【표 18】과 같이 1974~1977년 이후까지에 대한 집계표가 수록되어 있다.

【표 18】 연도별 청산법인 종결예정 계획표

		1974년	1975년	1976년	1977년 이후	합계
법인수	전체 귀속	73	63	69	17	222
	혼합법인	26	13	12	5	56
	계	99	76	81	22	278
보유재산	건수	1,284	9,104	12,789	18,125	41,302
	수량	388,054	2,515,787	2,867,694	3,799,938	9,571,473
		692	1,020	26,911	1,885	30,508
	금액	944,211	1,897,124	2,581,238	5,860,010	11,282,583
미처분재산	건수	318	4,432	8,065	8,388	21,203
	수량	31,716	1,353,042	1,325,809	1,401,801	4,112,368
		303	774	22,445	216	23,738
	금액	653,598	887,491	1,429,277	1,145,445	4,115,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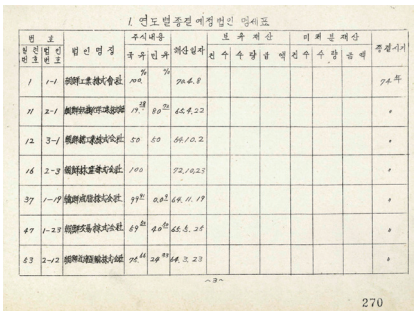
1 연도별종결예정법인 명세표

270

【그림 4】 연도별 종결예정법인 명세표 (DA0908850)

그리고 이 집계표에 이어, 1974년도, 1975년도, 1976년도, 1977년도 각 연도별로 '종결예정법인 집계표'와 각 연도별로 종결예정법인 명세표(【그림 4】 참조)가 실려 있다. 예컨대 1974년의 경우라면,【표 18】의 1974년의 '법인수'의 '계'와 같은 99개의 법인 각각에 대해【그림 4】와 같은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2) 청산법인 종결작업 계획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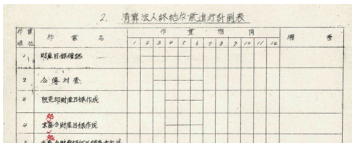

【그림 5】 청산법인 종결작업 계획표 (DA0908850)

이 표는【그림 5】와 같은 양식으로 각 작업별로 작업 기간이 표기되어 있다.

작업명은 다음과 같은 31개가 있었다.

재산목록 확인, 공부대사(對査), 기 매각재산목록 작성, 미처분 재산목록 작성, 미처분 재산평가 및 조사서 작성, 회계장부 검산 및 각 계정 확인과 수정, 해산 당시 대차대조표 확인, 채권 추심 완결 여부와 회수불능 채권 명세 및 사유 확인, 상환채권 정확여부 확인 및 상환불능 채권명세와 사유확인, 법인세 납부 상황표 작성, 주주 중간배당 상황표 작성, 제 장부 마감, 재무제표 작성(시산표, 정산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청산소득 계산서), 청산소득처분안 작성, 회수불능채권 처리안 작성, 상환불능채권 처리안 작성, 청산종결 주주총회 소집, 청산사무경과보고서 작성, 결산보고서 작성, 청산종결 공고, 결산서 공고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주 총회개최 이사록 작성, 의사록 공증, 청산소득 신고 및 법인세 납부, 주주배당금 지불, 출자금 환불, 현물분배 재산 이전 등기, 관련 건철 정리 및 번호 부여, 문서보존인 선임결정 신청, 청산종결 등기, 종결 보고

(3) 청산법인 종결작업 점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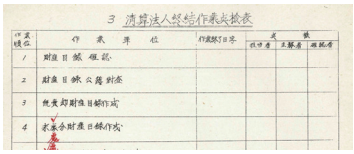

【그림 6】 청산법인 종결작업 점검표 (DA0908850)

이 표의 작업단위는【그림 5】의 작업명과 같고, 작업번호로 보면 31번까지이다.

Ⅴ.「귀속휴면법인 청산사무 연혁 및 통계표(집계표)」

이 문서는 연합청산사무국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연합청산사무국 설치의 연혁, 청산연합회 기구표, 1975년 12월 31일 현재 휴면법인 청산상황표, 청산법인 재산처분 실적 등의 현황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청산종결 3개년 계획의 중간 단계까지의 청산종결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1) 연혁

1. 1949.12.19

(가) 법인별(청산위원회 설치)

(나) 청산위원

위원장 – 재무부장관
관재청장 또는 지방관재국장
위　원 – 관재당국 2인
관재부처 2인
민간주주 2인
설치근거 :「귀속재산처리법」

2. 1963.5.29.
(가) 청산인 – 본점 소재지관할 세무서장
(나) 청산사무국 – 각 법인별 설치
설치근거 :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 1966.4. (제1차 청산기구 통합)
(가) 세무서 단위 통합, 청산인 세무서장
(나) 연합청산사무국 설치
4. 1970.9.1. (제2차 청산기구 통합) – 각 지방 국세청 단위 통합, 청산인 지방국세청장
5. 1973.7.16. (제3차 청산기구 통합) – 전국적 단일화 통합
5–2, 250–251쪽

(2) 청산연합회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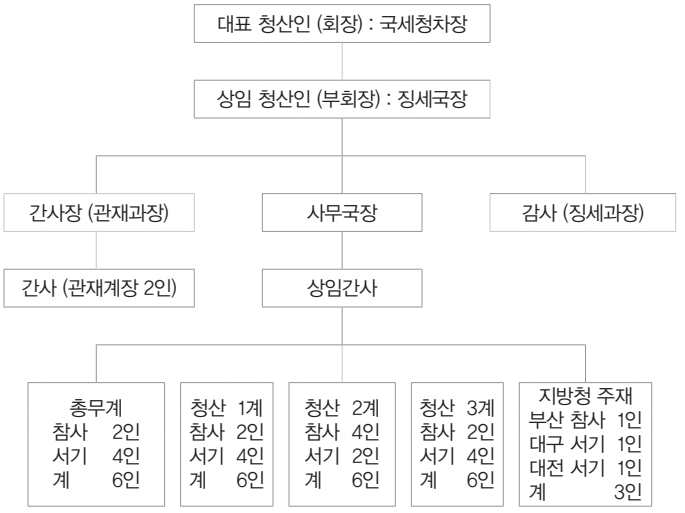

(3) 휴면법인 청산상황표

(1975년 12월 31일)

법인별		총법인수	해산법인	주식지분 매각법인	기업체 매각법인	소수 주식법인	미해산 법인	청산	
								종결	미종결
영리 법인	주식회사	1,094	253	155	255	176	255	166	87
	합자회사	179	43	5	35	10	86	32	11
	합명회사	60	23	2	11	1	23	15	8
	유한회사	94	3	19	22	10	40	1	2
	기타	96	1	7	14	34	40	–	1
	소계	1,523	323	188	337	231	444	214	109
비영리 법인	재단법인	55	6	–	–	5	44	6	–
	사단법인	16	4	–	–	–	12	4	–
	소계	71	10	–	–	5	56	10	–
합계		1,594	333	188	337	236	500	224	109

(4) 청산법인 재산처분실적

(금액단위 : 천원)

종별 \ 연도별		1973년까지	1974년	1975년	합계
토지 (평)	수량	4,070,728	151,900	87,582	4,310,210
	금액	3,817,174	1,431,104	203,670	5,451,948
임야 (정)	수량	18,914	813	36	19,763
	금액	100,138	49,044	2,239	151,421
건물 (평)	수량	110,832	3,722	–	114,554
	금액	339,455	44,592	–	384,047
기타	수량	–	–	–	–
	금액	160,589	268,103	242,584	671,276
합계	수량	–	–	–	–
	금액	4,417,356	1,792,843	448,493	6,658,692

Ⅵ. 《청산법인의 잔무처리요령(종결편)》, 국세청, 1977.4.27.

이 문서는 청산종결 3개년 계획에 의한 청산종결이 일단락되는 시점(1977년)에서 청산법인의 잔무처리에 관한 요령을 다룬 문서이다. 앞에서 다루었던 'Ⅲ. 「국세청 관할 귀속 휴면법인 처리 요령」'과 'Ⅳ. 「연도별 청산종결 예정 법인 목록」'이 청산종결 3개년 계획의

입안에 관한 것이라면, 'Ⅴ. 「귀속휴면법인 청산사무 연혁 및 통계표(집계표)」는 그 중간 결과에 대한 것이고, 이 문서철은 그 최종결과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4개의 문서를 통해 '청산종결 3개년 계획'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1) 목적

재무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국세청이 담당처리한 귀속휴면법인의 청산업무는 해산법인 284개 중 청산종결 3개년 계획에 의하여 업무가 종결된 261개 법인을 제외한 24개 법인의 업무를 재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1977.2.28 재무부에 이관하였으므로 업무종결법인 중 청산종결 등기미필법인에 대한 종결등기를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조속 완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종결법인의 현황

1. 청산종결 3개년 계획에 의한 업무처리실적

연도별	종결 법인수	매각			현물분배			납세 (백만원)	국고 배당 (백만원)	민간 배당 (백만원)
		건수	수량 (천평)	금액 (백만원)	건수	수량 (천평)	금액 (백만원)			
1974	99	2,302	2,085	334	430	497	1,245	153	234	19
1975	73	5,343	2,406	691	1,337	230	1,631	362	402	19
1976	89	16,727	22,712	2,014	10,186	84,949	4,829	845	1,292	151
계	261	24,372	27,274	3,040	11,953	85,679	7,106	1,360	1,928	189

2. 종결법인의 종결등기 진척상황

종결연도	종결법인수	종결등기완료 법인수	종결등기미필 법인수	비고
1974	99	96	3	
1975	73	51	22	
1976	89	–	89	
계	261	147	114	

3. 종결등기 미필사유별 법인 현황

미필 사유	법인수	처리 방안
가. 종결주총의사록 공증미필	63	공증을 받은 후 지방청 단위 등기신청
나. 매각재산 소유권 미이전	42	지방청으로 하여금 합법적 점유자 파악 이전 촉진
다. 민간주주 배당미필	5	지불, 공탁
라. 연부금 미수	6	지방청 이관, 국고수입
마. 징발보상 미결소송	4	재무부 이관
기타		
합계	120	

(3) 잔무처리 추진방안

1. 기본방향

휴면법인 청산업무는 국가사무와는 구별되는 법인의 업무이므로, 종전의 휴면법인 청산연합회 조직을 당분간 존치한다.

2. 업무집행 세부방침

(가) 261개 업무종결법인의 보존문서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상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므로, 관재과장을 보존인으로 지정, 10년간 보존하기로 하고, 용산세무서 창고에 집중 보관함.

문서 목록 : 매각건철, 징수대장, 매각대장, 재산대장, 소표, 기업체 기록, 현물분배철, 군징발관계철, 소송관계철, 등기부철, 주주명부, 일반문서철, 의사록, 장부, 증빙결의서철, 종결회계철, 매각재산처리대장, 회의록철 등 16,329책.

(나) 공증인의 공증에 의하여 즉시 등기가능법인의 종결등기 (63개 법인)

(다) 매각재산 소유권 미이전법인 처리

① 매각건철 지방청 이송

② 지방청 간사 실태확인과 조치

③ 법인종결등기

(라) 매각대 연부금 체납 또는 연부금 납기 미도래 법인 처리 (6개 법인)

① 연부금 체납액 또는 납기 미도래 연부금은 국고에 배당(채권배당)하고 결산은 하였으므로 지방국세청으로 하여금 이를 징수하여 세입조치하게 하고 종결등기한다.

② 합자회사 해운대 온천장 계약 보증금 5,418,000원은 부산지방국세청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관케 하고 77.6.30 연부금 완납후 환급토록 한다.

(마) 주주배당 미필법인 처리 (5개 법인)

① 일동장유주식회사 배당미필액 31,695원, 중앙대가조합 357,226원, 전주대가조합 2,297,920원, 조선석유배급주식회사 배당미수령액 현금 1,130,119원과 징발보상채증권 3,558매 액면 35,580,000원은 신문에 공고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77.10.30.까지 수령치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공탁하고 종결등기한다.

② 조선농공주식회사 소유 한일은행 주식 20매 액면 586,000원은 국가로 명의개서 재무부에 인계후 종결등기한다.

(바) 징발보상신청 또는 소송 중인 법인 처리

징발보상신청 또는 소송계류 중인 법인은 징발보상 또는 소송확정시기 미정일 뿐 아니라 보상증권이 발급되더라도 장기상환으로 조기종결이 불가능하므로 재무부에 이관한다.

(4) 「청산업무 개선방안」

1. 청산법인 현황

(가) 일반현황

- 청산법인 지정 및 청산종결 사항 (지정 54, 청산종결 24, 청산진행 30)
- 재무현황

(단위 : 천원)

자산		부채	
토지	281,205	부채	683,319
현, 예금	6,305,131	자본	13,240,338
유가증권	3,764,409		
기타	3,572,912		
계	13,923,657	계	13,923,657

(나) 청산업무 처리 경위

- 군정법령 및 한미행정협정에 의거 귀속주식 및 지분을 한국정부가 취득
- 76.12까지 국세청에서 청산수행하거나 개별적으로 관련기관이 청산절차를 진행
- 76.12.13 국유재산법 전면 개정

국세청, 한국은행 및 산업은행에서 청산하고 있던 청산법인을 재무부로 이관

(다) 연합청산위원회의 설치 – 국유재산법 시행령

① 구성

- 재무부 : 세정차관보(위원장), 재산관리국장
- 법무부 : 법무과장
- 법제처 : 법제관

- 국세청 – 징세조세국장
- 기타 : 민간주주 2명　계 7인

② 관장사항 – 상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사항을 심의 결정

- 청산인 및 감사의 선임
- 청산경비 결산 및 청산종결의 승인
- 잔여재산의 분배 및 분배방법의 결정
-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의 소집

(라) 연합청산인 – 국유재산법 시행령

- 연합청산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함
- 연합청산위원회가 청산인 중에서 1인 선임

(마) 연합청산사무국 – 연합청산위원회 결의사항

- 연합청산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 사무국장 포함 14명

2. 청산업무의 제 문제점

(가) 주주관계

① 일부 주식에 대한 주주확인 불능 – 주주명부의 멸실, 주권분실 주주, 이북 소재 주주 등

② 재산분배 방법에 있어 민간주주의 반발 – 자산평가 및 주가산정에 대한 이의

(나) 소유부동산에 대한 문제

① 청산법인의 제 장부가 일부 또는 전부 멸실로 정확한 재산보유상태 파악이 곤란

- 막대한 인력과 경비소요로 전수조사 불능, 측량 곤란
- 장부와 실제(등기)와 차이

② 많은 재산이 무단점유 상태

- 철도청 등 국가기관이 무상점유
- 영세민 등이 무상점유

③ 장기간 소송계류

- 국가(농수산부)에서 착오 매각에 따른 소송
- 토지불법매각에 대한 환수소송
- 토지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④ 귀속법인 및 청산법인 소유재산의 계속 발견

- 현 점유자의 매수 요구
- 과거 청산종결시 누락된 재산 추가 발견

(다) 청산사무국의 제 문제점

① 연합청산사무국의 법적 지위 모호

- 법령의 근거없이 연합청산위원회 의결로서 설치
- 연합청산인의 청산업무를 보조하는 기관

② 사무업무능력 미흡

- 직원 신분보장책 결여
- 유능직원 확보 곤란

③ 청산종결(향후 약 3년)시 직원들의 실직 문제

- 직원들에 대한 직장 보장을 당부에서 구두 약속

④ 현 · 예금 등 자산의 안전관리 문제

- 63억원 상당의 현 · 예금의 입출시 마다 당부에서 통제하기 곤란
- 부동산 임대수입 등 관리소홀로 연체 누증

3. 대책

(가) 개선원칙

① 전문적인 재산처분 기관으로 하여금 처리케 함

- 수탁기관 업무로서 처리
- 수탁기관의 고유업무와 분리, 독립회계 설치

② 청산인 및 연합청산인을 기관의 임원으로 함

- 청산사무국은 수탁기관에 흡수
- 청산사무국 직원의 전원 구제

③ 연합청산위원의 임원으로 기관의 임원을 선임

- 청산인인 동시에 연합청산위원의 일원이 됨

(나) 기관의 선정

– 연체 부동산 처분의 전문기관인 성업공사에서 처리토록 함
(현재 김○○, 김○○ 재산의 청산업무를 수행)

(다) 시행단계

① 근거법령 제정 전

- 청산사무국 업무를 현재상태에서 인수 처리케 함
- 청산사무국장을 성업공사 이사 중에서 임명

② 관계법령 제정 후

- 귀속법인의 청산사무를 성업공사의 업무로서 처리함.
- 성업공사 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

(라) 보완조치

① 관계법령 개정

- 성업공사령 및 정관 개정 : 청산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설정
-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 : 성업공사의 이사를 연합청산위원 및 연합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근거 설정

② 성업공사의 체제 보완

- 부서 신설 – 청산업무 전담 처리
- 직원 및 예산 변경 – 청산사무국 직원 및 경비 예산 인수에 따른 조정

③사무국 직원의 흡수

- 원칙적으로 전 직원을 성업공사에서 인수, 다만 성업공사 인사규칙에 저촉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음
- 인수직원의 보수호봉 책정은 현재 보수수준과 성업공사 보수규정을 기준하여 결정

Ⅷ.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해설」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요강」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요강 중 개정」

이 문서철에는 앞에서 본 귀속공익법인의 청산종결 요령에 관한 것과 아울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체는 국가법령 정보센터를 비롯하여 많은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적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다. 다만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요강」과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해설」은 쉽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또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어 입법 당사자의 입장에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알아 보는데는 더 없이 좋은 자료가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해설」 중에서 이 법의 제정 목적과 대상을 다룬 제1조와 제2조만을 다루어 두기로 하다.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해설과 아울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요강」도 같이 보면 좋을 것이다.[51]

제1조 (목적) : 「귀속재산처리법」이 공포 시행된지 14년이 경과되어 그 동안 매각보류 중인 재산과 특수한 재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귀속재산의 처리에 있어 과거 매각 제일주의로 급속적인 다량매각에 치중한 나머지 「귀속재산처리법」 중 일부 규정의 운용에 적절을 기하지 못하였던 이유로 이미 매각된 재산에 대하여 소청, 소송이 제기되어 현행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을 가져오게 되고 매각대금이나 임대료의 장기체납이 타성화되어 이의 체납정리에 강력한 시책이 요청되어 왔을 뿐 아니라 잔존 미처분재산의 처리에 적지 않은 애로가 가로 놓여 있어 귀속재산처리의 종결을 위하여 이러한 점을 법률적으로 타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1) 종래 귀속주식이나 지분이 있는 영리법인의 재산을 매각하였거나 또는 귀속휴면법인의 해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 재산을 매각한 이유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의 제소로 관재당국의 행정처분이 무효선언된 예가 있고, 2) 미수복지구에 본점을 둔 귀속주식이나 지분이 있는 법인의 재산이 미수복지구 이남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법인의 해산절차를 밟을 수 없으므로 그 법인의 재산을 매각할 수 없고, 3) 매각대금이나 임대료의 체납이 타성화된 경향이 많아 체납정리에 애로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체납된 재산에 대하여 계약해제하더라도 사후 처리가 복잡하여 일선 실무자들이 해약을 자연 주저하게 되고 따라서 체납정리가 부진하였으며, 4) 잔존 미처분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에 있어 점유사용자에 대하여 과거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으로 인하여 매각촉진상 큰 애로가 될 뿐 아니라 국유재산과의 관계에 있엇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손해금 불징수 조치와 균형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애로를 타개함과 아울러 이미 이루어진 행정처분을 일정한 절차를 밟아 합법화시킴으로써 법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이전 경제질서를 보호유지함과 동시에 미처분재산을 조속히 매각함으로써 귀속재산처리를 종결하여야 할 것이 절실히 요청되어 왔었다. 이 법은 이러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으로서 현행 「귀속재산처리법」으로는 관리, 매각하기 곤란한 것을 신속 적절하게 처리함에 있는 것이다.

51)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해설로서는 林昇彦의 다음 글이 큰 도움이 된다. 林昇彦, 「歸屬財産處理에 관한 特別措置法 解說」, 『法制』, 1963.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2항의 귀속휴면법인의 정의. 1) 8.15 해방 전 국내에서 창설되었던 각종의 영리법인(예, 회사)의 대부분은 주로 일본인 자본으로써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일본인의 지배하에 있었다. 해방과 더불어 일본인의 기반을 떠난 이러한 법인의 변모를 개관하여 보면, 하나는 사업목적을 변경함이 없이 종전의 기업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법인 (이러한 법인으로서는 금융, 운수, 전기, 보험, 기계제작소 등 주로 국내의 중요 사업기관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해방과 동시에 법인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법인으로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인으로서는 일본인이 경영하던 많은 중소기업 등을 들 수 있다. 2) 이상의 두 가지 형태로 놓여 있는 법인 소유재산 처리에 관한 「귀속재산처리법」상의 태도를 보면, 동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법인의 법인격을 존중하여 법인격을 가지는 모든 법인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며, 설사 그 법인의 주식의 대부분이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그 법인 자체의 소유에 소속된 것이며, 다만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주식만이 정부에 귀속하게 되었으므로 정부는 귀속된 주식만을 처분할 수 있을 뿐이며 그 법인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전항에서 설명한 두 가지 법인 형태 중 후자에 속하는 법인 즉 완전히 법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법인 소위 이 법에서 말하는 휴면법인에 대해서는 동 법 제8조 규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법인을 해산한 다음에 그 법인의 소속재산을 분할 매각할 수 있는 것이다. 3) 그러나 이러한 소위 휴면법인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도 현행 귀속재산법의 태도는 해산되는 법인마다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산처리에 일일이 청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재산처리가 극히 우회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법에서는 이러한 휴면법인의 재산을 정부에서 당해 법인을 해산한 다음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함이 없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길을 개척해 놓았다. 4) 본 법에서 휴면법인이라 함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국내 영리법인, 조합, 기타 단체 중 그 주식 또는 지분이 1/2 이상 귀속된 것으로서 1945년 8월 9일 이후 그 법인의 기능이 상실되어 사실상 소멸된 법인을 말하는 것이다.

허수열(충남대학교)